# V.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2. 상업 · 수공업 · 광업의 변모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 5. 중개무역의 성행

## V.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1)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 (1) 사대동의 발생

15세기 중엽에 확립된 조선왕조의 貢納制(농민이 戶役으로 부담했던 공물·진상 등의 現物課收制度)는 그 부과와 정수의 온갖 폐해로 인하여 이미 16세기초에 허다한 물의를 빚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것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컸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국왕에 대한 禮獻이라는 막중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좀처럼 개혁되지 못하였고, 또 防納・豪右輩의 이권이 개재되고 있어 쉽사리 개선되지도 못하였다. 趙光祖를 비롯한

<sup>1)</sup> 이 글은 大同法에 관한 아래 論稿들을 바탕으로하여 대동법의 실시 경위와 그 내용 및 의의를 필자 나름대로 정리·서술한 것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의거한 바를 일일이 註記하지 않는다.

鄭亨愚. 〈大同法에 대한 一研究〉(《史學研究》 2, 1958).

韓榮國,〈湖西에 실시된 大同法〉(上・下)(《歷史學報》13・14, 1960・1961).

<sup>——, 〈</sup>湖南에 실시된 大同法〉(1~4) (《歷史學報》15·20·21·24, 1961~64). Ching-young Choe, Kim Yuk and the Taedongbop Refor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XⅢ No.1, 1963.

劉元東,〈李朝貢人資本의 研究〉(《亞細亞研究》7-4, 1964).

韓沾劤、〈李朝後期 貢人의 身分〉(《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5. 1965).

金潤坤,〈大同法의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背景〉(《大東文化研究》 8, 1971).

黃夏鉉,〈壬辰倭亂以後의 大同 및 均役의 財政史的 研究〉(漢陽大 經濟學博士學 位論文, 1973).

宋贊植, 〈三南方物紙貢考〉(《震檀學報》37·38, 1974).

혁신적인 사림세력에 의하여 한 때 그 개혁의 기운이 돋우어지기는 했지만, 실현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공납제의 폐해는 그 개선의 논의만이 거듭되는 가운데 농민의流亡・離散을 날로 증가시켜 갔고, 이에서 파생된 이른바 隣徵・族徵의 관행은 양반세가들의 토지 겸병의 증대, 放軍收布와 같은 군역의 문란 등과 함께 농민의 몰락・逃散을 더욱 촉진시켜 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미 수백 명의 유망민을 내고 있는 군현들이 즐비할 정도였고, 또 불과 40여 호의 貢役戶로써지탱되는 군현이 나타나는 상태였다. 잡초만이 우거진 田野에 貢賦가 부과되고 있는 농촌의 모습, 群盜로 화한 유민들로 인하여 州郡의 行旅가 끊기고있는 실정, 作人으로 糊口하는 客戶(유민)들로 향리가 가득한 상황들이 줄지어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2)

時務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일부 관료와 재향 사족들은 이러한 실정의 개선을 위하여 국지적으로나마 나름대로 匡救策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갔다. 大

安達義博、〈18・19世紀前半の大同米・布・錢の徵收と國家財政〉(《朝鮮史研究會 論文集》13, 1976).

金玉根,《朝鮮後期經濟史研究》(瑞文堂, 1977)

———,《朝鮮王朝財政史研究 Ⅲ》(一潮閣, 1988).

柳承宙,〈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研究〉(《歷史學報》71・78・79, 1976~78).

방기중, 〈17·18세기 전반 金納租稅의 성립과 전개〉(《東方學志》 45, 1984).

高錫珪、〈16・1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韓國史論》12. 서울大、1985).

吳美一, 〈18·19세기 頁物政策의 변화와 頁人層의 변동〉(《韓國史論》14, 서울 大, 1986).

德成外志子,〈朝鮮後期의 貢物貿納制〉(《歷史學報》113, 1987).

六反田豊、〈「嶺南大同事目」と慶尚道大同法〉(《朝鮮學報》131, 1989).

----, 〈大同法における'留置米'・'餘米'・'儲置米'概念の檢討〉(《東洋史研究》 50-3, 1991).

崔完基,〈大同法 實施의 影響〉(《國史館論叢》12, 國史編纂委員會, 1990).

池斗煥,〈宣祖·光海君代 大同法 論議〉(《韓國學論叢》19, 1997).

――,〈仁祖代의 大同法 論議〉(《歷史學報》155, 1997).

박현순, 〈16~17세기 貢納制 운영의 변화〉(《韓國史論》 38, 서울大, 1997).

2) 공납제의 폐해와 개혁론에 대해서는 《한국사》 28(국사편찬위원회, 1996)을 참고하기 바람.

同除役으로도 일컬어졌던 이른바 私大同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명종말기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대동은 몇몇 군현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그 군현에 부과된 모든 京納物(중앙정부와 왕실에 바치는 공물과 진상물들)을 군현 내의 모든 田土에서 균등하게 징수한 쌀을 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하여 납부했던 데서 대동법의 선구를 이루는 관행이었다. 황해도 海州의 경우, 牧使의 책임하에 1結에 쌀 1말[斗]씩을 징수하여 소정의 경납물을 구입・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3)

이 같은 사대동은 확실히 당시 공납제의 폐해 가운데 가장 혹심하였던 刁蹬(간교한 방법으로 공납물의 市價=代納價를 마구 올리는 것)의 폐해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李珥는 선조 2년(1569) 9월에 이 사대동의 법제화와 아울러 이의 전국적인 시행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그의 건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수년 뒤에 황해감사로 부임한 이이가 도내 각 군현에 사대동을 시행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해주와 松禾 이외에는 끝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반대세력들의 저지가 강하였던 것이다.4) 그리하여 공납제의 폐해와 이의 匡救策과 개혁론은 임진왜란을 맞기까지 계속되어 갔다.5)

<sup>3)</sup> 金誠一,《鶴峰全集》續集 卷 2, 黃海道巡撫時疏. 李 珥、《栗谷全書》卷 15. 東湖問答.

<sup>4)</sup> 李 珥、《栗谷全書》 卷 11, 答成浩原書(丙子).

이지원의 〈16·17세기 前半 頁物防納의 構造와 流通經濟的 性格〉(《李載集博士 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한울, 1990)에 따르면, 15세기말 이래로 이미 향촌사회에서는 賦役制的인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던 공납제가 米·布에 의한 代納으로 전환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는 本色頁物로의 수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들에서는 공물을 구매하여 상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서 공물의 상품화와 공물 質納기구로서 '防納'이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이전인 16세기 향혼사회에서 地方事例 형태로 私大同・大同除役이 널리 정착되어 있었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특히 趙復陽은 대동법 실시 후인 효종・현종 때 활동한 인물이다). 16세기의 사대동의 실태나 代貢收米法의 실패로 볼 때, 농민 스스로에 의한 공물의 미·포로의 대납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전개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시된다고 보겠다.

<sup>5)</sup> 선조 14년(1581)에 연산군 8년(1502)이래의 頁案을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 (2) 대공수미법의 시행

임진왜란을 당하자 정부는 극심한 군량난에 봉착하였다. 이에 정부는 임기응급책으로 納粟의 관례를 채택·시행하는 한편, 공납물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미곡을 납부하도록 적극 장려하였다. 壬辰年條 공납물부터 兵禍의 상황에 따라 적당히 감소하여 주면서 이들을 미곡으로 바꾸어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쟁의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된 데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군현에 따라 그 기준이 고르지 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군량의 확보와 민심의 안정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것은 선조 27년 정월에 일어난 宋儒眞의 모반사건6)으로 인하여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른바 代貢收米法이 제안되어 시행된 것이다.

전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선조 27년 4월에 영의정 柳成龍은 국왕에게 시무책을 올리면서 재정의 충실, 곧 군량의 확보와7 민생의 안정을 위한 공납제의 개혁안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건의하였다.8

- 공물·진상제도를 폐지하고, 도별로 공납물에 상당하는 미곡을 계산하여 이 를 도내의 모든 田土에 균등하게 배분·징수한다.
- 전라·충청·경상·강원·황해도에서는 정수한 미곡을 京倉에 납부하고, 함 경·평안도에서는 그 도에 留置하여 國用에 사용한다. 단, 경상도의 경우는 경상도가 戰禍에서 소생할 때까지 유치하여 군량으로 사용한다.
- 경창에 납부된 미곡은 각 중앙 관서의 소요 物種(종래의 공물·진상물)을 구입하는 경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량으로 한다.

<sup>6)</sup> 선조 27년(1594) 정월에 자칭 의병대장 宋儒眞과 여러 群盜들이 牙山·平澤의 兵器를 탈취하여 京城을 침공하다가 실패로 끝난 사건이다. 宋儒眞은 경성 庶族이고, 群盜는 대부분이 유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金潤坤, 앞의 글, 154~155쪽 참조).

<sup>7)</sup> 柳成龍은 이 글에서 모든 京役, 즉 上番軍役과 各司 노비·諸員·皀隷·樂工의 立役 등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이들 입역자와 그 保人에게서 1인당 쌀 1석씩을 정수하여 군량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西厓文集》卷 5. 陳時務額).

<sup>8)</sup> 柳成龍,《西匡文集》卷 5, 頁物作米議.

유성룡이 건의한 이 같은 대공수미법은 곧장 課收量의 상정(1결에 쌀 2말씩)을 거쳐 그 해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다. 頁案의 개정(頁納制의 지속)을 주장하는 일부 관료들의 반대가 없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군량의 조달 방안이달리 없었고, 또 민심의 慰撫가 다급하였기 때문이다. 宋儒眞 일당이 토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탈과 살생을 자행하는 群盜가 성행하여 수령이 邑治를 버리고 산골짜기에 들어앉아 官務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의 형편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대공수미법은 시행된 지 1년도 못되어 폐지되고 말았다. 징수한 쌀의 수량이 예정과는 달리 매우 적어서 군량 조달에 차질이 생겼을 뿐아니라, 정부의 소요 물품을 구입하는 일도 여의치 못하여 수시로 원래의 현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가 아직도 전란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주요 원인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나 제도상의 결함에 있었다기 보다는 유성룡의 말대로 방납・호우배의 이권회복 운동에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이리하여 임진왜란의 종식과 더불어 공납제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阿多介(虎皮방석) 1坐의 代價가 무명 200필(백미 70여 석)로 치솟는 가운데 농민은 날로 유망하여 갔고, "가난한 농민은 처자를 먹이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부자들 중에는 1년의 쓰임새가 쌀 수천 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10)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형성하여 갔다. 농민의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없는 위태로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3) 대동법의 제정ㆍ시행

광해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위하였다. 新政의 기운이 민심의 慰悅에 맞추어지는 가운데 호조참의 韓百謙은 대공수미법의 修補 시행안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영의정 李元翼이 이를 재청하고 나섰다. 광해군은 즉각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이의 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원로대신과 방납·호

<sup>9) 《</sup>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3월 신사.

<sup>10)</sup> 趙 翼,《浦渚集》卷 2, 因求言論時事疏.

우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祖宗之法의 준행을 강조하면서 대공수 미법이 지녔던 지난날의 난점들을 들어 그것이 '不可久行의 것'임을 역설하 였다. 그리고 아울러 그 대안으로 양전의 시행, 호패법의 강화, 貢案의 개정 등 고식적인 미봉책을 계속 제시하였다.

찬·반의 논란 속에 어려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광해군은 즉위 년(1608) 5월에 그 타협책으로 우선 경기도에 한하여 대공수미법의 修補案을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그 事目을 이원익으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宣惠法으로 명명된 경기도의 새로운 대공수미법, 즉 大同法이 제정·시행되었으니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11)

- 담당 관서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都提調 1員(영의정 例兼), 副提調 1員(호조 판서 例兼), 郞廳 2員을 둔다.
- 도내의 모든 전토에서 1결당 쌀 16말씩을 부과·징수하되 봄·가을로 나누 어 8말씩 징수한다.
- 봄·가을로 7말씩은 선혜청에서 수납하여 경기도에서 상납하던 모든 경납 물의 구매에 사용하고, 봄·가을로 1말씩은 각 군현에 유치하여 수령의 公·私 供費로 사용하게 한다.
- 선혜청은 현재의 물가를 참작하여 정해진 공인(종래의 방납인)에게 여유있게 물품가를 지급하고, 공인은 지정된 물품을 해당 관청에 때맞추어 납부한다.
- 收米(16말) 이외에는 일체의 加徵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 山陵·詔使의 役은 예외로 한다.

경기의 대동법은 광해군 즉위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방납배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受價・備納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들과 巨室豪家의 저항은 계속되기만 하였다. 방납배들은 거의가 공인으로 지정되어 합법적인 어용상인이 되기는 했어도 종래의 '十倍之利'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거실호가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전토에서 새로이 대동세를 납부해

<sup>11) 《</sup>光海君日記》권 4, 광해군 즉위년 5월 임진. 경기도의 경우 大同事目이나 大同廳 事例가 전하는 것이 없어 그 구체적인 내 용은 아직 알지 못한다.

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광해군은 여러 차례 폐지하려고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경기도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sup>12</sup>)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기도 농민들의 기운이 주변의 도민을 자극하여 대동법의 확장론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대동법의 확대 시행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광해군 말엽에 충청·전라도 연해의 군현들에 대하여 공물을 무명이나 베로 바꾸어 납부하게 하는 임시적인 조치가 취하여졌을 뿐이다.

1623년 反正을 통하여 인조가 즉위하자, 新政의 기운은 다시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논의하게 하였다.13) 호조(판서 李曙)가 民心慰悅策의 한가지로 경기도에서 효험을 보고 있는 대동법을 2~3개 도에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 이어서 이조정랑 趙翼이 장문의 「論宣惠廳疏」를 올려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역설한 것이 그 단초였다. 조익의 상소를 받은 인조는 곧 중신회의를 소집하여 그 가부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확대 시행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외방에서만 횡행하던 도적들의 무리가, 그것도 정식 전투복을 입고 각종 무기로 무장한 무리가 바로 도성 밖에까지 출몰하게14) 되었던 당시의 상황이대동법 반대론자들을 적지아니 압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인조 원년(1623) 9월에 강원·충청·전라의 3도 大同廳이 설치되고 그 사목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3도에는 그 시행의 便否를 살피는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3도에 실시된 대동법은 실시되던 해와 그 이듬해에 걸쳤던 흉작으로 인하여, 또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시행 세칙들로 인하여 이른 바 半大同의 원성을 샀다. 전라도의 경우, 진상물을 종전대로 현물로 납부하게 한 경우가 많아서 운송과 點退(중앙관서에서 진상·공물을 수납할 때 적합하

<sup>12)</sup> 安鼎福은 그의 《列朝通紀》에서 경기대동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光海命先試之畿內 巨室豪族與主人等 皆失防納大利 百塗沮擾 光海屢欲罷之 以 畿民爭言其便 故行之」.

<sup>13)</sup> 池斗煥은 앞의 글(b)에서 三代의 理想社會, 즉 大同社會를 지향했던 純正성리학자들이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광해군 때 非純正성리학자들인 北人들에 의해 지연되던 대동법이 가장 시급한 개혁정책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동법이 곧 井田制와 상통하는 것임을 논증하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고찰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sup>14) 《</sup>承政院日記》 3책, 인조 원년 윤10월 3일.

지 않다고 '退'字를 써서 물리치는 것)의 폐해가 계속 존재하였고, 輸運船馬價와 人情·作紙價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의 정수가 전보다 더 하였으며, 刷馬價 또한 대동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남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부호들은 1결에 12말씩의 쌀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이 쌀의 대부분을 경창으로 조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동법에 대한 비판론은 다시금 거세게 일어났고, 그 기세는 대동법의 확대를 주도하였던 이원익마저 3도의 대동법을 잠시 停罷할 것을 제안하게 하였다. 이에 3도 대동청은 인조 2년 12월에 혁파되고 말았다. 하지만 강원도의 대동법은 강원도 유생들의 청원에 따라서계속 시행되었다. 호조에 그 업무를 이관하면서 대동미를 봄과 가을에 8말씩나누어 징수하게 하고 쇄마가를 책정하게 하는 등 약간의 규정을 변경시켰을 뿐이다.

충청·전라도의 대동법이 폐지된 이후, 대동법의 확대 실시론은 병자호란을 전후로 하여 간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李植·權盼·金堉 등에 의하여 제기된 이 논의는 崔鳴吉·金尙憲 등 원로대신에 의하여 번번이 억제되고 말았다. 국법을 자주 바꾸느니 보다는 공안을 개정하고 호패법을 강화·시행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공안의 개정은 실제로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주들의 이익과 방납배의 이권만이 계속 옹호되고 추구되어 간셈이다. 농민의 유망과 저항이 심화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무렵의 이른바 南方土賊이란 바로 이들 유망농민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제 만약 그일당을 모두 제거하고자 한다면, 남아날 백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될15)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고 있었다.

악화 일로에 있던 농민의 생활고는 효종의 즉위를 계기로 대동법의 확대시행론을 다시금 제안하게 하였다. '王者之政 莫先於安民'이 새삼 강조되는 가운데 延川君 李景嚴을 비롯하여 김육·조익 등이 삼남에 대동법을 다시시행하자고 강경히 주장하고 나섰고, 李景奭・鄭太和・許積 등이 이에 찬동하고 나선 것이다. 김상헌을 비롯한 金集・宋時烈・宋浚吉・元斗杓 등의 반

<sup>15) 《</sup>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7월 기해.

대론이 격심하기는 하였지만,16) 新政의 기운은 실시론으로 기울어 갔다. 효종 자신이 明의 멸망을 연상할 정도로 남방토적에 대하여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고, 또 김육·조익·李時白 등 실시주창자들이 議政의 자리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효종 2년(1651) 8월에 우선 충청도에만 다시시행하도록 결정되었다. 삼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중 농민의 부담이 가장 무거웠던 충청도에만 시험적으로 시행하여 보자는 타협안이 채택된 것이다. 영의정 김육은 몸소 湖西大同事를 주관하면서 그 사목을 마련하였다.

충청도에 시행된 대동법은 간간이 '宮市之弊' '作木之弊' 등을 논의하게 하기는 했지만, 경기·강원의 대동법과 같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어 갔다. 반대론에 앞장섰던 송시열마저 호서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대동법의 효험을 시인할 정도였다.

그러나 효종 5년에〈湖西大同事目〉의 반포를 계기로 하여 장령 沈摠이 전라·경상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자 대동법 확대 실시론은 다시한번 시련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것은 이 두 도가 전국 實結數(收稅田結數)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동미의 조운에 새로운 대책이 없이는 그 시행이불가능하다는 이유의 반대 논의가 있었고, 또 남쪽 지방의 생산물을 서울에서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대한 김육의 대책과 설득은 끝내 전라도 53官의 수령에게 대동법 시행에 대한 찬부를 묻게 하였고, 그 결과 효종 9년 6월에 연해지역 27개군현에만 9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연해지역에서는 모두 찬성하고 山郡 가운데 반수가 반대한 이유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말미암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즉 선조 36년(1603)의양전 때 海邑이 兵禍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담이 적게끔 작성된 양안이 당시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과, 해읍이 田稅는 가벼웠지만 頁役이과중했다는 점이 되겠다.

이리하여 경기·강원·충청의 3도에 이어 전라도 해읍에까지 대동법이 실

<sup>16)</sup> 李建昌은《黨議通略》에서 山黨(金集 등)과 漢黨(金堉 등)의 分爭이 대동법의 찬반에서 비롯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되고, 또 그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나자, 대동법의 확대 실시는 순조롭게 이루어져 갔다. 반세기에 걸쳐 찬반의 논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조익·김육 등에 의하여 대동법이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정비된 까닭이기도 하였지만, 대동법의 운영을 원활하게 진전시켜 줄 수 있게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기 시작한 까닭이기도 하였다. 상업의 발달, 수공업의 성장, 도시의 발흥, 화폐의 유통, 車輪의 통행, 서민의 사회경제적 향상 등이 대동법의 시행과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김육의 旅店설치론, 화폐주조론, 水車·거륜 보급론 등도 그 실제는 모두 대동법의 시행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전개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과 함께 간과해서 아니될 사실은 대동법의 점차적인 확대 시행에 따라서 都下의 양반 권세가들이 공물 물종을 매점 매석하고, 또 공인의 이권을 점유하는 사례가 왕왕 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그들도 대동법의 시행에 적응하여 새로운 수익의 추구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라도 山郡의 대동법은 이 같은 일련의 변화가 전개되는 속에서 실시되었다. 앞서의 경우와는 달리 좌참찬 송시열이 현종 즉위초에 제안하여 그 이듬해 6월에 作木(쌀을 무명으로 바꾸어 수납하는 것) 사항만을 논의 결정(1결당무명 2필, 쌀 6말 5되=무명 1필)함으로써 별다른 논란을 겪지 않고 그 실시가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흉년을 당하여 즉시 시행되지 못하다가 현종 3년 (1662) 7월에 예조판서 金佐明의 건의에 따라 그해 가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事目(全羅道大同事目)은 김육의 유언에 따라 김좌명과 전라감사徐必遠이 마련하여 그 이듬해에 반포되었다. 그러나 이 전라도 山郡의 대동법은 그곳 유생들의 항변으로 말미암아 현종 6년 12월에 잠시 停罷되었다가현종 8년 봄에 다시 시행되는 곡절을 겪었다. 대동법의 실시에 앞서 마땅히수행했어야 할 양전을 행하지 못한 까닭이었으니, 이때 1결당 부과액이 쌀12말로 감하되면서 作木換價도 8말 당 1필로 개정되었다.

## (4) 상정법의 병행

전라도에 뒤이어 대동법의 시행이 논의된 곳은 함경도였다.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4개 도 가운데, 평안도에는 이미 인조 24년(1646)에 西糧

(毛糧)의 폐지와 동시에 제정된 이른바 收米法이 民庫의 설치·운영과 함께 시행되고 있었고,<sup>17)</sup> 황해도에는 공물의 수미상납제와 進上의 私大同이 역시 인조 24년(1646) 이래로 널리 유행되고 있어서<sup>18)</sup> 대동법의 시행이 절박하게 요망되지 않았지만, 함경·경상의 양도에는 이 동안에도 아무런 광구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민원이 드높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상도의 경우는 대동법의 시행에 앞서 수행해야 했던 양전의 곤란으로 인하여 그 실시 논의가 뒷날로 미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함경도에는 그 도의 양전이 끝난 현종 7년(1666)에 감사 閔鼎重의 건의에 따라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변방인데다가 전토가 척박하여 군현들간에 사정이 매우 달랐으므로 이미 행한 대동법과는 달리 군현과 田種에 따라 그 수세량과 물종을 각기 다르게 정하는 이른바 詳定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동법이 목적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각 지방의실정에 알맞도록 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 것이었으니,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았다.19)

○ 正田과 續田에서 각 군현의 공납물가에 알맞게 베(麻布), 또는 쌀로 균등하게 부과·징수(베는 1~2필, 쌀은 2~3말)하여 이를 수령이 서울의 해당 관서에 직접 납부한다. 輸納에 소요되는 쇄마가와 공용 잡비도 이에 포함시킨다.

<sup>17)</sup> 金玉根은 평안도의 수미법을 대동법 및 상정법과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평안도에도 대동법이 실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金玉根, 앞의 책, 1988, 23~24쪽). 그러나 이에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sup>18)</sup> 황해ㆍ평안도의 공물은 광해군 3년에 毛糧(鐵山 椵島에 駐屯한 明將 毛文龍軍의 兵糧, 일명 西糧・唐糧) 공급을 위한 조치로 충청ㆍ전라도에 이전되고, 그대신 황해ㆍ평안도에서는 모든 전토에서 1결당 쌀 7말씩(모량 元額 1말 5되+兩湖毛糧條)을 課收하여 모량으로 하였는데, 인조 24년에 毛營이 철폐되면서 모량도 폐지되어 兩湖에 이전되었던 공물이 다시 兩西에 부과되게 되었다. 이때 양서의 공물수납을 收米상납제로 하면서 황해도에서는 결당 5말씩을, 평안도에서는 直路 13邑은 결당 5말씩, 기타 29邑은 6말씩을 각각 부과하여 황해도는 그 모두를, 평안도는 그 중 3말씩을 貢物價條로 호조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평안도의 貢物價米는 숙종 34년에 황해도가 평안도에 이송하고 있었던 管餉穀(關西軍糧)으로 대치되어 황해도가 대신 호조에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를 別收米(결당 3말)라 하였다.

<sup>19)</sup> 함경도의 경우 상정사목이나 사례가 전하는 것이 없어《續大典》·《度支志》·《增補文獻備考》등의 기록에 의거한다.

○ 각 營・官需는 그 소요량을 정전에서 균등하게 징수하여 사용한다.

함경도의 상정법은 상정세의 부과·징수와 이의 지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던 데서 뒷날 속전의 증가와 징수량의 과다 및 불균과 같은 폐해를 유발시킬 소지를 지니고는 있었지만, 각 군현의 실정을 최대로 적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제는 함경도와 상황이 비슷했던 강원도·황해도에도 확대되어 갔다.

대동법이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강원도의 경우는 숙종 36년(1710)에 양전을 행함에 따라 26개 군현을 셋으로 구분하여 그 부과·징수를 상세히 정하게 되었고, 뒤이어 영조 30년(1754)에 영의정 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완전히상정법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공물의 수미상납제와 사대동이 겸하여 행해지고 있었던 황해도의 경우는 숙종 20년에 우의정 朴世采의 건의로 대동법의 시행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상정과 대동의 체제를 놓고 논란을 벌리다가 숙종 34년 가을에 상정법으로 낙착·시행되었다. 실시 직후부터 군현에따른 징수량의 심한 차이(1결당 최고 50말에서 최하 15말)로 인하여 다시금 논란이일어나 끝내 영조 23년에 1결당 쌀 15말(別收米 3말 포함)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대동의 체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약간의 상정세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상정법을 병행시켜 갔고, 또 그 징수와 지출에 있어서도 상정의 체제를 그대로 지속시켜 갔던 것이다.

한편 경상도에는 양전을 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경도에 뒤이어 숙종 3년 가을에 도승지 李元禛의 건의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兩湖에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가장 役이 가벼웠던 영남의 民役이 다른 도에 비하여 배나 무겁게 되어 도민의 원성이 드높고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양전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경상도의 부과량은 1결당 쌀 13말(以米7斗 作木1疋)로 책정되었다.

이리하여 광해군 즉위년(1608)에 경기도에 실시된 대동법은 꼭 1세기 동안에 걸쳐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다. 제주도는 藩屬視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어이곳 외의 전 지역에서 공납제가 폐지되고 그것이 전세의 일종으로 대치된 것이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각종의 徭役을 비롯한 廩俸, 主人役價 등이

민호의 부담에서 떠나 대동세에 수용되었다. 김육이 논의한 대로 전세 이외—실제로는 지방에 따라 三手米가 또한 있었다—에는 모든 公課가 이에 포함되어서 한번 대동세를 납부하고 나면 終年토록 편안히 지낼 수 있고, 또 농사에만 오로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제정·시행된 것이다.<sup>20)</sup> 그리고 이 제도는 고종 31년(1894)의 갑오경장에서 地稅로 통합되기까지 200여년 동안 조선왕조 재정의 基幹으로 존속하여 갔다.

## 2) 대동법의 내용

### (1) 대동세의 부과ㆍ징수

대동·상정법은 앞서 기술한 바 있듯이 일차적으로 공납의 전결세화를 기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 부과는 자연히 전·답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또그 세액과 징수 및 납부 수단도 전답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당시 교환의 척도이자 수단의 하나였던 쌀(백미)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이제 그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부과대상전결

대동세는 매년 8월에 작성되는 收租案(田稅課收臺帳)의 전결 가운데서 각종의 給復田(免賦出稅田)을 제외한 모든 전·답에 부과하되 秋捧分은 舊結에, 春捧

<sup>20)</sup> 대동법의 제정・실시를 "궁극적으로 봉건정부가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추진한 것이었기에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한국사 9》, 한길사, 1994, 144~145쪽)고 이해하거나,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한 미봉적 조치였다. 어찌보면 토지관계에서 비롯되는 봉건체제의 기본적 모순을 은폐하고자 한편법의 하나였다"(같은 책, 118쪽)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崔完基는 앞의 글에서 과세기준이 민호에서 전결로 바뀐 것도 궁극적으로는 토지에 기초하는 봉건사회의 특질을 보다 공고히 한 조처라고 하면서 대동법을 "봉건적 특성이 보다 강요된 수취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동법의 실시가 뒷날 정치의 실종으로 인하여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제정당시 토지소유가 거의 양반층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전호(농민)의 부담을 지주(양반)의 부담으로 이전시킨 조처, 즉 실질적으로는 조선사회의 특권지배층인 양반에게 頁・役의 대부분을 이전(부담)시킨 조처라는 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는 이해・기술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分은 新結에 각각 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종의 免賦田(免賦出稅田과 免賦免稅田), 예를 들면 宮房田, 營·衙門屯田, 官屯田, 學田, 陵·園·墓位田 등에서는 대동세가 면제되었으니, 이는 대동법이 종전의 貢賦에 대신한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들 면부전에서의 면제는 규정된 결수에만 한하였고, 또 면부출세(各自收稅)였던 衙祿·公須田에서는 지방관아의 官需가 대동미 중에서 획정·지급됨에 따라 대동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원칙, 즉 '元帳付-[(免賦免稅田+流來陳田+給災田)+衙祿·公 須田을 제외한 免賦出稅田]=實結'의 공식에는 각 지방의 실정에 따르는 예 외의 규정이 부수되어 있었고, 또 실정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어 가기도 하였 다. 예외의 규정들은 대체로 종전의 공납제에서의 부담관계가 고려된 데서 마련된 것들인데 이들의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에서는 草價(生・穀草의 상납)條로 給復田에서도 1결당 쌀 2말 9되씩을 부과・징수한다. 단 陵軍・驛子・漁夫給復田과 楊州・陽智의 人吏給復田에서는 그 役이 무겁기 때문에 이를 면제한다.
- 경상도에서는 驛東·驛卒에 대한 給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전답에서도 1 결당 쌀 2말씩을 과수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숙종 5년(1679)에 이조판서 李 元禎의 건의에 따라 폐지되어 다른 급복전에서와 같이 대동세의 부과가 면 제되었다.
- 황해도에서는 人吏, 烽軍, 醫生, 津夫, 募入京砲, 山直, 忠・孝・節義 등의 급 복전에 대해서는 別收米 3말을 부과・징수한다. 그리고 아록・공수전에서는 각 군현의 경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동・별수미를 모두 면제한다.
-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新結에다 춘·추 兩等의 收米를 부과하여 合捧한다. 이 改規는 현종 7년(1666)에 전라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도에서의 개정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 대체로 숙종 말엽에 이르는 사이에 개정되어 《續大典》에 수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동세의 부과 대상 전결수는 이같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감이 격심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65만 결 정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45년(1769)도의 경우, 〈표 1〉에서 보듯이 함경도를 제외하고도 61만여 결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표 1⟩ 영조 45년도 각도 대동세 부과결수 (실결수)

도	ᇤ	비커스		참	<b>D</b>
도	명	실결수	각도 대동사목	각청 사례	기 타
경	기	43,646			
강 충	원	14,673			
충	청	117,979	124,746(효종 3)		
전	라	187,252	169,770(현종 3)		[ 228,800(영조 11)
경	상	189,372	156,906(숙종 3)	170,657(철종 8)	H 192.700(영조 39)
황	해	58,280			[149,300(정조 16)
7:	1	611,202결			

#### 나. 부과액

대동세의 결당 부과량은 함경·평안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쌀(白米:可食米=大同米) 12말 정도를 이루었으나, 실시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각기 달리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대동법이 1세기에 걸쳐 각 도별로 시행된 까닭이기도 하였지만, 이보다는 주로 각 도가 종전에 부담했던 각종 공납물량의 차이와각 도의 경제 사정에 따른 營·官需의 차이, 그리고 양전을 균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군현 간의 전등과 전결수의 不齊 등에서 연유되고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변동의 양태를 각 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給災에 따랐던 부과량의 변동은 일일이 살필 수 없으므로 생략한다.

경기도: 실시 당초에는 1결당 쌀 16말이었으나, 현종 3년의 양전에서 약 3만 결의 전답이 증가되어 그 이듬해부터 12말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초에는 모두 쌀로 부과·징수하였으나, 山郡民의 편의를 위하여 점차 잡곡 (小米·大豆·小豆)으로도 대납하게 함으로써 산군 9읍에는 실제로 잡곡 12말이부과되는 실상을 이루었다.

강원도:실시 당초에는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쌀 16말을 춘·추로 분등 부과하였으나,숙종 36년(1710)에 일부 군현에 양전을 시행하고서는〈표 2〉와 같이 개정하였다. 그 뒤 영조 30년(1754)에 상정법으로 개편되고,이어 영조 34년에 이를 개정하면서 12말로 균일하게 하는(大米와 田米의 차이는 있었다) 한편, 상정세를 추가 부과하고 각종 田稅類를 군현별로 상정하여 부과・징수 하게 하였다. 그 한 예로 嶺西已量 7읍의 경우를 보면〈표 3〉과 같았다.

## 494 V.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표 2〉 강원도의 군현별 대동세 부과 양태(숙종 36년)

군현의 구분	1결당 부과량	비고
嶺東 9邑:平海, 蔚珍, 三陟, 江陵,	14斗	三陟만은 小米로, 기타
歙谷, 襄陽, 杆城, 高城, 通川	14-7	邑은 大米로 수납함
嶺西已量 8邑:原州, 寧越, 平昌,	12斗	邑規에 따라 大・小米 로
旌善,春川,洪川,横城,楊口	12-7	섞어서 수납함
嶺西未量 9邑:麟蹄, 狼川, 金化,	16斗	"
金城, 鐵原, 安峽, 平康, 伊川, 淮陽	10-7	"

# 〈표 3〉 강원도 嶺西已量 7읍의 상정 내용(영조 34년)

E						田種別 絹	吉當 詳定額	į		
名	稅	種	元田畓	續田	勸耕續田	衙祿・ 公須田	衙祿・ 公須畓	均廳免稅田畓	尺火田	罷免位田畓
原州	H1	€ 稅 ⋛雜費	12斗 5斗	12斗 2斗6升2合 5斗3升8合	12斗 2斗6升2合	大米 12斗 " 5斗 " 5斗3升8合 " 2斗6升2合		① 12斗 ① 5斗 ① 5斗3升8合 ① 2斗6升2合		12斗 5斗3升8合
寧越	大詳 田三	<b>元</b> 税	① 12斗 大米 4斗 錢 3兩5錢	田米 12斗 同左 田米 4斗	① 12斗 同左	① 12斗 同左 ① 4斗 ① 2斗2升		同左	} {田米30斗 }	
平昌	大詳田三	え 税 税	田米 12斗 錢 5兩9錢3分	同左 同左	同左 同左	25斗(大・八) 錢 3兩	小米 祭半)			
旌善	大詳田三	<b>元</b> 税	田米 12斗 田米1斗9升4合 錢 5兩6錢6分	同左同左	同左 同左	同上		田米1斗9升4 合 錢 5兩6錢6分		
春川	大 岸 短 田稅 写	三 稅 以雜費	② 12斗 錢 2兩3錢4分	③ 12斗 同左 田米 4斗8升		③ 12斗 同左 田米4斗8升 田米2斗2升	大米 12斗 同左 大米 9斗	同左		
洪川	大詳知田新米	<b>元</b> 税	① 12斗 大米4斗8升4合 錢 3兩	田米 12斗 田米 4斗8升 4合 錢 3兩 田米 4斗	田米 12斗 ) 同左	大米 12斗 大米 3斗 田米 1斗 8升4合 田米 7斗 1升6合	大米 12斗 錢 3兩 大米 4斗8 升4合 大米 7斗 1升6合		}田米24斗	

E		田種別 結當 詳定額							
名	稅種	元田畓	續田	勸耕續田	衙祿・ 公須田	衙祿・ 公須畓	均廳免稅田畓	尺火田	罷免位田畓
横城	大 同 稅 定 稅 田稅 및 雜費 三手米 吳維費	② 12斗 大米1斗9升8台 錢 3兩	田米 12斗 田米 1斗9升 8合 錢 3兩 ) 田米9斗2合	同左 同左	大米 12斗 大米 1斗9升 錢 3兩 大米 9斗			田米 12斗 田米1斗9升8 合 錢 3兩 】 田米9·2合	同左 同左 同左 同左 同左

- \*1) 原州의 元田畓, 續田, 罷免位田畓에서의 收米와 峽地는 田米로, 野地는 大米로 함.
- 2) ① : 田은 田米, 畓은 大米로 收納하는 것. ② : 田은 田米·大米 祭牛, 畓은 大米 로 收納하는 것. ③ : 田米·大米 祭牛 收納하는 것.
- 3) 旌善에서는 火田蔘價錢 1.059兩을 별도로 課收합.
- 4) 楊口는 숙종 때 已量邑으로 되어 있었으나, 영조 30년의 개정 때 未量邑의 例에 따르게 되었음(〈표 2〉참조).

충청도: 효종 2년(1651) 재시행 때는 쌀 10말을 부과하였으나, 현종 15년 (1674)에 경비의 증가로 인해 12말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山郡의 作木換價도 당초의 쌀 5말 당 무명(綿布, 5升 35尺爲1疋=大同木) 1필에서 6말 당 1필로 개정함으로써, 산군 14읍에는 실제로 무명 2필이, 半沿半山 6읍에는 쌀 6말과 무명 1필이 부과되는 양상을 이루게 되었고, 이어 숙종말~영조 초엽으로부터는 錢貨의 유통에 따라 무명과 전을 반씩 섞게 함으로써 산군 14읍에는 무명 1필과 전 2냥이 부과되는 실상을 이루었다.

전라도: 효종 9년 재시행 때는 쌀 13말을 부과하였으나, 현종 7년에 경비가 남게 되자 경기도의 예에 따라 12말로 개정하여 이듬해부터 실시하였다. 그리고 작목환가도 산군민의 불평으로 인하여 당초의 쌀 6말 5되 당 무명 1 필에서 8말 당 1필로 개정함으로써 산군 23읍에는 무명 1필 18척—雲峰・長水는 베(麻布, 5升35尺 爲1疋=大同布) 1필 18척—이 부과되는 실상을 이루었다. 이어 이들 산군은 충청도의 경우와 같이 뒷날에 무명과 전을 반씩 섞어내게 되었고, 운봉・장수 2읍은 전으로만 납부하게 되었다.

경상도:실시 당초에는 경비의 부족을 염려하여 쌀 13말을 부과하였으나, 뒷날 그 餘米가 4~5만 석에 이르러서 숙종 39년(1713)에 12말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산군에서의 작목·작포환가는 당초대로 쌀 7말 당 무명(또는 베) 1필 로 지속케 하여, 산군 49읍에는 무명 1필 25척—居昌·安義·山淸·咸陽은 베 1필 25척—이 계속 부과되는 실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충청·전라도의 경우와 같이 이들 산군은 무명과 전을 반씩 섞게 되고, 또 위의 4읍은 전으로만 납부하게 되었다.

황해도:실시 당초에는 전결수가 적은 데다가 勑需 및 使行의 夫‧刷馬와 같은 비상 支用이 군현에 따라 달랐던 데서 대‧중‧소읍으로 3분하여 1결당 쌀 15~20말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곧 부과량의 불균과 과다로 말미암아 감소 조정론이 일어나 실시 2년만인 숙종 36년에 17말(별수미 3말 포함)로 일단 균일화시켰다가, 뒤이어 海州 등 11읍이 15말로 감하됨에 따라 다시 영조 23년(1747)에는 모두 15말(별수미 포함)로 균일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징수 및 京納에 있어서는 각 군현의 실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상정하는 상정법 체제를 지속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납세물종에 따라 그 부과량이 달리되고 있었다.

함경도: 앞서 기술하였듯이 각 군현별로 本郡의 진상·공물가에 상당하는 田米·麻布를 군내의 收稅實結에서 균등하게 부과·징수하여 감영을 거쳐서울의 해당 관서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또 正田에 한해서 미·두·잡물등을 적절히 부과·징수하여 營·官需에 쓰도록 상정하였기 때문에, 실시 당초부터 군현과 田種에 따라 그 부과량이 각각 달랐다. 함경도의 특수한 사정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그 사목이나 사례가 전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 부과·징수가 각 수령에게 일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차 부과량의 2~3배가 징수되는 실상을 빚어내어영조 39년에 크게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 역시 살필 수 있는 문헌이전하고 있지 않다. 다만 元貢의 일부를 滅除하고, 부과·징수와 支用을 규제하며, 서울의 여러 관서에 직접 상납하던 진상·공물가를 상평청에다 모두납부하도록 하고, 安邊府에 한해서는 정전과 속전을 막론하고 상정세를 균등히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sup>21) 《</sup>備邊司謄錄》 60책, 숙종 36년 8월 29일. 이 기록에 따르면 兎山이 20말, 鳳山 등 11개 읍이 19말, 기타 11개 읍이 15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동세는 그 부과액이 전세에 비하여 매우 많았던 데다가 田稅收租實結과 그 결수가 비등하였기 때문에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農形 의 풍·흉에 따라 그 부과량의 차가 심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백미로 53만 석 정도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니(〈표 1〉및〈표 6〉참조), 이에서도 공납제 시 절에 농민이 부담했던 각종 공납·요역의 정도를 대강 미루어 볼 수 있겠다.

#### 다. 징 수

대동세는 그 부과가 전·답을 대상으로 하여 쌀로 이루어졌고, 또 당시 교환수단의 하나가 쌀이었던 까닭에, 그 징수도 자연 本色=백미를 수단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대동법이 실시된 경기도에서는 물론, 뒤이어 실시된 강원도에서도 논보다는 밭이, 정전보다는 속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밭을 막론하고 소정의 부과량을 백미로만 징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효종 3년(1652)에 충청도에 대동법이 다시 시행되면서 이 원칙은 파기되기 시작하였다. 인조 원년(1623)에 처음 시행하였을 때의 산군민의 불평, 즉 연해읍에 비하여 쌀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漕倉까지의 운반비도 많아서 실제로는 산군민의 부담이 더하다는 불평을 대동미의 漕運難과 함께고려한 김육이 〈忠淸道大同事目〉을 마련할 때 산군을 따로 정하여 이 곳에서는 소정의 무명(대동목)으로 환납하도록 규정지어 놓은 것이었다. 이른바換捧의 제도가 강제 규정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충청도 대동법에서 비롯된 이 환봉의 제도는 대동법의 시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운의 편익에다가 보관·지용의 편익을 더하여 가면서, 또 산군과 특수 지역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가면서 더욱 확장되어 갔다. 전라도산군에 대동법을 시행할 때는 무명과 함께 베도 환봉의 물종으로 하게 되었고, 숙종 말엽으로부터는 常平通寶의 유통을 위하여 錢을 또한 환봉의 물종으로 적용하여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납세자의 요망에 따라 代捧의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대봉의 제도는 그 시작된 시기가 아직 분명치 않지만, 쌀로만 징수되던 강원도의 대동법이 위에 제시한 〈표 2〉의 내용으로 숙종 36년(1710) 개정되 기에 앞서, 이미 경기도에 산군이 설정되면서 그곳에서는 잡곡(小米·大豆·小 豆 등)으로도 대납할 수 있도록 개정(〈표 4〉참조)되었던 것으로 보면, 현종·숙종 연간에 경기도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대봉의 제도는 강제 규정으로서의 환봉의 제도와는 달리 전적으로 납세자의 의사에 따르는 임의 규정으로, 지정된 군현에 한해서는 부과량과 같은 양의 잡곡으로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대납에서 오는 이익을 계속 취하여 갔던 데서 그 물종과 수량이 거의 고정화되어 강원·황해도에 적용될 때는 지방에 따라 물량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환봉 및 대봉의 제정·확장은 그 물량이 곧 부과물량으로 고정되는 실상을 이루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환봉·대봉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대동세 정수의 주종은 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뒤에 소개하는 〈표 8〉에 보이는바와 같이, 쌀이 宣惠廳 수입액(京納分)의 50~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錢이 20~25%를, 무명이나 베가 15~2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4〉 각 도별 부과·징수 양태(순조 9년도)

부	과	- H		징	수
1결당부과량	구 분	도명	구 분	물 종	환 작 가
米12斗		경기	沿邑23邑	大米	
			山郡:朔寧	』 』 小米, ↓ 大	• 小豆
			連川	2/3 " 1/3 "	·
			楊根	% , % 大	
			積城	"	
			麻田	"	
			加平	小米	
			抱川	"	
			砥平	% 大米, % :	
			永平	(田結甚少, 不	為上納)
米 14斗	嶺東9邑		嶺東9邑	布	大(小)米 5斗=1疋
詳定米 各異	限不り口		展末30	sth.	人(17)水 5-1 -1人
米 12斗	嶺西已量	강원	嶺西已量 7邑	布	"
詳定米 各異	7邑		山郡 14邑	大・小米	
米 16斗	嶺西未量		嶺西未量 4邑	錢	  小米 1石=6兩
詳定米 各異	10邑		限四小里 4巴	蚁	1, 1/2 1/11 — O MA

부	과		느머			징		수	2	
1결당부과량	구	분	도명	구	분	물	종	ē	<u></u> 작	가
				沿邑 3	84邑	大米				
米 12斗			충청	山郡 1	.4邑	木・錢	祭半	大米	6斗=1	疋=2兩
				半山半	沿 6邑	米・木	添半	大米	6斗=1	疋
				沿邑 3	80邑	大米				
米 12斗			전라	山郡 2	21邑	木・錢	叅半	大米	8斗=1	疋=2兩
				"	4邑	布(代錢	()	"		
				沿邑 1	2邑	大米				
米 12斗			경상	山郡 4	15邑	木・錢	叅半	大米	7斗=1	疋=2兩
				"	4邑	布(代錢	()	"		
米 12斗				山郡 4	1邑	錢		大米	1石=4	1兩 5錢
			황해	長山以	北 11邑	亚艾		小米	1石=3	3兩 5錢
別收米 3斗				長山以	南 8邑	大米・	餞	小米	1石=3	3兩 5錢

\*강원: 嶺東 9邑: 江陵, 三陟, 平海, 杆城, 高城, 通川, 蔚珍, 襄陽, 歙谷.

嶺西已量 7邑:旌善,平昌,淮陽,金城,金化,麟蹄,平康.

" 未量 4邑:伊川, 安峽, 楊口, 寧越.

충청: 山郡 14邑: 靑山, 鎭岑, 永春, 文義, 沃川, 槐山, 懷德, 丹陽, 延豊, 黃澗, 永同, 淸風, 懷仁, 報恩.

半山半沿 6邑:鎭川,燕岐,木川,清州,全義,清安.

전라:山郡 21邑:南原, 光州, 泰仁, 潭陽, 淳昌, 金溝, 任實, 南平, 綾州, 鎭安, 昌平,

谷城, 錦山, 同福, 茂朱, 高山, 求禮, 玉果, 和順, 龍潭, 珍山.

" 2邑:雲峰,長水.

경상:山郡 45邑:豊基, 醴泉, 興海, 永川, 淸道, 慶山, 義城, 盈德, 龍宮, 奉化, 眞寶,

延日, 禮安, 軍威, 義興, 新寧, 河陽, 慈仁, 清河, 彦陽, 尙州, 陜川, 金山, 聞慶, 咸昌, 開寧, 知禮, 三嘉, 順興, 英陽, 安東, 靑松, 寧海, 長鬈, 慶州, 榮川, 大邱, 星州, 漆谷, 仁同, 比安, 善山, 草溪, 高靈,

東萊.

4邑:居昌,安義,山清,咸陽.

황해:山郡 4邑:新溪, 谷山, 遂安, 瑞興.

長山以北 11邑:黄州, 安岳, 信川, 載寧, 長淵, 殷栗, 長連, 文化, 豊川, 松禾,

鳳山.

"以南 8邑:海州,延安,白川,平山,金川,甕津,康翎,兎山.

환봉에 따랐던 換作價에 관해서는 앞서 부과량의 기술에서 그 대강을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도별 징수(代捧·換捧과 本色收捧) 양태를 앞서 기

#### 500 V.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술한 부과 양태와 함께 《萬機要覽》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았다. 그리고 징수량의 실상은 뒤에 소개하는 〈표 6〉으로 대신한다.

## (2) 대동세의 지용

#### 가. 세출예산의 편성

대동법은 종래의 공물·진상물과 농민의 제반 요역을 전결세화한 것이기때문에 그 收米의 용도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공물·진상물의 마련을 위한 京納分(상납미)과 각 군현의 官需 및 잡역의 충당을 위한 留置分(유치미)으로 크게 나뉘어 支用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량은 당초의 각 도별부과량이 그러하였듯이, 종래의 부담 물종과 그 수량에 따라 환산·편성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대동법에서는 1결당 16말 중 14말을 경납하고 2말을 유치하게 하였고, 강원대동법에서는 10말을 경납하고 6말을 유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상납·유치의 편성은 전결수가 적은 군현의 경비 부족을 초래하여 일부 군현에서는 과외 징수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충청도에 대동법이 다시 시행될 때(효종 3년, 1652)는 대동미 중 春捧 5말을 상납하고 秋捧 5말을 유치하게 하되, 상납미로서 지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결수가많은 군현, 즉 유치량이 소요 경비를 초과하는 이른바 有裕官의 餘米에서 수납 충용토록 하는 새로운 편성 방법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뒤이어시행된 전라·경상도의 대동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갔다. 이른바 收租頒降의 예산 편성 방법, 즉 매년 각도 대동청에서 필요한 상납 수량을 결정한 다음에 營・邑의 관수와 유치량을 조정 배분하여 이를 감영에 통보하여 시행케 하는 대동세 지용방법이 수립되어 간 것이다. 이제 그 수량의 일단을 大同事目에 보이는 바로 예시하면 〈표 5〉와 같았다.

〈표 5〉 대동세의 상납미 및 유치미

送々(ヨモ)	≅⊞ 1/ <i>b</i> ,	上納米		留置米		
道名(년도)	課收量	量	%	量	%	
충청(효종 3)	83,164석	48,280석	58.1	34,884석	41.9	
전라(현종 3)	147,134석	61,218석	41.6	85,916석	58.4	
경상(숙종 4)	137,452석 14두	53,507석 13두	38.9	83,945석 1두	61.1	

이리하여 대동세의 지용을 위한 예산의 편성제도는 한 동안 두 가지 형태로 도에 따라 달리되는 양상을 이루었었다. 그러다가 대동법의 시행이 전국에 미치게 되고, 또 그 부과량이 1결당 12말로 거의 균일하게 되자, 대동법은 그 운영의 차원을 도 단위로부터 전국적인 단계로 높이면서 예산의 편성제도도 收租頒降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통일·정비되어 갔다. 磨准收租와 式例劃給의 방법이 더하여지고, 依例會減과 隨時會減의 구별이 마련되어 가면서 선혜청이 그 지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조절·시달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萬機要覽》과 각 도 大同廳事例에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각 도의 式例에 따라 소정의 부과량을 정수한 뒤에 선혜청은 각 도 營・邑의 官需와 경납 및 유치량을 적절히 산정하여 이를 각 도에 통보한다. 단 이 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春捧+有裕官餘米=上納米」,「秋捧=留置米」의 원칙에 입각하도록 한다[收租頒降].
- 각 도는 이 收租頒降의 實數에 따라 영・읍의 소요 예산을 작성하고, 그 명세를 선혜청에 보고한다. 예산의 작성은 경기・충청・전라・경상도에서는 대동사목에, 강원・황해도에서는 상정사목에 각각 의거하되 仍定進上物은《貢膳定例》에 의거하도록 한다[磨准收租].
- 각 영·읍의 官需나 使客支供價와 같은 恒定된 항목의 경비는 式例에 따라 선혜청에서 劃給한다[式例劃給].
- 경납과 획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군현의 유치미로 하고, 이를 매년 고정 적으로 지출하는 항목과 수시로 지출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그 예산을 편성 한다. 전자를 의례회감으로, 후자를 수시회감으로 구분 편성하되, 대동・상 정사목과《貢膳定例》에 의거하여 준행하도록 한다.
- 磨准收租 때 전년 儲置分의 잔여가 있으면 이를 添錄하고, 加下(초과지출) 가 있으면 이를 除滅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납분에는 田貢條인 位米・太(강원・충청・전라・경상도에 한함)와 京作頁으로 전환된 皮物價, 牛黃價, 雉羽・正筋價(이상 충청・전라・경상도에 한함), 獵肉價(강원・함경도에 한함), 頁 萎價(강원도에 한함) 등을 각기 添錄하도록 한다. 단 황해도의 별수미는 호조에 直納한다.
- 磨准收租에 등재되지 아니한 항목의 지출은 선혜청의 허가를 얻은 뒤에 집행 하다.

#### 502 V.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이러한 세출예산 편성제도에는 상납미를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개재되었던 것으로도 생각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숙 종 말엽부터 대동세의 상납 수량이 점점 증대되어 갔을 뿐 아니라, 징수량의 거의가 상납되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했던 가운데 서도 가장 균형을 이루었던 것으로, 《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된 것으로 추측되 는 영조 45년(1769)도의 편성·지출 양상을 예로 들어보면 〈표 6〉과 같다.

대동법의 실시에는 경납분(상납미)의 원활한 지출·집행을 위하여 상납 기한 및 운수 방법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상납물종과 道程을 참작하여 마련된 이 규정은 시기에 따라 약간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표 7〉에서와 같이 대체로 이듬해 3~5월을 그 기한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혜청에서의 신년도 세출의 집행도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로는 대체로 3월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표 6〉 대동세의 수세량과 지용액수(영조 45년도)

道名	收稅 總量	上納額數	貢價用下額	各樣用下額	本官所用	儲置米數	儲置用下額	備考
경기	米 35,894	22,482	18,116 木 13,484 錢 27,690	2,602 16 310	7,532	5,235	6,970	<ul><li>0 復戶收米</li><li>978石 포함</li><li>○慶州軍餉</li></ul>
			致 27,090	310				645石 劃給
	米 ) 19,346 雜穀 )	米 1,120	4,971	962	米)7,716	3,978	3,978	
강원		布 7,400	3,289		雜穀			
7672	錢 76,054	錢 16,000	34,254	519	7,697	52,557	63,343	
		位太 205	布 3,261	2,550				
	米 94,383.3	47,851	36,814	3,331	18,630	20,205	11,431	
		木 17,700	19,529	4,080				
충청		錢 35,200	40,031	5,602				
0.0		位太 4,651						
		位米 792						
		位木 1,318						
	米 149,800	69,300	36,543	5,430	20,018	32,064	13,414	
		木 38,500	30,285	12,665				
전라		錢 77,000	62,879	12,977				
[센터		位太 5,700						
		位米 548						
		位木 102						

道名	收稅 總量	上納額數	貢價用下額	各樣用下額	本官所用	儲置米數	儲置用下額	備考
	米 151,498	33,724	33,705	2,566	29,115	23,044	32,728	0 公作米
		木 67,400	37,712	51,069				5,332石
  경상		錢 134,800	82,399	10,339				劃給
78.9		位太 1,277						
		位米 25						
		位木 3,101						
	米 58,858	4,459	507		20,731	15,129	17,739	○別收米
황해		錢 12,250	2,427					12,234石
경에			木 263					포함
								○劃給*
		錢 969	629		/武以足姓	北川版補山	- 佐	
     함경		5升布2,170	1,854		(或以民結 或以取殖收捧 故只以京貢價 叅量上納 餘數留置 各邑用下)			
14 78		4升布3,144	3,662					
		續布 1,507	1,198			在巴川 [7]		

<sup>\*</sup> 單位:米・太=石,木・布=疋,錢=兩.

## ⟨표 7⟩

## 대동세의 상납기한

道名	物種		. 納	期	運 輸(萬機要覽)
旭和	1/0 1主	大同事目	《萬機要覽》	大 同 廳 事 例	庄 18(1内以女兒)
경기	*	?	翌年 3月 10日 內	?	水站站紅
	雜穀		"	?	駄馬
강원	米穀布錢	? ?	翌年 4月 內 ""	翌年 4月 內 〃 5月 內 〃 2月 內	水站站舡, 駄馬 駄馬
충청	米木錢	翌年 4月 內 〃 1月 內	翌年 3月 10日 內 " 3月內 "	? ? ?	漕倉漕紅・水站紅・舟橋紅 駄馬
전라	米 木・布 錢	翌年 4月 內 " 1月 內	翌年 4月 10日 內 " 3月內 "	翌年 4月 内(初運)・6月 内(再運) " 3月內 "	漕倉漕紅 → 舟橋紅 駄馬
경상	米 木・布 錢	翌年 4月 內 " 1月 內	翌年 5月 15日 內 " 4月內 "	翌年 5月 15日 内 ? ?	漕倉漕舡 駄馬
황해	米 穀 錢	?	翌年 3月 10日 內 " 3月內	翌年 3月 內	賃舡 駄馬
함경	田米· 布	?	?	?	駄馬

<sup>\*</sup> 경기의 廣州・江華・水源府와 永平縣은 留儲本官함.

<sup>\*\*</sup> 황해도 劃給: 監營藥材價米 400억,戶曹貢物價米 11,898억,常平廳皮物價米 159석,訓鍊都監兼料不足代米 1,000억,賑恤廳銃藥丸價米 898억,摠戎廳添餉條米 1,000억.

#### 504 V.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나. 상납미의 용도

京納된 상납미는 종래 각 도가 현물로 각 관서와 궁방에 직납하던 각종의 공물(元貢・別貢・田貢) 및 세폐・방물과 일부 제향・진상물의 구입비로 각司・宮과 공인에게 그 대부분이 지급되고, 각종 수수료와 역가에 그 나머지의 일부가 지출되었다. 각 도의 공납 부담이 각기 달랐고, 또 이에서 그 예산의 편성이 달리 되었기 때문에 각 도별 상납미의 用目은 약간씩 상이하였지만, 종래의 경납 물・역의 거의 대부분을 그 용목으로 하였던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이제 그 한 예로 《全羅道大同事目》에 규정된 전라도 상납미의 용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안은 필자 註記임).

- ① 歲幣 大・小好紙價
- ② 歳幣 上・次木價
- ③ 方物 白綿紙價
- ④ 宗廟薦新 蕨菜·天鵝價
- ⑤ 三名日進上 甲冑・馬・馬装價
- ⑥ 仁壽宮進排 物膳價
- ⑦ 内醫院 藥材(牛黄・熊膽・麝香)價 [이상 進獻・進上物種價]
- ⑧ 二十八司 元貢物價[元頁物種價]
- ⑨ 田稅條頁物價[田頁物種價]
- ⑩ 訓鍊都監 眞絲・魚膠價
- ① 內弓房 魚膠・正筋價
- ② 物使留館時 所用 鷄・猪價 [이상 別頁物種價]
- ③ 備邊司 襦・紙衣價
- (4) 禮曹 各樣紙地價
- ⑤ 觀象監 各樣紙地價
- 16 濟用監 正布價
- ① 軍器寺 錚鼓價[이상 加定 元貢物種價]
- 18 工曹 漆田 全漆價
- ⑩ 造紙署 楮田所出物價
- ② 掌園署 果園 結實價[이상 官田所出物種價]

- ② 戶曹 作紙價
- 22 工曹 其人作紙價
- ② 司僕寺 分養馬 馬裝·作紙價
- 24 江華所納 其人布價
- ② 戶曹 貢主人役價
- 26 各官 京主人・房子役價
- ② 迎接都監 京婢·房子役價
- ② 禮葬造墓軍役價[이상 雜稅條 物種・役價]

그러면 이러한 용목으로 이루어진 각 도의 상납미는 선혜청에 의하여 어떠한 관서와 공인들에게 얼마나 지급되었고, 이들 액수에 대한 각 도 대동청의 부담액은 얼마나 되었는가. 《萬機要覽》(財用篇 各責條)에 나타나는 바를 요약 정리하여 보면 대개 아래와 같았다.

- 상납미는 매년 58개 처에 고정된 액수가 지급되고, 大殿(朔膳物種價)를 비롯한 10여 개 처에도 수시로 소요의 액수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액수는 전자의 액수에 10%도 되지 않는 소액(약 米 14,500석)이었다. 따라서 상납미 용목의 주종은 어디까지나 전자에 있었다고 보겠다.
- 매년 고정액이 지급되는 58개 처의 지급 대상 중에서 38개 처가 정부관서 였고, 나머지 20개 처는 契・廛・其人・主人類였다. 정부관서 중에는 비변 사・호조・예조・공조・京營 등도 있었으나, 奉常寺를 비롯한 왕실 支用과 進獻・賜與 관계 관서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급액수에 있어서도 濟用監(쌀 17,395석)・奉常寺(쌀 11,522석)・司纂寺(쌀 11,316석) 등을 비롯하여 司僕寺・長興庫・司宰監 등에 가장 많아서 대다수의 상납미가 이들 관서의 소요 물종에 지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각종 계·전·주인과 기인에게 직접 공물·역가가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기인(쌀 38,721석)을 제외하고는 각 전(上歲幣:쌀 6,000석) 및 修理契(쌀 5,000석)와 京主人・房子役價(쌀 5,373석)만이 비교적 다액을 이루고 있었을뿐, 대체로는 소액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것은 대동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정부관서를 통하여 그 소속 공인들로 하여금 소요 물품을 조달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보겠다.
- 상납미에 포함되어 있는 각 도의 田稅條貢物價는 位米・位太로 구분지어

선혜청에서 수납하는 즉시 호조로 이송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납미의 용 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 대동청이 상납미로서 부담했던 공·역가는 년 간 쌀 約 244,000석 정도로, 진휼·상평·균역청과 함께 부담하는 선혜청 전체 공역가(쌀 약 252,000석)의 97%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이의 대부분인 약 81%가 전라·경상·충청의 순으로 삼남 대동청에 의하여 부담되고 있었다. 단, 해서청의 別收米(호조에 직송), 경기청의 逐供上, 경상청의 公作米(東萊府에 직송) 등 별도의 부담은 계산하지 않았다.
- 경기청은 京營・司僕寺・內農圃・刷馬契・漁夫契 등의 공역가를 홀로 부담하고 있었고, 강원청은 關東 蔘契와 關東 方物契를, 호서청은 長寧殿과 養賢庫를, 해서청은 水鐵契와 新穀契를 각각 홀로 담당하며 그 공・역가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 이유는 강원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알 수 없다.

⟨₩ 8⟩

선혜청 수입ㆍ지출표

물 종	단위	영조 35년	년도(1759)	순조 7년	도(1807)	
돌 중	딘뀌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米	石	195,163	180,905	146,167	132,910	
田米	石	4,433	2,568	1,988	2,142	
太	石	10,035	11,053	11,291	11,763	
小豆	石			195	195	
木	疋	123,656	118,612	117,775	109,855	
布	疋	15,646	11,204	8,306	6,158	
錢	兩	288,433	324,287	340,463	377,613	
以錢換作		1,590,689兩	1,531,875兩	1,375,870兩	1,318,631兩	
以米換作		318,158石	306,375石	275,174石	263,726石	
收 支	差	잔액 58,814	兩(11,783石)	잔액 57,239兩(11,448石)		

<sup>\*</sup>換作價:米 1石=錢 5兩, 田米 1石=錢 4兩, 太·小豆 1石=錢 3兩, 木·布 1疋= 錢 2兩.

선혜청에서 수납한 상납미의 收支상황은 《만기요람》(財用篇 宣惠廳 원년 經用)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표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체로 흑자를 이루었다. 收租頒降의 제도를 시행하여 상납미가 유치미를 적지아니 침식한 데서 이루어진 결과로도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일부 진상물과 役들이享上之儀를 존속시킨다는 명목아래 유치미로서 備納하게도 하고, 또 難得・

<sup>\*\*</sup> 收入은 上納米와 기타 收入의 합계임.

難備之物이 아니라는 명목아래 民戶나 특정인에게 종전대로 비납하게도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라도의 경우, 宗廟薦新物膳(蕨菜·天鵝를 제외한물품)을 비롯한 6개 처의 경납물이 전자에 속하고 있었고, 進上虎皮・豹皮價, 迎接都監 樂工奉足役價, 上納牛・馬牽軍役, 禮葬・公幹護送擔軍役 등이 후자에 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 다. 유치미의 용도

상납미의 용도가 이러했던 데 반하여 유치미는 주로 지방의 경비와 상납물종의 수송비로 지용되었다. 즉 종전에 각 도 및 군현에서 俸廩・徭役・雜稅條로 민호와 전결에서 적당히 징수하여 사용하던 모든 경비와, 앞서 기술한 仍定進上物의 구입비, 그리고 상납미를 비롯한 제반 경납물의 수송비(船馬價)로지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 역시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약간 다른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대체는 거의 동일하였으니, 이제 그 한 예로〈全羅道大同事目〉에 규정된 바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다([] 안은 필자 註記임).

- ① 宗廟薦新物膳價 [蕨菜・天鵝 제외]
- ② 朔膳 및 進上方物價[物種 未詳]
- ③ 內醫院 藥材[植物性 藥材]: 青大竹價
- ④ 工曹進上 扇子價
- ⑤ 内弓房 油物價[이상 仍定進上物價]
- ⑥ 監司到界進上物 및 端午 扇子價[이상 依例會減]
- ⑦ 각 營・官需 [五營將・軍官料米와 各官 油清・紙地・使客支供米를 포함], [式例 劃給], [이상 俸廩條收納物價]
- ⑧ 釋奠祭 幣帛・牛脯價
- ⑨ 社稷 및 賜額書院 幣帛價
- ⑩ 慶基殿 祭物 및 參奉粮饌價
- ① 水·陸軍習操時 稿饋價
- ① 月課軍粮・軍器價
- ③ 海運判官 紙地價
- ④ 戦・兵・哨ケ舡 新造 및 改槊價[이상 依例會減]
- ⑤ 刷馬價

- ① 文·武試所入 雜物價
- ① 分養牛·馬上納時 牽軍役價
- (18) 上納文案封裏柳笥・草席・條所價
- ① 城隍·厲祭 祭需價
- ② 諸島 搜討 및 箭竹刈取時 軍粮
- ② 分養馬故失價
- ② 船馬價[이상 隨時會減],[이상 徭役・雜稅條收納物價]

이러한 유치미의 용목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것은 營・官需(20~25%)였다. 상납미의 책정과 함께 式例에 따라 획급되었던 이 영・관수는 營需와 官需로 구분・지용되었는데, 이 중에 관수는 도별로 군・현의 크기, 즉 보유전결수의 다소에 따라 大・中・小・殘邑으로 4분하고, 거기에다 교통의 빈번 여하를 참작하여 그 급여액이 차등 책정되었다. 전라도의 경우는 보유 전결 6,000결 이상을 대읍으로, 이 이하 4,000결 이상을 중읍으로, 이 이하 3,000결 이상을 소읍으로, 僅過 1,000결을 잔읍으로 각각 구분하여<sup>22)</sup> 관수를 획급하였으니, 그 구체적인 양태는 〈표 9〉와 같았다.

영·관수를 획급하고 난 나머지 유치미는 각 군·현에 儲置되어 依例會減과 隨時會減으로 구분·지용되었다. 의례회감하는 것은 대체로 仍定進上物이나 각종 船舡의 新造·改槊과 같이 지용 시기 및 그 액수가 거의 恒定된 용목들이었고, 수시회감하는 것은 대체로 그러하지 못한 용목이나 사소한 용목들로서 지용에 앞서, 또는 지용한 뒤에 본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앞서 例擧한 전라도의 경우로 보면, 의례회감의 용목은 ①~⑥과 ⑧~④였고, 수시회감의 용목은 ⑤~②였다. 이들 용목 중 지출액이 많았던 몇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2) 경기·강원·황해도의 경우에는 구분 기준이 보이지 않아 아직 알 수 없으나, 충청·경상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該道 大同事目에 의거함).

	忠 淸 道	慶尚道
大 邑	5,000結 이상	6,000結 이상
中 邑	3,000~5,000結	4,000~6,000結
小 邑	1,000~3,000結	2,000~4,000結
殘 邑	1,000結 이하	僅過 1,000結

〈표9〉 전라도 營需・官需米 배정표

世紀   所在整   官需要   營密   計画   管部   登函   計画   である   であ		`	, inte	EI 64.4							
全州 保容   日本	구	분	營·邑名1 《全羅道大同事目》								
本の		T.	邑名	所在營	官需※			官需	營 需	使客支供	
□	+	海		中營將							營需中 中營將 需米 84石과 兼府尹・都事 需米가 포함됨
10	^		順天	左水營	560.			390.		25.	
本   市等   154.10   10   10   10   10   10   10   10	H		靈巖		550.			390.		20.	
長與										"	
awb 全費			咸平 長興		401.10. "					"	
韓   古成   大巻   大巻   大巻   大巻   大巻   大巻   大巻   大			臨陂		"			"		"	
1		海			"					,	
E     漢房 泉肆 泉財 府前     千女營 401.0. 401.0. 7     400. 401.0. 7     320. 330. 330. 330.     10. 320. 330. 35.       山 濟陽 東安 泉政 東安 東山 市安 中屋     401.0. 7     路邊邑 故加給 27.7. 5.     280. 7     29. 7. 5. 10. 7     29. 7. 5. 10. 7       E     高額 高額 高額 高額 高高政 中屋     271.0. 8 278.     路邊已 故加給 278. 7     280. 7     27. 7. 5.     30. 1. + 3.升 60. 228. 7     60. 10. 27. 7. 5.       B     古兼營務 278. 7     27. 7. 5.     30. 1. + 3.升 60. 27. 7. 5.     60. 27. 7. 5.     28. 7       B     古華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中				,,			l <i>"</i> ,		,,	
B					"			,,		"	
## 石木巻 406.10 250 # 401.10 250 # 400.		0			"			"		"	
長城							路邊邑 故加給	"			
山   瀬陽   201.10.   320.   300.   35.   35.   35.   35.   35.   36.   37.10.   280.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8.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10.   29.   7. 5.   29.   7. 5.   29.	邑			右水營		250.	,		400.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				
郡   泰仁		ш									
		#17					TANE II LL. MA				
大安       (1)       (2)       (	_	Пh					路邊巴 似川桁				
金山   京   京   京   京   京   京   京   京   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					_	
選集					,,			,			
株安   株安   大海   大海   大海   大海   大海   大海   大海   大		Wii .			"			,,			
大澤   大澤   大澤   大陽		伊	樂安		"			,,		,,	
上				右兼營將		84.			30. 1.斗 3.升		
E	小						之次小邑 故凘給	228.			之次小邑 故瀬給
「本語   「本語   「本語   「	Ì	邑			,		,	"			"
高敵   「「「「」」」」					,,		,,	,		,	,,
一部			高敞		"		,,	,,		,,	"
10.			龍安				"	"		_	"
競曲   競州   「「「「「」」」   「「「」」」   「「」」   「「」」   「「」」   「「」」   「「」」   「「」」   「「」」   「「」」   「「」」   「」」   「」」   「」   「」」   「」」   「」」   「」   「」」   「			井邑		426.10.		之次路邊小邑 故加給	300.		27. 7. 5.	
技術   一					271.10.			280.		10.	
1					"						
日本											
本導   508.5.   路邊小邑 故無給   373.5.   35.   路邊	邑	Ш			,,			/ <i>"</i>		_	
Tan					508. 5.		路邊小邑 故加給	373. 5.		35.	路邊邑 故加給
Tang   Tang					278.		之次小邑 故減給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mr.			"		"	"		"	
長水     左乘營務     "     84.     "     "     30. 1. 3.     "       支山     鎖安 和順同福     "     257.     "     217.     "       市     茂朱     221.10.     之次發邑 故滅給     "     "     "       北部     181.10.     "     151. 7.     5.     之次發邑 故滅給       沙山     171. 5.     "     146. 5.     10.     "		4TP			"		"	l ".		"	
雲峰     左線營務     "     84.     "     "     30. 1. 3.     "       製安 利順 同福 郡 茂朱     257. " " " " " " " " " " " " " " " " " " "					,,		,,			,,	
 				左兼營將		84.	,		30. 1. 3.	_	
表     山     和順 同屬 形     " " " **     之次殘邑 故滅給     " " "     " "     " "     "     " "     " </td <td>-</td> <td>H</td> <td></td> <td>22/15/21/19</td> <td>957</td> <td></td> <td></td> <td>217</td> <td></td> <td>,,</td> <td></td>	-	H		22/15/21/19	957			217		,,	
山 同福     "       郡 茂朱     221.10.       龍潭     181.10.       『 151. 7.     5.       171. 5.     "       146. 5.     10.	殘									_	
2     郡 茂朱     221.10.     之次殘邑 故滅給     "     151. 7.     5.     之次殘邑 故滅給       ***     171. 5.     "     146. 5.     10.     "     之次殘邑 故滅給	^	Ш			"			"		"	
5   龍潭   181.10.   "   151. 7.   5.   之次疑邑 故溪給   171. 5.   "   146. 5.   10.   "		郡	茂朱				之次殘邑 故減給	"			
	邑	"					"				
計 22,162. 5.  1,320.   15,148. 7.  3,012. 2. 6.   942.							"				"
			Ħ		22,162. 5.	1,320.		15,148. 7.	3,012. 2. 6.	942.	

<sup>\*</sup>大同事目의 官需는 官需・油清・紙地・雜物・使客支供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임.

- 仍定進上物價: 각 도에 따라 그 물종과 수량이 달랐기 때문에 그 액수는 크게 달랐으나, 그 備納 방법은 동일하였다. 즉 도내 군현 중에서 해당 물종이 생산되는 군현들에 수량과 단가를 恒定하여 당해 수령의 책임 아래 감영의 검사를 거쳐 상납하게 하였던 것이다. 예하면 공조에 상납하는 진상용 貼扇의 片竹・注紙의 경우(工曹進上扇子), 전라도에서는 竹扇의 명산지인 나주・순천・광주・담양・순창・능주・창평・화순 등 8개 군현에 총 317片半의 片竹과 15卷 7張半의 注紙를 적당히 분정(12片~80片半)하고, 片竹은 편당 쌀 4말로, 注紙는 권당 쌀 7말 9되 2홉으로 각각 책정하여, 유치미 중에서 이를 구입・상납하게 한 것이다.
- 刷馬價: 이미 많은 민폐를 빚고 있었고, 또 수령의 남용이 예상되는 용목이 었기 때문에 그 지용 규정이 매우 세밀하였다. 전라도의 경우, 刷馬는 수령이 公務로 상경할 때와 私務로 출입할 때 및 수령이 遞易될 때로 한정하고, 이 세 경우의 기본 駄數를 정하여 1駄에 1息程(3息程=1日程)당 흉년에는 쌀 2말씩을, 중년에는 2말 5되씩을, 풍년에는 3말씩을 지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단, 공무 때에는 일정에 따라 1~2駄를 더 주고, 체역으로 인한 迎送 때에는 途程에 따라 도내의 모든 군현을 상・중・하도로 나누어 3~7駄를 더 주도록 규정하였다.
- 船馬價:大同上納米·木・錢의 원할한 수납을 위하여 대체로 넉넉하게 책정·지급되었다. 상납 道程의 원근에 따라, 또 상납 물종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리 규정되었으니, 전라도의 경우를 보면 〈표 10〉과 같았다. 그러나 진상물의 輸運費에 대해서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치미는 이와 같이 지방 각 관아의 모든 경비와 경납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거의 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납 공·역의 몇 가지가 民擔으로 계속 존속되었듯이, 유치미로 마땅히 지용되어야 할 지방 경비의 일부도 官廚의「凉薄之患」을 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또는「不時之費」라는 명목으로 계속 民戶에 부담시키고 있었다. 전라도의 경우, 각 관아에서 쓰이는 꿩・닭・땔감・얼음 등이 전자의 명목으로 계속 현물 징수되었고, 式年戶籍・年分案所用 紙地와 守令不時遞易時 迎送刷馬價, 文·武試場屋假家排設之役, 焰焰煮取之役 등이 후자의 이름으로 때마다 징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한번 납부하고 나면 終年토록 安臥할 수 있도록 일체의 과외 징수를 금지하고자 한 대동법 의 근본 정신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수령의 만기 교체가 거의 없었던 당시의 실정에서 不時遞易時의 영송쇄마가를 民擔으로 존속시킨 것이 그러하였고, 또 官紀가 적지아니 문란하여 官需의 月分 사용방법까지 규제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각 관아 소용의 닭·꿩·땔감·얼음 등 물종을 필요에 따라 적당히 수취하도록 한 것이 그러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상납미의 증액으로 인하여 유치미의 부족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유치미로서 지용되던 대부분의 경비가 농민의 부담으로 다시 옮겨지게 된 것도 이 같은 民擔의 관례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겠다.

〈표 10−A〉

연읍 대동미 상납 선가

屈	分	邑名	10石當 價米
上	道	礪山, 益山, 全州, 龍安, 咸悅, 臨陂	1石 8斗
之次	上道	沃溝, 萬頃, 金堤, 扶安, 古阜, 興德, 高敞, 井邑, 長城	1石 10斗
中	道	茂長, 靈光, 咸平, 務安, 羅州, 靈巖	2石
下	道	海南, 珍島, 康津, 長興, 寶城, 興陽, 樂安, 順天, 光陽	2石 5斗

<sup>\*</sup>全州 江都納米 每石船價 2斗 1升 5合.

凡上納船價 江都納外 10斗以下 則不爲計給.

⟨± 10-B⟩

산군 대동목ㆍ전 상납 태가

區分	邑 名	1駄當 價米	區分	邑 名	1駄當 價米
14站	高山	2石 5斗	21站	南原	3石 7斗 5升
15 "	珍山	2石 7斗 5升	22 "	潭陽, 淳昌, 谷城,	3石 10斗
16 "	錦山, 茂朱	2石 10斗		長水, 雲峰	
17 "	金溝	2石 12斗 5升	23 "	昌平, 求禮, 玉果	3石 12斗 5升
18 "	泰仁, 龍潭	3石	24 "	光州, 南平	4石
19 "	任實, 鎭安	3石 2斗 5升	25 "	綾州, 同福, 和順	4石 2斗 5升

<sup>\*</sup>무명은 2同 20疋을 1駄로, 錢은 200兩을 1駄로 함. 每駄每站價는 米 2斗 5升씩임.

⟨± 10-C⟩

연읍 육로 태가

區分	邑 名	1駄當 價米	區分	邑 名	1駄當 價米
14站	礪山, 龍安	2石 5斗	22站	靈光	3石10斗
15 "	益山, 咸悅	2石 7斗5升	24 "	咸平, 羅州, 順天,	4石
16 "	全州, 臨陂	2石10斗		光陽	
7 "	沃溝, 萬頃, 金堤	2石12斗5升	26 "	靈巖, 樂安	4石 5斗
18 "	扶安, 古阜, 井邑	3石	27 "	寶城	4石 7斗5升
19 "	興德	3石 2斗5升	28 "	康津,長興	4石10斗
20 "	高敞, 長城, 務安,	3石 5斗	29 "	海南, 興陽	4石12斗5升
	茂長		32 "	珍島	5石 5斗

#### (3) 선혜청의 조직과 구성

대동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새로 설치된 선혜청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었다. 처음 대동법이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될 때(光海君 즉위년, 1608) 이 제도를 宣惠之法이라 이름한 데서 그 관장기구를 宣惠廳이라 명명하고, 여기에이미 설치했던 常平廳을 합속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인조 2년(1624) 강원·충청·전라도에도 경기의 宣惠之法이 확대시행되자, 이 제도의 관장기구로 또 하나의 기관이 설치되었다. 선혜지법을 大同法이라고 명명한 데서 나타난 三道大同廳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기관은 이듬해에 충청·전라도의 대동법이 혁파됨과 동시에 폐지되고, 그 대신 호조 산하에 大同廳이 설치되어 江原道大同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仁祖 때에는 常平事와 京畿大同事를 관장하는 宣惠廳과 江原大同事를 관장하는 호조 산하의 大同廳이 병립하여 두 도의 대동법을 각기 관장하는 실상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효종 3년(1652)에 이르러 충청도에 다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선혜청 산하에 새로이 湖西大同廳이 설치되자 이를 계기로 호조의 대동청도 선혜청으로 이속되어, 3도의 대동법이 모두 선혜청에 의하여 관장되게 되었다. 선혜청은 이에서 경기·강원·충청의 三道大同事와 常平事를 함께 관장하는 하나의 새로운 재정기관으로 그 위치가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뒤이어전라·경상·황해도에도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호남·영남·해서의 대동청을 더 거느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肅宗과 英祖 때에는 賑恤廳과 均役廳을 각각 아우르게 되어, 호조를 능가하는 조선왕조 최대의 재정기관으로 그 위상을 성장시켜 갔던 것이다. 이제 그 경위를 표로 일람하면 〈표 11〉과 같았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혁파되기까지 조선 후기의 최대의 재정기구로 자리하게 된 선혜청은 그 설치 당초부터 막중한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던 데서 영·좌·우의정 3명이 都提調를 겸하고 호조판서를 비롯한 종 2품이상의 관원 3명이 提調를 겸하였다. 그리고 專任 提調 1명(선혜청 堂上)과 산하 각 廳의 郞廳<sup>23</sup>)들에 의하여 그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각 郞廳 산하에는

計士(算員) 1명과 書東・庫直・使令・軍士 등이 수명씩 배치되어 업무를 보좌하였다. 단, 각 대동청의 剩餘를 모아서 선혜청의 役員 朔料와 경비보조업무를 맡았던 公剩色에는 전임 郎廳이나 計士를 두지 않고, 각 청의 역원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집무하게 하였다.

〈표 11〉 선혜청의 성장과정

7]	관	명	창설년대	창설 초기의 형태	선혜청에 병합된 연대
常	平	廳	國初	獨立機關	선조 41년
京台	畿 大	同 廳	선조 41년	與常平廳 合爲宣惠廳	〃 41년
江川	原 大	同 廳	인조 2년	戶曹 管理	효종 3년
湖西	西 大	同 廳	효종 3년	屬於宣惠廳	〃 3년
湖下	有 大	同廳	〃 8년	"	〃 8년
賑	恤	廳	현종 2년	備邊司管理	숙종 12년
嶺	有 大	同廳	숙종 3년	屬於宣惠廳	〃 3년
海	西 大	同 廳	〃 34년	"	〃 34년
均	役	廳	영조 25년	獨立機關	영조 29년
公	剩	色	〃 35년	屬於宣惠廳	〃 35년

이와 같이 구성·조직된 선혜청에는 산하의 각 청마다 독자적으로 內庫와 江倉을 비롯한 수개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각 청이 선혜청에 다 같이 예속되어 있기는 했지만, 상호간의 사무에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각 청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3) 대동법의 실시 결과와 의의

대동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납제의 모순과 폐해를 없애고, 농민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免稅田의 증대로 인한 歲收의 감축과 영세소작농의 증가

<sup>23)</sup> 郎廳은 愈正이나 郡守를 지낸 바 있는 관원에서 선발하여 각 大同廳과 常平・ 賑恤・均役廳에 각기 1명씩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시기에 따라 그 置廢 와 兼務가 변화 무상하였다. 그리고 海西廳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湖西廳 郎廳 이 경무하였고, 英祖 34년부터는 江原廳 郎廳이 경무하였다.

로 인한 戶役의 위축을 극복하고자 제정·시행된 재정제도였다. 그러면 그실시 결과는 어떠했던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던 18세기 초엽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시 결과는 극히 성공적이었다. 分捧·作木의 문제를 비롯한 漕運의 곤란, 조달물품의 불량, 각 관청간의 爭利 등의 문제가 적지아니 논란을 벌려 가기는 했지만, 농민이 힘써 대동법의 시행을 청원하고, 또 대동법의 실시를 반대하던 관료들마저 그 편익을 주장하고 나서는 실상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으로 접어들면서 날로 격화된 당쟁과 이에 뒤이어 전개된 老論 일파의 閱閱·勢道政治는 정치기강의 문란과 함께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하여 대동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 갔다. 중앙 재정의 충족을 위하여 대동미의 상납규식이 收租頒降制로 변개되고, 이에 따라 留置米로 지용되던 각종 용목들이 다시 戶役으로 전가되어 갔던 것이다. 전라도의 경우,이미 18세기 말엽에 대동미 징수량(약 ※ 147,000石)의 대부분이 상납미로 책정되어(※ 144,000여石) 서울로 수송되는 실태를 이루어,이에 따른 지방 재정의 파탄과 이를 빙자한 지방 관원의 탐학은 대동법 실시 이전의 양상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따라서 대동법의 실시 결과는, 그것이 비록 정치적 상황·추세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이의 실시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봉건적 지배체제를 지속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겠지만, 사회·경제면에서는 이와 반대로 봉건적 질서와 체제의 이완·해체를 촉진시킨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24) 대동법이 責人과 市廛을 매개로 하여 왕실과 정부의 소요 물

<sup>24)</sup> 崔完基는 앞의 논문의 결론에서 "대동법의 본질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대적이라기보다는 봉건적 특성이 보다 강요된 수취 체제라 하겠다. 봉건 국가가 동요하는 자체의 질서를 바로잡아 지속적으로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서 大同法과 같은 미봉책이 제시되었던 것이라 함이 보다 실상에 가까운 이해라고 보고 싶다. 어찌보면 봉건 체제의 모순을 은폐하고자 한 편법의 하나가 대동법이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그 이후 봉건 국가의 농민 지배 양태, 지배체제 유지의 방향에서 역실히 드러나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평

자를 조달케 함으로써 16세기 중엽부터 성장하여 오던 상업과 수공업의 활동을 크게 촉진시키는 한편, 화폐의 유통, 雇傭체계의 진전, 운송활동의 증대등을 유발하여 교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市場圈의 형성과 도시의 발달을 이룩하게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상의 변화와 함께 상·공인층의 사회적 성장과 농촌사회의 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와 사회체제가 이완되고 해체되는 데도일정한 역할을 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동법의 제정·시행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그 무엇보다도 이에 두어지고 있지만, 財政史 자체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주어지고 있다.

첫째는, 稅源을 富의 원천인 토지에서의 收益에 집중·단일화시켰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토지가 주된 생산수단이었고, 또 부의 기본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납제에서는 사실상 民戶에 기준하여 頁·役을 부과함으로써 수익과 세납의 직접적인 연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에서그 폐해의 일단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동법은 이러했던 頁·役을 田結稅化함으로써 稅納의 단일화와 아울러 수익과 세납을 직결시키는 課稅上의 진보를 이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는, 課稅의 '공평의 원칙'에 합당한 보편적 과세와 함께 定率稅主義를 마련하고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공납제에서는 頁・役의 부과 원칙이 군현의 殘盛, 즉 전결과 민호의 多寡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민 각자의 수입 과는 그 부과가 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土地多占者인 양반에게는 양반의 면역 특권을 들어 부과하지 않고, 과중한 地代를 부담하고 있는 無田

가한 수취 체제의 변화, 사회 경제적 영향은 파생적인 것으로서, 대동법 이전에이미 그러한 조건은 마련되고 있었으며, 대동법으로 인하여 다소 증폭되었던 것이기 때문"(246쪽)이라고 하면서 대동법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 또 그것이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에만 치중한 지금까지의 이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참고해야 할 견해이기는 하지만, 대동법 실시 이전, 즉 16세기 중·말엽의 사회·경제적 실상과 추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연구와 이해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革命이 아닌 限, 당시의 체제·질서를 완전히 벗어나는 제도·조처가 마련되고 시행되기는 어려우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小作農이나 영세자작농에게 그 모두가 부과되고 있었다. 대동법은 이 같은 공·역의 부과 방법을 폐기하고 토지소유량에 비례하여 定率 과세함으로써 수입의 다과에 따르는 공평한 조세체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恣意性이 짙은 配賦稅主義를 탈피하고 세율을 미리 결정하여 적용하는 정율세주의의 채택이라는 세제상의 진보를 이룩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셋째는, 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종래의 자의적이고도 가렴적인 재정운영에 일정한 수취 질서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공납제에서도 頁案(歲入豫定案)과 橫看(歲出豫定案)이 있어 예산제도의 명목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이案들은 매년 편성되는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量入制出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加徵되기도 하고 蠲減되기도 하여 국가적인 수취 질서를 지니지 못하여 왔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의 경우는 일정한 예산도 없이 수령의 자의적인 경리에 맡겨져 있었다. 대동법은 이러한 중앙 및 지방 재정의 운영 방법이결과적으로 빚어내고 있었던 加斂主義的 수취 질서를 파기하고, 量出定入의원칙에 입각하는 예산제도와 그 운영 방법을 중앙 및 지방에 각각 마련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재정 질서를 근대적 질서에로 한 차원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넷째는, 당시의 일반적 교환 수단이었던 쌀과 베[布]·무명[木] 등으로의 징수납에서 점차 錢으로 換捧 또는 代捧하게 함으로써 租稅 金納化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환봉·대봉이라는 것이 주로 輸運·保管·支出의 편익을 목적한 데서 마련된 것이고, 또 大同米·木·布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납화여서 조세의 근대화를 뜻하는 것이 되지 못하지만, 대동법의시행이 화폐 유통의 전제가 되는 상품 생산과 교환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던 점과 아울러 보면, 대동미의 錢으로의 환봉·대봉은 근대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韓榮國〉

# 2. 상업 · 수공업 · 광업의 변모

17세기 이후 조선의 상공업이 그 이전 시기와는 비교하기 어려우리 만큼 많은 발전을 보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양상은 조선 사회의 전개 과정을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이해하게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여 왔다.<sup>1)</sup> 따라서 이 시기 상공업의 변화상에 대한 파악은 상공업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과 결부되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 1) 상공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가져다 준 충격과 그에 비롯된 조선 사회 내부의 반성이 이 시기 상공업 발달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 종래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양란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 이미 생성되고 있던 새로운 사회경제적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근래에 들어 조선 사회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던 여러 새로운 경제적 기운과 사회적 분위기에 주목한 성과들이 매우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이해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양란 이전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상으로서 먼저 언급할만한 것은 15세기 말~16세기초부터 시장유통경제가 이미 발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sup>2)</sup> 즉 17세기 이후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달의 요인이 이미 16세기에 마련되어 있던 것이다. 16세기 중엽이래 광범하게 행하여졌던 공납제 시기의 공물 방납도 17세기 이후의 대동법 성립을 가능케 한 유통경제적 기반의 중요

<sup>1)</sup> 吳 星,〈資本主義 萌芽論의 研究史的 檢討〉(《韓國史市民講座》9, 一潮閣, 1991), 90쪽

<sup>2)</sup> 李泰鎭,〈16세기 韓國史의 理解 방향〉(《韓國社會史研究—農業技術발달과 社會 變動》, 지식산업사, 1986), 292~298쪽.

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일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해 공물방납은 일과성의 투기 행위가 아니라 이 시기 유통경제의 현실적인 변화에 조응하여 사회 내면에 정착, 지속되고 있던 부세운영의 진전된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3)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전기 이래의 공납은 그 형태상 방납에 의한 운영이 지배적이었던 바, 경시를 중심으로 공물의 구매 상납이 지속되면서 이를 전업적으로 담당하는 '防納私主人'이라 불리던 새로운 상인층이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방납가가 미·포에 의한 화폐적 지불 형태를 강화시켜 가면서 그 이윤이 극대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물의 방납권도 정착되어 갔다. 그 결과 부세 운영적 측면과는 별도로 유통경제를 통한 상업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공물방납체계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파악을 토대로 대동법 실시 이전과 이후의 제반 경제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이해해 보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여말선초의 시기에 있었던 농업기술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가 상공업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점이다.4) 連作常耕의 집약농업기술에 의해休閑農業의 한계가 극복되면서 소농민들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잉여생산물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상공업에 새로운 발전이 있게 되었다. 경작면적도 14세기말 100만 결이었던 것이 15세기 중엽에 가서는 150만 결로 확대되었다. 15세기말~16세기 중엽에는 간척지의 개간과 川防의 개발 및 보급이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농업생산력이 더욱 증대되었다. 조세로 거두어 서울에보관하는 정부 비축곡이 건국초에는 30만 석에 불과하였으나, 15세기를 거치면서 농업생산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16세기 중반에는 200만 석에 달하게되었다.

이러한 곡물생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자연히 국내의 곡물시장을 발달시키 게 되었다. 또한 15세기 중반 이후 면화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면포 역시 교 환의 척도로 화폐 기능을 다하면서 상업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sup>3)</sup> 이지원, 〈16・17세기 前半 貢物防納의 構造와 流通經濟的 性格〉(《李載樂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한울, 1990).

<sup>4)</sup> 이에 대해서는 李泰鎭, 앞의 책 참조.

#### 해나갔다.5)

세번째로는 대외무역의 성행을 들 수 있다. 6) 16세기에 들어 동아시아 3국은 모두 경제력이 신장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간 교역이 전례 없는 활기를 띠어가고 있었다. 중국의 비단・면포・도자기, 조선의 곡물・면포・은, 일본의 구리・은 등이 주요 상품을 이루면서 상호 교역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무역을 보면 開市貿易, 즉 공인된 정규교역이 양국간의 새로운 무역체계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中江開市를 시발로 會寧・慶源 지역에 개시가 열려 농기구와 소금・해산물・면포・지물류 등이 거래되었다. 하지만 교역량의 증대가 요청되면서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상들이 활동하는 柵門 後市와 같은 후시가 나타나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경우를 보면, 광해군 원년(1609) 국교가 재개됨에 따라 왜관에서의 교역도 재개되었다. 왜관에서의 官貿易은 매월 6회로 한정되어 있었고 교역량도 제한되어 있었으나, 私貿易과 密貿易이 성행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상인들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仲介貿易으로 상당한 상업적 이윤을 누릴수 있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과 원사 및 조선산 인삼을 일본의 결제수단인 은과 구리, 특히 은과 교역하여 막대한 상업적 이윤을 획득하였다.7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상업자본은 17세기 후반의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17세기 중엽에 이미 실현되고 있던 工匠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에의 참여와 그에 따른 상품의 생산과 공급, 임노동층의 증가, 地代의 금납화등이 이 시기 상공업 발달의 배경으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명확하게 검증된 단계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16세기 이후의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 또한 상공업의 발달을 촉발시킨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8)

<sup>5)</sup> 宋在璇、〈16世紀 綿布의 貨幣機能〉(《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sup>6)</sup> 이 시기의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李泰鎮, 〈國際貿易의 성행〉(《韓國史市民講座》9, 一潮閣, 1991)이 참조된다.

<sup>7)</sup> 金鍾圓、〈朝鮮後期 對淸貿易에 대한 一考察 -潛商의 貿易活動을 中心으로-〉 (《震檀學報》43, 1977).

吳 星,《朝鮮後期 商人研究》(一潮閣, 1989), 32~49쪽.

<sup>----, 〈</sup>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와 蔘商의 活動〉(《世宗史學》1, 1992).

<sup>8)</sup> 韓榮國, 〈商工業 발달의 시대적 배경〉(《韓國史市民講座》9, 一潮閣, 1991), 7~12쪽.

## 2) 시전의 변화

## (1) 시전의 분화와 분쟁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몇몇 대도시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市廛은 조선왕조 건국과 함께 창설된 이후 눈에 띨 만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시전은 일정한 商稅를 납부하면서 官需品의 조달과 도시민의 생필품 공급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정부로부터의 일정한 특혜를 받으면서, 또한 특별한 도전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식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7세기 이전까지의 상업계는 시전상인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서울의 시전은 雲從街》 즉 鍾樓 양쪽의 長廊에 위치하면서10) 상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시전상인이라 할 수 있는 六矣廛역시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이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양란 이후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 특히 서울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의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였으며 생계유지를 위해상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서울의 인구 증가는 상품의 소비와 수요를 크게촉진시키게 되었고, 아울러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을 자극하였다. '生民之業京師以錢 八道以穀'11)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서울의 상품화폐의 유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기존의 시전상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울의 지역적 공간이 확대되고 상품유통량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시전으로 서울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시전이 창설되게 되었던 것이다. 12) 米廛이 上米廛・下米廛・門外米廛・麻浦米廛・西

<sup>9)</sup> 운종가는 오랫동안 生鮮廛으로 불리어오다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조선초의 옛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東國輿志備考》권 2, 市街).

<sup>10)</sup> 樹軒居士,《漢京識略》2,市廛.

<sup>11)</sup> 南公轍,《金陵集》 권 10, 擬上宰相書.

<sup>12)</sup> 高東煥, 〈18세기 서울에서의 魚物流通構造〉(《韓國史論》28, 서울大, 1992), 155쪽.

江米廛 등으로 구성되게 되었으며, 염전의 경우도 京鹽廛·마포염전·용산염전의 3개 廛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어물전도 外魚物廛이 새로 창설되어 內魚物廛과 함께 둘로 분화되었다. 床廛은 서울 내에 12곳이 있을 정도였다. 기존의 시전 체계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一物一市'의 원칙은 이미 지켜지기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물종을 취급하는 시전이 여러 곳에 신설되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은 대체로 17세기 후반으로 보여진다.13)

동일 물종을 취급하는 시전이 여러 곳에 신설되자 유통지배권을 둘러 싼 시전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물론 '一物兩市'라 하여도 대부분 각각의 시전이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신설된 시전이 기존의 시전에 종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존 시전의 주도하에 운영되면서 중앙 都會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이다.14)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현종 12년(1671) 새로이 창설된 외어물전이 세력가의 후원을 배경으로 유통지배권을 확대해 나가자 내어물전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외어물전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면서 공격하였고, 외어물전은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내·외어물전간의 분쟁은 이후에도 魚物進排의 권리 등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세력의 후원을 업고 七牌·梨峴의 中都兒들과 결탁하면서 내어물전의 유통주도권에 도전한 외어물전은 순조 원년(1801) 육의전에 편입될 만큼 괄목할 만한 상업적 성장을 이루었다.15)

그러나 내·외어물전 모두 새로운 상인세력으로 떠오른 私商都賈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였다. 결국 이들은 육의전으로서 금난전권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사상도고에 의해 성립된 유통체계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16) 이러한 현상을 낳게 된 요인으로는 상품으로써의 어물의 특성과 이에 따른 중도아와의 부득이한 결탁과 같은 판매상의 제약, 사상도고의 성장과 이들에 의한 유통과정에서의 시전상인 배제 등이 우선적으로 지

<sup>13)</sup> 高東煥, 위의 글, 155~156쪽.

<sup>14)</sup> 高東煥, 위의 글, 161쪽.

<sup>15)</sup> 高東煥, 위의 글, 161~184쪽.

<sup>16)</sup> 高東煥, 위의 글, 208쪽.

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전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시전상인이 상호간의 상업적 능력과 힘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지 못한 채, 새롭게 편성되고 있던 유통체계와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여겨진다.

시전인의 상호 분쟁은 미곡전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17세기 후반 서강미전과 마포미전·문외미전 등이 신설되면서 상미전을 비롯한 미곡전 간의 분쟁은 장기간에 걸쳐 지리하게 계속되었다. 분쟁의 원인은 塵基와 字內收稅, 판매 품목 문제 등이었다. 이들의 분쟁은 결국 미곡시전의 상업적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미곡전인들은 시전간의 연합이나 상업적 연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미곡유통의 주도권을 미곡사상에게 넘겨주게 되었다.17)

#### (2) 난전의 대두와 금난전권의 성립

서울을 대표로 하는 도시 지역에서의 상공업 발달은 기존의 시전상인이나 공인과 같은 특권상인 이외의 새로운 상인층의 대두로 이어졌다. 이른바 亂 廛을 벌이고 있던 상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진다.18) 먼저 서울과 서울 근교에 있던 독립 자영수공업자와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농민들을 들 수 있다. 경공장과 외공장의 폐지와 工匠成籍制가 붕괴되면서 서울 안팎에는 상당수의 독립 자영수공업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청이나 권문세가의 삯일보다는 상품생산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의 상품 제조장을 갖고은밀하게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7세기 후기이래 서울을 비롯한 도시 근교지역에서는 소채류를 비롯한 상업적 작물을 경작하여 이를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 근교의 농민들은 미곡을 상품화하거나, 땔감을 팔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다. 독립 수공업자나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 모두 자급자족을 위해서 보다는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한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었음은

<sup>17)</sup> 이에 대해서는 吳 星, 앞의 책, 110~132쪽 참조.

<sup>18)</sup> 이하 난전의 유형에 대해서는 金泳鎬,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都市商業의 새로 운 展開〉(《韓國史研究》2, 1968), 32~40쪽 참조.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비록 영세한 상인들이었지만, 도시 상업계의 저변을 형성하면서 소비자층과 밀착, 시전상인의 전매특권을 잠식해 들어갔다.19)

난전 가운데에는 사상도고에 의한 난전이 가장 지배적이었다. 이들이 언제부터 대두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7세기 전반기에 이르면이들의 세력은 이미 시전 상업계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나 짐작된다. 인조 17년(1639) 綿紬廛과 난전의 대립이 있었으나 난전의 저항이 거세어 시전인이나 관청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일도 있을 정도였다.<sup>20)</sup>

사상도고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매점적인 상업 활동을 벌임으로써 시전상인에 대항해 나갔다. 이들은 서울로 들어오는 상품을 도집한다든가, 지방의 상품 생산지나 장시에 직접 나가서 물품을 선대제적으로 독점하는 방식 등에 의해 상품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광범한 매점망을 구축한 사상인들의 도고 행위는 결국 시전상인의 특권적 상업 행위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상품을 매점, 판매하고 있던 시전상인들로서는 물품 조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는 금난전권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금난전권은 시전상인들이 가졌던 일종의 전매특권으로서, 평시서와 한성부에 廛案物種으로 등록하여 일반 상인이나 다른 시전상인들이 그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팔 경우 이를 난전으로 규정, 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였다. 금난전권이 성립되게 된 배경에는 정부측의 형편도 작용하였다. 양란 이후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책의 하나로 상공업 분야에서의 세원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비교적 규모가 큰시전에 금난전권을 인정하고 대신 국역이라는 명목으로 종래의 시전세보다높은 부담을 지우게 되었던 것이다.

금난전권이 언제부터 어떠한 시전상인에게 주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초기에는 시전 가운데에서도 국역의 부담이 큰 시전, 다시 말해 육의전 에게만 금난전권이 주어졌다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지 않았나 짐작 된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다른 시전들도 상업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권한을

<sup>19)</sup> 姜萬吉, 〈商品經濟의 發達〉(《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6), 341쪽.

<sup>20) 《</sup>承政院日記》 70책, 인조 17년 8월 23일.

가지기를 원했고, 정부도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많아질수록 국역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이를 계속 허가해 주고 있었다.<sup>21)</sup>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점차증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18세기 후반 서울의 경우 시민들의 생활용품이 모두 금난전권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sup>22)</sup>

한편 난전은 반드시 비시전상인들만이 아니었다. 시전상인 내에서도 다른시전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는 난전으로 취급되었다. 床廛과 帽子廛간의 난전분쟁이나 立廛과 綿紬廛간의 난전, 앞서 언급한 바의 여러 미곡전이나 내·외어물전간의 상업적 분쟁과 갈등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조선의 상업계는 난전의 광범한 등장과 이에 맞선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의 행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 (3) 금난전권의 강화와 상권경쟁

정부와 시전상인간의 상호 이해에 따라 성립된 금난전권은 점차 강화·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시전상인들이 그들의 상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17세기 이후 수공업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물품이 상품화되거나, 혹은 기존의 상품이 새롭게 가공되어 신상품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곧 상품의 다양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물품들을 취급하는 새로이 허가 받은 시전도증가하게 되었다. 자연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늘어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시전의 금난전권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시전상인들은 물품의 독점적인 판매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시전상인들은 수공업자의 가공상품의 원료를 독점하여 수공업자를 자신들에게 예속시키려 하였다. 수공업 원료에 따라서는 본래부터 시전상인의 물종으로 市案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도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물종은 반드시 시전에서 구입해야만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난전으로 취급되었다.<sup>23)</sup>

뿐만 아니라 시전상인들은 수공업자의 생산품에 대한 전매권을 확보함으

<sup>21)</sup> 崔完基,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서울市立大 서울학연구소, 1994), 53~54쪽.

<sup>22)</sup> 崔完基, 위의 책, 54쪽.

<sup>23)</sup>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서울大 韓國文化硏究所, 1973), 22쪽.

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격리,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였다. 시전상인들은 수 공업자들이 제품을 소비자나 다른 상인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즉 제품을 本廛에게만 판매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다. 시전상인의 물종으로 시안에 등록되어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자유스럽게 판매할 수가 없었고 본전상인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sup>24)</sup> 요컨대 시전상인들은 원료와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수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상업적 통제를 꾀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시전상인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대응을 한 사람들은 도시, 특히 서울의 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본래 工曹·司饗院·造紙署·繕工監·尚衣院 등 관청 소속의 장인이거나 혹은 군인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생산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소상품 생산자들이었으나, 시장의 확대와 사회적 분업의 촉진에 따른 새로운 상품 수요의 증대로 말미암아 상품 생산에 진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25) 이들은 주변 여건의 성숙에 따라 자유로운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도성 내외에서 각종의 상품 생산에 힘쓰게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곧 시전상인들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었다. 상인들은 시장통제를 통하여 이들의 활동을 억누르려 하였다. 시전상인들은 수공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제품 원료를 시전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수공업자가 시전에서 구입하는 상품은 최고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시전에 판매하는 상품은 최저 가격을 받아야 했다.<sup>26)</sup> 금난전권이 이들의 상업적 횡포의근거였음은 물론이다.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증가하면서, 수공업자의 원료와 제품이 市案에 등록되는 예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곧 시전상인에게는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물종이 증가하는 것인 만큼 유리한 것이었지만, 수공업자에게는 그 반대였다. 예를 들면, 17세기 후반 凉臺의 제조와 판매는 성외의 의탁할 곳이 없던 寡女와 砲手妻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시안에 등록하여 市役에

<sup>24)</sup> 宋贊植, 위의 책, 29쪽.

<sup>25)</sup> 宋贊植, 위의 책.

<sup>26)</sup> 宋贊植, 위의 책, 11쪽.

응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결국 이들의 양대 제조·판매는 원료의 독점권을 가진 凉臺廛 市民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어 난전으로 고발되기에 이르렀다.<sup>27)</sup>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자 수공업자들은 시전상인들의 움직임에 맞서 독자적으로 시전을 개설하려 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자간의 상권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에 의한 독점적 물품 매매는 물가의 상승을 초 래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민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즉 금난전권 의 확대와 강화에 따라 도시민의 생활물품의 대부분이 시전의 전매품이 되 었으며, 그 결과 물가가 앙등하여 도시민의 생활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 던 것이다.<sup>28)</sup> 또한 자본력이 미약한 도시의 영세상인이라든가 근교 농촌지역 의 소생산자나 소농민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에도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은 시전상인들의 상업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지 만, 도시민 특히 빈민층과 주변의 농촌민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금난전권의 발동에 대한 이들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 되는 상황이었다.

## 3) 공인과 공계

# (1) 공납제의 개혁과 공인의 등장

조선 초기에 정비된 貢納制는 '任土作貢'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 직납하는 것으로서 현물재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었다. 그러나 공납제는 제도와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sup>29)</sup> 먼

<sup>27) 《</sup>承政院日記》 304책, 숙종 10년 6월 23일.

<sup>28)</sup> 姜萬吉, 앞의 글, 327쪽.

<sup>29)</sup> 공납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研究》(東洋文庫, 1964).

宋正炫,〈李朝의 貢物防納制〉(《歷史學研究》1,1962).

金玉根,《朝鮮後期經濟史研究》(瑞文堂, 1977).

金鎭鳳、〈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史學研究》22, 1973).

<sup>-----, 〈</sup>朝鮮前期의 頁物防納에 대하여〉(《史學研究》26, 1975).

高錫珪、(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韓國史論》12、서울大、1985) 참조.

저 제도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頁額이 한번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引納이나 別用 등 별도의 收支 마련책이 강구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연산군 시대를 거치면서 可定・引納・別例・市貿 등이 경비 조달책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橫看 이외에 別用・雜用이 상시적 행위가 되어버려 기존의 공안・횡간에 의한 예산제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30)

더욱이 不産貢物의 分定, 즉 해당 지방에서 산출되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물로 정해진 후에는 民戶가 공물 납부를 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공물 분정의 원칙인 '임토작공'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防納의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피해가 대단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공안의 개정을 통한 不産貢物의 조정은 항시 공납제개혁의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공물 분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부담자인 민호에 대한 부과규정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까닭에 수령이나 향리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향이 많았다.

공납제의 실제적 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공물 상납과정에서 點退와 방납으로 표현되는 비리행위가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상납물자에 대한 看品 과정에서 점퇴라는 수단을 통하여 비리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31) 당대의 권력자들도 공물 수취체계를 모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지방 수령들에게 방납을 강요하고 있었다.32) 방납업자들 또한 各司와 결탁하여 불법적인 방납 행위를 행하고 있었다. 방납이 성행하면서 이에 관계되는 계층과 대상 공물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사대부는 물론 왕실이 관여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졌다.33) 조선초의 공납제가 안고 있던 모순과 폐단이 심화되면서 공납제는 권력자와 상인・양반지주층이 결탁하여 代納에서 형성되는 이득을 독점・분배하게 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34) 방납의 폐단으로 빚어지는 막대한 防納價의 부담은 모두 궁극적 공물납부자인 민호의 몫이었다.

<sup>30)</sup> 高錫珪, 위의 글, 180쪽.

<sup>31)</sup> 高錫珪, 위의 글, 177~178쪽.

<sup>32) 《</sup>明宗實錄》 권 13, 명종 7년 10월 갑진.

<sup>33) 《</sup>宣祖實錄》 권 171, 선조 37년 2월 정유.

<sup>34)</sup> 李景植、〈16세기 地主層의 動向〉(《歷史教育》19, 1976), 153~162쪽. 高錫珪, 앞의 글, 182~183쪽 참조.

이와 같이 공액의 고정화와 可定, 不産공물의 분정과 방납의 폐해 등으로 부각된 공납제의 모순과 폐단에 대한 개혁 작업은 16세기이래 시대적 과제 로 대두하게 되었다. 공안의 개정과 방납의 근절이라는 방향에서 추구되어 온 공납제 개혁론은 1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토지소유구조의 개편, 상품화 폐경제와 수공업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변동을 흡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대동법의 시행은 바로 이와 같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공납제 개혁 의 제도적 구현이었다.<sup>35)</sup>

한편 조선 초기에 성립된 공납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京市와 지방 장시를 중심으로 한 공물의 구매 상납이 지속되면서 이를 전업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상인층의 형성을 낳았다. 防納私主人으로 불리는 이들은 방납권을 지니고 유통망과의 접촉, 유통사정의 인지및 일정한 자본의 축적을 통해 代納請負商人으로 성장하였다. 공물의 매매는 공납제의 실현이라는 부세운영적 측면과는 별도로 유통경제를 통한 상업구조를 형성시켰던 것이다.36) 이는 곧 16세기를 거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공물 방납이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부세 운영간의 연계적인 구조하에 형성된 산물임을 뜻하는 동시에 상업・유통경제의 발전과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37)

그렇기는 하지만, 방납은 任土作貢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였으며, 방납권 역시 합법화된 권리는 아니었다. 방납이 성행할수록 방납을 둘러싼 분쟁은 빈번해졌고, 高價의 방납가 지불은 민호의 곤궁함을 더욱 가중시키게되었다. 미·포의 화폐적 富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되었다. 38) 결국 조선 정부는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부세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16·17세기에 전개되었던 공물 방납체계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고,이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지는 공물 청부업자, 즉 貢人이라는 상인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大同法 실시의 주요 원인이 공납제의 폐단을 막음으

<sup>35)</sup> 劉元東、《韓國近代經濟史研究》(一志社, 1977), 67~75等. 高錫珪, 위의 글, 228~229等.

<sup>36)</sup> 이지원, 앞의 글, 513쪽.

<sup>37)</sup> 이지원, 위의 글, 472~473쪽.

<sup>38)</sup> 이지원, 위의 글, 513쪽.

로써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稅收를 증대시키려는 데에 있던 만큼, 대 동법의 시행과 함께 기왕의 공물 상납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방납은 새 로운 공물 청부제로 대체되어야만 하였다. 祭享·御貢 및 제반 經用의 조달 은 京賈主人에게 給價하여, 공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조달케 하는 방식 으로 변환되었다.39) 자연히 官府의 수요품 조달은 공납제 시기의 방납 대신 공인의 공물 구매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인은 관으로부터 정식의 허가를 받고, 정부가 공물로 받은 대동미와 대동포·전 등을 지급 받아 관부의 수요품을 구입·조달하는 특권상인이었다. 따라서 공물 납부자인 농민과 수취자인 관부의 중간에서 특정 지역의 공물을 구입, 납부한 후 해당 지역민으로부터 높은 대가를 징수하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던 공납제 시기의 방납인과는 법적인 면에서나 상인의 성격면에서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 (2) 공계의 구성과 조직

공인은 대동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상인이었지만, 시전상인과 함께이 시기 도시 상인, 특히 서울 상인의 주축을 이룰 정도로 빠른 상업적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여기에는 공인에 의한 공물 청부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市價보다 훨씬 후한 貢價를 책정, 先給하는 등 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펴나갔던 데에 큰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공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상업적이윤을 보장받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자연히 공인이 되려는 사람들도 여러계층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공인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져 있지 못하다. 기록에 따르면, "…坊民을 택하여 주인으로 정하고 (貢)價를 優定하여…"40)라 되어 있으나 이때의 방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다만 이후 공인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인 가운데에는 위의 '방민'이외에도 시전상인이나 匠人・其人・京主人・營主人등이 공인으로서 공물 청부에 나서고 있었으며, 기왕의 방납인 중에도 공인

<sup>39)《</sup>萬機要覽》財用篇 大同作頁.

<sup>40)《</sup>續大典》戶典 稅貢.

으로 전환되어 간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물을 납부할 수 있는 권리인 공인권이 점차 특권화되면서 고가로 매매되기에 이르면 私商이나 양반 사대부들도 공인권을 매입하여 공물 청부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현상도 벌어지게 되었다.41)

공인은 貢價라 불리는 공물 구매가를 지급 받았는데, 공가는 대동미 혹은 대동미를 作錢한 화폐로 지급되었다. 공가는 공인의 조직인 貢契에 주어졌다. 공계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존폐를 거듭한 까닭에 일정한 수가 유지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들이 공물청부업에서 차지했던 비중도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조 2년(1778) 各廛과 各契에 지급된 別貿공가의 액수를 보면, 공인이 조달한 액수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공물납부에서 공계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공인들로 이루어지는 공계가 어떠한 형태와 조직, 규모로 구성되었는지도 확언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적게는 수명으로부터 많게는 수십 명, 혹은 그이상의 공인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상인조합을 결성하고 있던 시전상인의 예라든가 목재 조달 공인이었던 外都庫貢契의 경우를 통하여 공계의 내부적 구성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의 조합조직인 '都中'을 구성하는 제일 요소는 조합원인 都員의 가입 자격이었다.<sup>42)</sup> 시전의 경우 각전마다 연고가 가장 밀접한 자를 우선 가입시켰으며,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원의 총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전형을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하였다.<sup>43)</sup> 육의전의 하나인 立廛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강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4)</sup> 하지만 시전 중에서도 성립 당시의 사정이나 구조적 특질에 의해 반드시 비혈연자의 가

<sup>41)</sup>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吳美一, 〈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韓國史論》14, 서울大, 1986).

<sup>-----, 〈18·19</sup>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奎章閣》10, 1987).

金東哲,《朝鮮後期 貢人硏究》(韓國硏究院, 1993) 참조.

<sup>42)</sup> 劉元東. 앞의 책. 153쪽.

<sup>43)</sup> 위와 같음.

<sup>44)</sup> 劉元東, 위의 책, 155쪽.

입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경우가 있듯이,45) 禮錢으로 불리는 신입 도원의 입회 금에 등급을 설정하면서 비혈연자의 가입을 당연시하는 시전도 있었다.46)

공인 조직인 貢契도 각 계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공인조합은 입전 시민과 같은 혈연적 유대도 없고, 단결도 시전 정도로 강하지 않았다는 견해<sup>47)</sup>처럼 시전보다는 혈연적 유대관계나 조직의 공고함 면에서 미약했던 공계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貢人權의 매매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에 즈음해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그렇지만 외도고공계의 경우를 보면, 신입 계원의 선정 기준은 혈연적인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시되었다. 이러한 기본 정신은 연고자와 무연고 신규자간의 가입 자격에 여러 순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가입금에 대해서도 상당한차이를 둠으로써 구체화되었다. 48) 요컨대 공계의 경우도 시전의 경우처럼 공계 성립 당시의 사정이나 해당 공계의 변천 과정에 따라 일률적이라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49)

공계의 조직은 이원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던 것으로 짐작된다. 외도고의 경우 원로층인 首席・任席・領位와 실무층인 大房所任・別任・房使喚・京庫次知・江次知・助哀次知・文書次知・戶曹次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0) 각 次知들은 각기 공계의 업무를 상호 분담하면서 또한 견제하고 있었다.51)

공계를 유지하는 조합원의 자본금 출자는 불균등 출자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공계에 따라서는 불균등 출자의

<sup>45)</sup> 吉田光男、〈李朝後期ソウルの米商人組合「米廛」について-1791年の辛亥通共前後を中心に->(《史潮》新 17號, 1985), 177等.

<sup>46)</sup> 金東哲, 앞의 책, 89쪽.

<sup>47)</sup> 田川孝三,〈貢人關係文書について〉(《夏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山川出版社,1975), 278~279等.

<sup>48)</sup> 金東哲, 앞의 책, 87~88쪽.

<sup>49)</sup> 초기에 혈연적인 유대관계가 강했던 외도고의 경우에도 공계의 자금부족에서 오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연고가 없는 신규가입자의 가입금을 점차 하향 조정한 사실도 공계의 인적 구성상의 성격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金東哲, 위의 책, 86~89쪽).

<sup>50)</sup> 金東哲, 위의 책, 90쪽.

<sup>51)</sup> 육의전 중 하나였던 입전의 경우를 보면, 上公員에 大行首·都領位·首領位· 副領位·次知領位·別任領位가 있었으며, 下公員으로 實任·矣任·書記·書寫 등이 있었다. 이들의 직임과 기능에 대해서는 劉元東, 앞의 책, 157~159쪽 참조.

초기 형태를 유지하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불균등 출자로부터 균등 출자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외도고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불균등 출자로부터 균등 출자로의 전환은 초기의 출자 형태가 어떠하였든, 점차 불균등 출자로 발전해 나가는 상인 조직의 일반적 출자 형태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당해 공계의 商勢가 위축, 쇠퇴해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52)

## (3) 공인의 공물상납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현물로 징수되던 공물은 대동미·포·전으로 바뀌어져 납부되었다. 공인은 정부로부터 이들 대동미·포·전을 공가로 지급받아 관부의 수요품을 구입, 상납하였다. 공인의 공물 상납에는 정기적으로 조달하는 元貢과, 원공만으로 부족한 경우 혹은 공안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물품을 조달하는 別貿의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었다.53) 元貢價는 원칙적으로 선혜청에서, 別貿價는 호조에서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各貢이라 청해졌던 원공은 선혜청과 지방 6도에 57공이 있었으며, 진휼·상평·균역 3청에 17공이 있었다. 이 가운데 貢契人이 담당하고 있던 공납은 선혜청과 지방 6도의 57공 중 16공, 3청의 17공 중 7공 등 모두 23공이었다.54) 공계인이 상납하던 총액은 3청 소관의 공인계의 경우 米 2,741石 2斗 6 合, 木 14同 32疋, 布 2同 48疋 17尺 5寸, 錢 332兩 2錢으로서, 이는 3청 각공의 총액 가운데 米 85%, 木 100%, 布 2%, 錢 100%에 해당되는 대단한 액수였다.

별무는 원공에 없는 물품을 조달키 위한 無元貢別貿와 원공만으로 부족할때에 부족량을 보충하는 有元貢別貿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별무는 본래관부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공물을 조달하는 것이었으나, 각공계의 별무에 따라 1년에 1회 내지 4회에 걸쳐 납품의 기한과 물품의 종류, 수량 등

<sup>52)</sup> 金東哲, 앞의 책, 103쪽.

<sup>53)</sup> 후대에 가면 공가의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공물정책은 원공에서 별무로, 별무에서 私貿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에 대해서는 吳美一, 앞의 글(1986), 121~131쪽 참조.

<sup>54)《</sup>萬機要覽》財用篇 各貢 및 賑恤・常平・均役 3廳.

을 고정하기도 하였다.55) 일반적으로는 수시로 賢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56) 아울러 별무는 '遺在'와 '加用'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상납 물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분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遺在分에 따라 구입량을 감소시키거나, 상납 물품이 많음에도 물품량이 부족할때에는 加用을 통하여 부족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재와 가용의 기본 원칙이 실제적인 공물 상납 과정에서 얼마만큼 적용되고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별무는 당해 년도의 사정에 따라 상·중·하의 등급에 의해 조달되었다. 예를 들면 정조 2년(1778)의 경우에는 상등 최다년분의 별무를 조달하였고, 정조 9년에는 중년의 별무를 조달하였으며, 정조 22년에는 하등 최소년의 별무를 조달하였다.57) 이 가운데 공계인이 납부한 액수는 해당 년도의各廛 各契의 별무 총액 중 대략 78~87%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58) 공물 상납에서 공인이 점하고 있던 경제적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말해주는 예가 아닐까 한다. 이외에도 공인들은 중국에 보내는 歲幣와 方物 가운데 지물류와 피물류・白紬・紅紬・綠紬 등 紬布類와 화문석등의 일부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인들은 원공과 별무를 중심으로 공물 상납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활발한 공납 청부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상품을 매입·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특권이 주어지고 있었고, 독점적인官需品 조달권도 보호받고 있었다.59) 또한 정부가 지급하는 공가도 대동미·포·전이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어서 시가보다 후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셈이었다. 실제로 공인들은 특권적인 공물 조달과 독점적 상품 매집을 통하여 상업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수공업 제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匠人을 고용하여 제조한다거나, 공물의 독점적 조달권을 배경으로 시중의 상품을 매점하는 都賈

<sup>55)《</sup>萬機要覽》財用篇 各廛.

<sup>56)《</sup>萬機要覽》財用篇 戶曹貢物.

<sup>57)</sup> 위와 같음.

<sup>58)</sup> 劉元東, 앞의 책, 97~100쪽.

<sup>59)</sup> 姜萬吉, 앞의 글, 336쪽.

의 형태로 상업적 이윤을 취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적인 상업적 성장을 이루기에는 장애 요인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동법이라는 정부의 공납제 개혁책에 따라 형성된 상인들이었다. 다시 말해 공인은 정부의 공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경제적 처지와 형편이 좌우될 수 있는 소지를 당초부터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과 정부의 보호·지원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인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공인은 초기에는 공인자본을 형성하면서 상인으로서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공가는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책정되게 되었고, 無價上納등과 같은 각종의 貢弊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공인은 과거시험의 비용을 충당하는 應辦을 비롯한 국역의 부담도지고 있었다. 별무공인의 경우에는 '先進排 後受價'라 하여 먼저 공물을 납부한 후 공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원공공인 또한 먼저 공가를 지급받는 것이 상례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60) 이러한 사정 속에서 공인이형성 초기와 같이 지속적인 이윤을 획득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61) 결국 공인 가운데에는 공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공계 자체를 해체하는 일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다름 아닌 정부의 공물정책의 변화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공인의 태생적 한계에 의한 것이었다.62)

공인의 경제적 위축과 쇠퇴는 광범하게 성장하고 있던 사상들의 활동에 기인된 바가 컸다. 사상들은 생산지에 나아가 대금을 선불하고 상품을 매점

<sup>60)</sup> 關東蔘契貢人의 예가 그러하였다(《備邊司謄錄》권 160, 정조 3년 3월 9일).

<sup>61)</sup> 韓祐劤,〈李朝後期 貢人의 身分 -大同法 實施以後 貢納請負業者의 基本 性格-〉 (《學術院論文集》, 인문사회과학편 5집, 1965).

<sup>———,〈</sup>李朝後期의 其人 —柴炭頁物主人의 實態—〉(《亞細亞學報》1, 高麗大, 1965) 참조.

<sup>62)</sup> 그럼에도 대다수의 공계는 계속해서 존속되었다. 이는 공가에만 의존하던 공인들은 18세기 이후 도태되어 갔으나, 상품 유통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서 공가 자체보다 공인권이 보장해주는 특권을 상업 활동에 활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吳美一, 앞의 글(1986・87) 및 鄭亨芝, 〈朝鮮後期의 貢人權〉, 《梨大史苑》 20, 1983, 참조).

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공인의 공물 청부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여 나갔다. 원공→별무→사무의 방향으로 전환된 정부의 공물정책 역시 실질적으로는 사상층에 의해 주도된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성숙에 뒷받침된 것이었다.<sup>(63)</sup>

# 4) 장시의 발달

## (1) 장시의 형성과 확산

場市는 상인과 각 지방의 농민·수공업자 등 생산자층에 의한 상품생산과이들 상호간의 직접적 교역이 이루어지던 농촌의 정기시장이다.<sup>(4)</sup> 조선 시대의 장시는 15세기 후반 전라도 지방에서 성립된 후 상업에 대한 억제책과시전 상인의 보호 차원에서 억압되었으나, 16세기에 들어서는 각도와 읍으로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중종 13년(1518) 무렵에는 방방곡곡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였다.<sup>(5)</sup> 장시는 양란을 거친 17세기중엽 이후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교통의 요지나 물화의 집산지 이외에 외진 산간에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장시 개설의 확산에는 16세기에 마련되고 있던 사회경제적 발달의 여러 요인들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 시기의 조선 사회는 連作常耕 등 새로운 농법 개발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와 지주들에 의한 광범한 토지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면포의 생산 증가, 공물 방납의 성행 등 유통경제가 본격적인 발달의 지평을 열고 있었다.66)

<sup>63)</sup> 姜萬吉,《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高麗大 出版部, 1973). 吳美一, 앞의 글(1986・87) 및 吳 星, 앞의 책 참조.

<sup>64)</sup> 金大吉, 《朝鮮後期 場市研究》(國學資料院, 1997), 21쪽. 이하 장시에 관한 서술은 金大吉, 위의 책에 주로 의거하였다. 한편 정기시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재하 · 홍순완, 《한국의 場市》(民音社, 1992), 21~24쪽이 참고된다.

<sup>65) 《</sup>中宗實錄》 권 31, 중종 13년 정월 임자.

<sup>66)</sup> 이와 같은 16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姜萬吉, 〈조선왕조사에 있어서 16세기의 변화〉(《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李泰鎭, 앞의 책; 李景植, 앞의 글; 이지원, 앞의 글; 李景植, 〈16世紀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韓國史研究》57, 1987); 朴平植, 〈朝鮮前期의 行商과 地方交易〉(《東方學志》77・

또한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었고,67) 사치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들이 유통망에 편입되게 되었다. 지주제의 확대에 따라 농촌에서 이탈된 농민들 가운데 다수가 상공업 인구로 전화되었고, 15세기에 강화되었던 관영수공업체제 역시 장인들의 부역 동원 기피와 이탈 등에 의해점차 민영수공업체제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여러 요소들은 결국 유통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었고, 장시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장시가 발달하면서 이곳에서 거래되는 물품들도 다양해져갔다. 가장 일반적인 물품은 米·中米·租·太豆 등의 곡물류로서 鐵·淸蜜과 같은 생산물과 교환, 거래되었다. 또한 木·正木·苧布·木花·紬·布衫 등의 각종 직물류가 매매되었다. 아울러 牛肉·生鷄・餅・酒・乾柿 등 농가에서 부업으로생산한 물품도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산물도 거래되었다. 이밖에도 笠・沙器・炭 등의 일용품과 鐵片・鼎・牛馬・斫刀 등 농업 생산에필요한 물자들이 교역되고 있었다.

한편 장시 개설이 확산되면서 장시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농민층 분해에 따라 몰락한 농민들로서 과중한부세와 수령의 수탈을 이기지 못해 피역하였거나 이농한 유망민들이었다. 장시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도산한 농민들이 私家의 노비나 전호가 되는 것을 피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장시였다. 흉황시 민인들이 장시로 몰려드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 (2) 장시에서의 상품유통의 확대

17세기에 들어와 장시는 더욱 발달해 갔다. 대동법의 실시는 생산 체제의 전환과 시장 구조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조세의 금납화가 보편화되면서 화폐

<sup>78·79</sup> 합집, 延世大, 1993) ; 백승철, 〈16세기 富商大賈의 성장과 상업활동〉(《역사와 현실》13, 1994)의 글들이 참고된다.

<sup>67)</sup> 韓相權, (16세기 對中國 私貿易의 展開)(《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 산업사, 1983).

의 유통이 크게 확대되자 화폐 구득을 위한 상업 활동이 장시를 매개로 더욱 활발하여졌다. 이미 농촌 경제는 유통 시장인 장시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상업적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화가 진전되었다. 상품화폐경제에 참여하는 계층도 다양해져 대토지소유자나 부농층뿐만 아니라 소농층과 빈농층까지 시장 경제에 편입되고 있었다. 鍮器・磁器・紙・鐵製 농기구 등 수공업 분야의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의 증대는 이 시기 각 지방에 개설되고 있던 장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장시가 전국적으로 개설되면서 장시에서 거래되는 상품도 더욱 다양해졌고, 유통도 확대되어 갔다. 특히 도시에서의 상공업 인구의 증가는 주곡인 미곡을 비롯한 곡물의 상품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sup>(8)</sup> 농민들은 장시를 매개로 곡물의 잉여생산물을 상품화하였으며, 近畿지방의 농민들은 투稻를 재배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sup>(9)</sup> 또한 연초나 생강, 苧 등과 같은 특수 농작물과 소채류도 주요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연초의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연초 생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들까지 나올 정도였다.<sup>(7)</sup> 생강의 대표적 생산지였던 全州 지방에서는 생강이 부유한 자들의 이윤 독점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고,<sup>(7)</sup> 생강 상인이 平壤과 義州까지 왕래하면서 판매하기도 하였다.<sup>(2)</sup> 소채류 또한 17세기 중엽 이후에 가서는 도시 부근 지역에서 상품 작물로서 재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민간수공업 분야에서도 장시의 발달에 힘입어 제품의 상품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특히 유기의 경우 종래에는 서울·開城·전주 등 몇 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상품으로서의 유통이 발달되어 가자 安城·求禮·定州 등지로 생산지가 확대되면서 專業的 수공업체제를 갖추고 주문생산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곡물류나 특수 농작물, 수공업제품의 상품화 진전은 각지에

<sup>68)</sup> 李世永, 〈18, 9세기 穀物市場의 형성과 流通構造의 변동〉(《韓國史論》9, 서울大, 1983), 205쪽.

<sup>69)</sup> 李 瀷,《星湖僿說》 권 3, 人事門 生財.

<sup>70) 《</sup>承政院日記》 446책, 숙종 35년 1월 15일.

<sup>71)</sup> 李重煥,《擇里志》卜居總論 生利.

<sup>72)</sup> 柳壽垣,《迂書》 권 8, 論商販事里額稅規制. 朴齊家,《北學議》內編 車.

분포되어 있던 장시를 거점으로 한 근·원거리 상품 유통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3) 장시의 시장권 형성과 상설시장화

장시가 전국적으로 개설되고 장시를 거점으로 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장시의 시장권 형성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장권의 형성이란일정한 범위 내에서 4~5개의 장시가 設場日을 달리하며 개시함으로써 해당지역 내에서의 상품 거래가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73) 이러한 모습은 16세기말부터 미약하게나마 보이고 있었다. 대체로 4~5개의 장시들이시장권을 형성하면서 근거리 지역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 생산되는 물자도유통·집하하고 있었다. 제주에서 생산된 미역이 전라도 지방에서 거래되기도 하는 등 각 지방에서 생산된 물품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까지 운반되어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장시의 시장권 형성은 장시의 신설이나 이설, 폐지, 設場日 변경 등 장시 내부의 질적인 변화와 상인들의 商圈 확대 등에 의해 더욱 확산되어 지역마다의 시장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장시는 5일장으로 통일되어 가게 되었고, 소규모 장시에 대한 대장시의 흡수 양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아울러 장시의 시장권 형성과 지역간 연계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소읍에서의 장시 신설이 증가하였다. 즉 대읍에서는 소규모 장시의 흡수에 따라 장시의수가 감소하게 되었지만, 중·소읍에서는 장시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74)

장시의 지역적 시장권의 형성은 점차 전국적인 양상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에 따라 物貨 유통이 활발한 교통의 요충지나 포구에는 대장시가 형성되 거나, 상설 시장화하는 곳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도시 주변의 경제적

<sup>73)</sup> 韓相權, 〈18世紀末 -19世紀初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韓國史論》7, 서울 大, 1981), 225쪽.

李憲昶,〈舊韓末 忠淸北道의 市場構造〉(《近代朝鮮의 經濟構造》, 比峰出版社, 1989), 181等.

<sup>----, 〈</sup>朝鮮後期 忠清道地方의 場市網과 ユ 變動〉(《經濟史學》18, 1994) 참조. 74) 韓相權, 위의 글.

요지와 지방의 행정 및 상업 중심지에서는 장시들이 차츰 상설 시장화하고 있었다.

이처럼 장시가 상설 시장화된 데에는 각지의 물화 집산지에 상설 점포인 鋪子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던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포자는 관 영과 민영의 두 가지가 있었던 바, 관영포자는 물화 유통뿐만 아니라 殖利 활동을 통해 지방 재정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 다.75)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민영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상리를 취하 여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업의 중심지에 광범하게 설치되었던 포 자는 각 지방의 장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나아가 장시의 상설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장시가 상설 시장화되면서 경제적 중심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종래의 정치·행정적인 기능과 성격을 지닌 전통적인 도시들과는 별개로 상업과 수공업 중심지의 도시들이 성장한 것이다. 이전에는 도시적 성격을 지니지 않았던 지역들이 장시의 발달과 상품 유통의 확대로 말미암아상업의 중심지로 변모되어 간 것이다. 경기도 廣州의 沙坪場·松坡場,安城의 邑內場,交河의 恭陵場,稷山의 德坪場,南原의 邑內場,平昌의 大化場,黃州의 邑內場,鳳山의 銀波場,昌原의 馬山浦場,博川의 津頭場,德源의 元山場 등 전국의 15대 장시로 유명했던 지역이 그러하였다. 광주의 송과장 같은 곳은 명목상 5일장이었지만 매일 개설되어 서울 시전인의 상권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장시의 상설 시장화는 4~5개의 장시가 지역적으로,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장권의 형성을 더욱 축진시키게 되었다. 결국 개개의 장시가 매일 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장시가 상설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양상이었던 것이다.

〈吳 星〉

<sup>75)</sup> 관영포자는 정책적 목적에서 설치된 때문이었는지 모르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페단을 남긴 채 결국은 폐지되었다.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1) 군문 · 영문에 의한 군수공업의 성장

#### (1) 임란 중 도감제와 도회제하의 군수광공업 실태

17세기에 軍需産業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부터 鳥銃을 휴대용의 小火器로 사용하게 되고 중앙과 지방의 군제에 조총병을 근간으로 한 束伍 三手制를 적용한 데 있었다.

임진왜란 중에 明의 南方兵과 왜병들이 휴대한 조총은 곧 서양의 火繩銃이었다. 16세기초 서양에서 개인 휴대용 소총으로 사용되던 화승총이 동양삼국에 전래된 것은 중종 38년(1543)으로 일본 種子島에 표류했던 포르투갈상인에 의해서였다. 중국에서는 浙江省에 침입한 왜구를 통해 명종 18년(1563)부터 조총을 사용하게 되었고, 조선에는 선조 22년(1589)에 對馬島主 宗義智(소오 요시토시)가 선물로 바쳤으나 이를 중시하지 않고 軍器寺의 창고에 死藏한 채 왜란을 맞고 말았다.1)

당시 조총은 三連發이 가능하고 치사율뿐만 아니라2) 명중률에 있어서도 우리 군사의 상용 무기였던 弓矢에 비해 5배였고 快鎗에 비해서는 10배나 되었다고 한다.3) 이처럼 높은 명중률 때문에 "나는 새도 능히 맞힐 수 있 다"4)는 뜻에서 조총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선조는 이를 '천하의 神器'5 라고 경탄하였다. 조선 정부가 조총의 제조 및 사용법을 전습한 것은 왜란 이듬해인 선조 26년 2월이었다.6) 선조는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조

<sup>1)</sup> 坪井九馬三,〈鐵砲傳來考〉(《史學雜誌》29, 1895) 및 柳成龍,《懲毖錄》1 참조.

<sup>2) 《</sup>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정월 무술.

<sup>3)</sup> 韓孝純, 《神器秘訣》全, 선조 36년조.

<sup>4) 《</sup>宣祖實錄》 권 71, 선조 29년 정월 정유.

<sup>5) 《</sup>宣祖實錄》 권 44, 선조 26년 11월 임술.

<sup>6) 《</sup>宣祖實錄》 권 35, 선조 26년 2월 을미 및 권 36, 선조 26년 3월 병인.

총을 학습토록 명령하였고 조총의 사격술을 과거의 試取科目에 넣도록 지시 하였다.7)

조총을 주무기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에 적합한 군사의 편제와 전법이 채택되었다. 정부는 명나라 군사중 조총병을 주축으로 한 南方兵의 편제와 전술의 교과서였던《紀效新書》를 새로운 군사 편제와 전법의 지침서로 채택한 것이다.《기효신서》는 명말의 이름난 장수였던 戚繼光이 남방의 왜구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창안한 禦倭의 要法으로서》 그 요지는 束伍分軍法과 三手技法이었다.》)

속오분군법에서는 營將 통솔하의 營을 分軍 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로 삼았고, 영에는 5개 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哨, 1초는 3旗, 1기는 3隊, 1대는 火兵 1명과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에는 把總, 초에는 哨官, 기에는 旗摠, 대에는 隊摠을 각각 지휘관으로 두었다.<sup>10)</sup> 따라서 한 개의 영에는 영장 1명과 파총 5명, 초관 25명, 기총 75명, 대총 225명 및 2,475명의 병사로 편성된 셈이다.

삼수기법에는 조총병인 砲手와 弓兵인 射手 및 槍劍兵인 殺手의 기예를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속오분군법에 의해 편성되고 삼수기법으로 훈련된 군사제도를 필자는 편의상 '束伍三手制<sup>111)</sup>라고 하였다. 정부는 선조 26년 (1593) 4월에 왜병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동년 10월에 환도하는 즉시 중앙군과 지방군을 속오삼수제로 편성 훈련키 위해 우선 訓練都監을 설치하였고 동시에 이들 군사에게 무기와 군량도 조달할 수 있게끔 조직하였다. 당시훈련도감의 조직 편제는 都提調의 총관하에 훈련대장 1명, 中軍 1명, 千摠 1명, 파총 2명, 초관 6명 및 射手인 馬兵 2哨, 砲・殺手인 步軍 25哨로 구성된 訓練部署12)와 有司堂上 1명,都廳 1명, 郞廳 5명으로 구성된 軍需部署로

<sup>7) 《</sup>宣祖修正實錄》 권 27, 선조 26년 2월 병술.

<sup>8) 《</sup>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2월 경술.

<sup>9)</sup> 戚繼光,《紀效新書》.

<sup>10)</sup> 柳成龍, 《懲毖錄》 15, 軍門謄錄, 선조 28년 12월 18일.

<sup>11)《</sup>仁祖實錄》권 19, 인조 6년 12월 신묘.

<sup>12)《</sup>萬機要覽》軍政篇 2, 訓鍊都監 軍摠.

나누어져 있었다.13)

훈련부서의 주관하에 속오삼수제에 의한 군사의 편성과 훈련이 실시되었고 훈련된 병사들을 기반으로 이듬해에는 지방에도 속오삼수군 곧「束伍軍」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良・賤의 구별 없이 병약자가 아니면 모두 뽑았고, 50세 이상이라도 건장한 남자면 정발하여속오군 조직을 확대해 갔으며,14) 선조 28년(1600)에는 각 道의 대소에 따라 營단위의 속오군 편성도 착수하였다. 영이 처음 설치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였다. 서울의 훈련도감을 中營으로 하고 경기도를 左・右・前・後營으로 분할하였으며, 江華・喬桐의 속오군은 水營에 편속시켰다.15) 각 도 속오군의영 단위 편성이 완료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속오군 편성을 주관했던 柳成龍의《平安道鎭管官兵編伍冊》중 남아있는 2책만 보더라도선조 29년 4월 현재 永柔・肅川・安州・寧邊・熙川・博川・泰川・雲山・龜城・宣川・龍川・彌串・鐵山・義州・麟山・乾川・水口・玉江・方山・淸城・靑水 등지의 편성이 완료되고 있어16) 늦어도 선조 30년대에는 완료되었을 것으로여겨진다.

한편 훈련도감의 軍需部署에 관해서는 직제나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진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선조 27년 4월에 정부가 훈련도감 설치 이후 공이 있는 자들에게 포상한 기록을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군수부서의 책임자인 유사당상은 현직 병조판서였던 李德馨이 검하였고 都廳 辛慶晉이 각 당청들을 통솔하였다. 당청 韓喬는 《기효신서》의 해독을 담당했고 당청 申閱은 殺手軍色을 맡았으며, 당청 崔德峋은 槍刀의 제조작업을, 당청 李

<sup>13) 《</sup>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2월 경술.

<sup>《</sup>宣祖實錄》 권 50, 선조 27년 4월 계해.

<sup>《</sup>增補文獻備考》226책, 職官考 13, 訓鍊都監.

<sup>《</sup>萬機要覽》軍政篇 2, 訓鍊都監.

<sup>14) 《</sup>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12월 갑신. 柳成龍、《懲毖錄》 15. 軍門謄錄.

<sup>15)</sup> 柳成龍、《懲毖錄》15. 軍門謄錄 編伍事目.

<sup>16)《</sup>朝鮮史料叢刊》第 10, 鎮管軍兵編伍冊 殘卷 1 · 2.

自海는 砲手軍色으로 조총의 제조작업을, 낭청 鄭士榮은 화약의 제조작업을 각각 담당했다.17) 곧 훈련도감 설치초의 제반 업무가 《기효신서》를 지침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기효신서》의 해독을 전담한 낭청을 두었고 그밖에 施賞者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殺手色과 弓矢의 제조작업을 담당한 낭청들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훈련도감의 군수 부서에서는 각 낭청들이 각기 담당한 병종의 군사들에 대한 식량과 의복 및 무기 제조비를 조달하였으며, 또 조총과 화약, 창검과 궁시 등의 제조작업을 전담하거나 겸관하였다.

정부는 이들 각 낭청들이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원도 마련하였다. 18) 선조 26년(1593) 12월에 서울 근교의 황무지를 屯田으로 折給하고 훈련도감 소속 농민군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으며 19) 이듬해 3월에는 충청도에 있는 40여 개소의 寺社位田도 둔전에 귀속시켜 해당 낭청이 수세토록하였다. 20) 그리고 선조 28년 12월에는 황해도의 甕津・충청도의 泰安・전라도의 茂長에 있는 염전들을 절급하고 그곳의 수령들로 하여금 米・布와 교환상납토록 하였으며, 21) 선조 35년에는 충청・전라・강원・황해・경기 등 5도의水旱田에 한해 1결당 大小米 1두씩의 三手米를 수취토록 하였던 것이다. 22)

한편 조총·화약·창검·궁시 등의 제조작업을 담당한 낭청들은 각각 제조장을 훈련도감 내에 설치하고 각종 工匠들을 모집하여 제조작업을 독려하였다. 훈련도감의 공장들 중에는 조총이나 화약의 제조법에 익숙한 왜병 포로도 많았다. 왜란초에 선조는 왜병 포로를 조총·화약 제조장에 투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sup>23)</sup> 선조 27년 2월에는 "왜인 포로들 중 흉폭하고 교활하여

<sup>17)</sup> 주 13) 참조.

<sup>18)</sup> 車文燮,《朝鮮時代軍制研究》(檀國大 出版部, 1973), 171~178\.

<sup>19) 《</sup>宣祖實錄》 권 40, 선조 26년 12월 임자.

<sup>20) 《</sup>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3월 기묘.

<sup>21) 《</sup>宣祖實錄》 권 70, 선조 28년 12월 병진.

<sup>22) 《</sup>宣祖實錄》 권 203, 선조 39년 9월 무자.

<sup>23) 《</sup>宣祖實錄》 권 40, 선조 26년 7월 신유.

宣祖는 포로가 된 왜인들을 鳥銃 製造와 焰硝 生産에 사역할 목적으로 비변사에서 調于汝文 등의 왜인 포로를 明의 經略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만약 알리면 이들 두 왜인을 잡아가 버릴 것이니 머물게 하여 鳥銃과 焰硝의 제조법을 전습케해야 한다면서 중국측에 보고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총·焰硝 제조장에 투입하라"<sup>24)</sup>고 지시함으로써 상당수의 왜병 포로가 투입되었다. 이들에게도 조선의 工匠들 과 같이 매월 料米를 지급하였고 때때로 靑鹽布 등을 옷감으로 주거나 司猛 등의 告身을 제수하기도 하여 작업을 독려하였다.<sup>25)</sup>

이처럼 훈련도감의 각 무기 제조장은 운영비를 염출할 각종 재원을 확보하고 낭청들의 감독하에 각종의 공장들과 왜병 포로들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는 문제가 용이치 않았다. 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역시 鐵이었다. 조총과 창검 및 箭鏃 등 철제품의 원료인 철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는 선조 27년(1594)에 황해도 載寧의 産鐵地에 鐵峴屯을 설치하고 매년 11,705근을 수취토록 하였다.26)

그러나 무기 생산의 원료 조달에 가장 곤란을 겪었던 것은 화약의 원료였다. 당시 화약은 焰馏와 柳灰 및 硫黃을 배합하여 제조하였는데 배합 비율은 염초 16兩, 유회 3량, 유황 1량 4錢重이었다.<sup>27)</sup> 이 중 유황은 국내에 유황광산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수입하였고, 유회는 국내의 어디에서나 손쉽게 제조할 수 있었다. 결국 화약 제조에 가장 많은 양을 필요로하고 또 고도의 제조 기술을 요했던 염초를 자체 생산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중에 정부는 명나라와 일본의 염초 제조술을 전습하려고 노력하였다.<sup>28)</sup> 따라서 선조 26년 3월에는 譯官 表憲이 명나라의 염초 제조법을 입수하였고,<sup>29)</sup> 같은 달에는 염초의 제조 기술을 지닌 왜병 포로를 찾아 6월부터는 일본식의 제조법을 실험하였다.<sup>30)</sup> 이에 선조는 평안·황해·충청·전라

<sup>24) 《</sup>宣祖實錄》 권 48, 선조 27년 2월 병인.

<sup>25) 《</sup>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2월 무인·3월 기해 및 권 53, 선조 27년 7월 기축.

<sup>26)《</sup>萬機要覽》軍政篇 2, 財用.《訓局謄錄》, 戊戌 11월 22일.

<sup>27)《</sup>新傳煮硝方》,得硝法始末.

<sup>28) 《</sup>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정월 계미.

<sup>29) 《</sup>宣祖實錄》 권 36, 선조 26년 3월 임오.

<sup>30) 《</sup>宣祖實錄》 권 36, 선조 26년 3월 병인·권 39, 선조 26년 6월 기해 및 권 48, 선조 27년 2월 병인.

도 등 收復地의 각 도에 '都會'를 설치하고 염초를 대량 생산토록 지시하였 고,31) 염초 생산과 더불어 궁시 제조도 도회제하에 추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곧 각 도의 감사와 병사 및 水使의 책임하에 우 선 감영・병영・수영에 도회를 설치토록 하고 또 道內의 大邑 중에서 감사 가 선정하여 '都護'를 설치하되 반드시 武將이 수령으로 있는 읍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때 도호를 설치할 만한 읍으로서 평안도의 義州・ 成川・江界・龜城、 함경도의 吉州・端川・永興・會寧、 황해도의 海州・安岳、 강원도의 江陵・春川・原州・三陟. 충청도의 洪州・公州・林川・舒川. 경상 도의 慶州・安東・晉州 등지를 예시하였다.32) 이리하여 각 도의 감・병・수영 에는 도회가, 대읍에는 도호가 설치되어 훈련도감의 무기 제조장을 방불케 하는 염초 제조장과 궁시 제조장들이 개설되었다.33) 그리고 선조 26년 10월 에는 柳成龍이 江華의 監牧官으로 하여금 牧子들을 사역하여 염초를 생산 토록 건의하였고, 完城君 李憲國은 서울의 民戶로 하여금 집집마다 염초를 제조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34) 이처럼 선조 26년 6월부터 각 도에 도회와 도호를 개설하거나, 강화 목자와 서울의 민호까지 염초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훈련도감의 화약 제조 원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조 26년 8월에는 정부가 端川銀鑛을 개발함에 따라 조총의 탄환인 鉛丸의 제조 원료인 鉛鐵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다.35)이어 선조 27년 5월에는 鉛・銀産地인 단천은광에도 일종의 도회제를 적용하여 단천민과 吉州民의 공물을 일부 견감한 대신 양 읍민을 鑛役에 동원하기 시작하였고,36)이듬해에는 훈련도감에서 직접 소속 인원을 파견하여 靑山・報恩 지방의 鉛鑛을 개발하기도 하였다.37)연광 개발이 진척되자 이듬해인 선조 29년에 鉛

<sup>31) 《</sup>宣祖實錄》 권 39, 선조 26년 6월 임자.

<sup>32) 《</sup>宣祖實錄》 권 39, 선조 26년 6월 임자.

<sup>33) 《</sup>宣祖實錄》 권 46, 선조 26년 12월 신해.

<sup>34) 《</sup>宣祖實錄》 권 43, 선조 26년 10월 임인.

<sup>35) 《</sup>宣祖實錄》 권 51, 선조 27년 5월 임인.

<sup>36) 《</sup>宣祖實錄》 권 59, 선조 28년 정월 을미.

<sup>37) 《</sup>宣祖實錄》 권 71, 선조 29년 정월 기미.

丸을 조달하기 위해 함경·충청감사에게 咸興·安邊·端川 및 忠州의 연철을 다수 채납토록 지시하였다.38)

결국 임란 중 훈련도감의 조총·화약·창검·궁시 제조장 등은 정부에서 절급한 둔전·염전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었고 역시 정부에서 절급한 産鐵地에서 철을 수취하였으며, 중앙과 각 읍에서 도회제하에 생산된 염초를 수용하고 단천은광 등지에서 연철을 수렴함으로써 도감제하의 각종 무기생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선조 26년(1593) 10월에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都監制下의 무기 제조작업이 실시된 지 불과 6개월만인 이듬해 4월에는 이미 각 제조장의 운영을 맡아왔던 낭청들을 포상할 만큼 생산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훈련도감의 무기 생산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지방의 무기 제조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지방군의 東伍三手制 적용을 가능케 하였다. 훈련도감의 각종 工匠들은 그 동안 숙련된 무기제조 기술자로 성장하였고 정부는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갔다.

영의정 유성룡의 건의<sup>39)</sup>로 선조 27년 3월에 정부가 砲手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한「訓鍊事目」을 각 도의 감・병・수영 및 각 읍에 반포하였다. 정부는 지방에도 포수를 양성하여 속오군을 편성할 계획이었고 포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조총을 생산하여 자체 조달토록 훈련사목에 명시하였다.

훈련사목의 내용은, 첫째 훈련도감은 서울에 거주하는 숙련된 鐵匠 중 5~6명을 뽑아 조총의 제조기술을 연마시킨 뒤에 황해도와 충청도의 연해 각읍 중 鐵과 炭이 풍부한 곳으로 파견하고 그 읍을 都會로 지정하여 조총을 정교하게 제조토록 하며, 둘째 도회의 수령은 근면 성실하고 조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 조총의 제조작업을 관장케 하되 실적을 쌓도록 책무를 지운다는 것이다.40) 앞서 선조 26년 6월에 정부가 각 도의 감·병·수영 및 대읍들에 도회 또는 도호를 개설하여 연초와 궁시 생산을 강요한 데 이어 지금은 황해도와 충청도의 철과 탄이 풍부한 읍에 도회를 설치

<sup>38) 《</sup>宣祖實錄》 권 56, 선조 27년 10월 갑인.

<sup>39) 《</sup>宣祖實錄》 권 48, 선조 27년 2월 신유.

<sup>40) 《</sup>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3월 기묘.

하고 조총 생산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이다.

이처럼 임란 중에 중앙에서는 훈련도감의 도감제하에 조총과 화약 및 연환 등이 주로 생산되었고 각 도의 감·병·수영과 산철지의 각 읍에는 도회제하의 조총·염초·궁시·연철 등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각읍월과총약환법의 제정

왜란이 종식된 이후 무기 생산체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록 왜란이 끝나긴 하였지만 재침할 위험을 불식할 수 없었고 만주에서 흥기한 여진족의 세력도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잠시도 방어태세를 소홀히 할수 없었고 군비 증강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남에 따라 흩어졌던 농민들이 생업을 되찾게 되면서 종래의 도감제나 도회제하에 실시되던 무기 제조와 광산 채굴도 점차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왜란 중에는 훈련도감이 자체적으로 군사를 조련하고 무기를 공급하는 일 뿐 아니라 지방의 속오군 양성을 주관하였고 동시에 각 처의 무기 제조와 광산 개발도 주도해 왔던 셈이다. 그러나 왜란 중에 權設衙門으로 설치된 훈련도감이 왜란 후에는 본래의 都監的 성격에서 벗어나 중앙의 유일한 상설 군문으로 자리를 굳혀 무기 제조나 광산 개발도 오직 자체 내의 수용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왜란 중에는 유명무실했던 軍器寺가 본래의 업무를 되찾게 되었고 동시에 속오군의 무기 조달도 관장하게 되었다.

군기시는 조선 초기부터 무기제조 업무를 담당한 관서여서 무기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료를 공납 형태로 수취하였으며, 이 무렵 貢鐵만도 10,000여 근을 징수하고 있었다.41) 이처럼 군기시는 각 읍으로부터 공물로서 수취한 생산 원료로 각종의 무기를 제조하였고 이를 각 읍으로 분송하였다. 그러나 화약의 원료인 염초의 생산은 당시 군기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納硝免役法42)을 반포하는 한편, 명나라의 염초를 수입

<sup>41) 《</sup>火器都監儀軌》, 광해군 7년 7월 26일.

<sup>42) 《</sup>宣祖實錄》 권 134, 선조 34년 2월 정축.

하였다.43) 이 때문에 선조 36년(1603) 3월에는 군기시의 副正 李止孝가 각 읍이 사용할 염초는 자체 생산토록 하는 이른바「各邑月課煮哨法」을 건의하였던 것이다.44) 이 각읍월과자초법에 규정한 각 읍의 月定 생산액은 대읍 40 근, 중읍 30근, 소읍 15근이었다.45) 이때의 月課法은 각 鎭의 弓箭 생산에도 적용되어「各鎭月課弓箭法」이 적용되었다.46)

이처럼 선조 36년에 각읍월과자초법과 각진월과궁전법 등이 실시되면서 종래 왜란 중에 실시되었던 도회제하의 생산 형태는 무너져 갔다. 정부가 처음에 각읍월과자초법을 택한 이유는 군기시의 무기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곧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있었다. 결국 각읍월과자초법의 실시를 통해서 정부는 중앙의 재정적인 부담을 각 읍으로 전가하였으며 동시에 각 도의 감・병・수영도 도회제를 통한 자체부담을 각읍으로 전가할 수 있었다.

정부가 각 읍으로 하여금 염초를 자체 생산토록 한 것은 亂後 5~6년이 경과하여 농민들이 비로소 옛 터전을 되찾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각읍이 염초를 자체 생산하지 않더라도 명의 요동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 조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각읍월과자초법이 실시되기 전인 선조 34년에 이미 함경도가 염초 생산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명나라의 염초를 은으로 구입할 정도였고47) 평안도에서는 納硝免役制에 편승하여 은 1냥 당 염초 20근씩의 싼값으로 요동에서 수입해 왔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48)

이처럼 요동의 염초를 수입하는 행위는 각읍월과자초법이 실시된 뒤에도 여전하였고 특히 평안·황해도 등 요동과의 거래가 용이한 지역의 각 읍에 서는 연초의 자체 생산을 중지하고 수입품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염초 1근

<sup>43) 《</sup>宣祖實錄》 권 134, 선조 34년 2월 계사 및 권 135, 선조 34년 3월 병진.

<sup>44) 《</sup>宣祖實錄》 권 160, 선조 36년 3월 정묘.

<sup>45) 《</sup>宣祖實錄》 권 164, 선조 36년 7월 정축.

<sup>46)</sup> 위와 같음.

<sup>47) 《</sup>宣祖實錄》권 135. 선조 34년 3월 병진.

<sup>48) 《</sup>宣祖實錄》 권 134, 선조 34년 2월 정축.

價가 면포 2필에 달했었다.49) 결국 각읍월과자초법은 각 읍에서 자체 생산토록 규정하였지만 정부로서는 그것을 각 읍에서 자체 생산하든 외부에서 구입하든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각읍월과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각 읍에 전가한 조처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동년에는 弓箭도 각 鎭으로 하여금월과제하에서 생산토록 강요한 것이다.

각읍월과자초법과 각진월과궁전법이 실시된 뒤 광해군대에는50) 조총과 화약 및 연환마저 각 읍에서 자체 조달토록 하기 위한 各邑月課軍器法이 제정되었다. 월과군기의 각 읍 배정은 기준을 읍의 대소에 두지 않고 大府・都護府・府・郡・縣 등 관위의 차등에 두고 있었다.51)

〈표 1〉 각 읍의 연간 총약환 배정 정액표

邑等 種別	鳥銃(柄)	火藥(斤)	鉛丸(箇)	年總價米(石)
大府・都護府	24	96	4,800	160
府	18	72	3,600	120
郡	12	48	2,400	80
縣	6	24	1,200	40

정부는 각 읍에 총약환의 월별 생산정액을 배정하는 동시에 총약환의 법정가도 일일이 규정하였다. 조총은 1柄에 米 5斛(1斛=10斗), 화약은 1斤에 미1곡, 연환은 100箇에 미 5두였다. 이러한 총약환의 法定價는 당시 국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듯하다. 그것은 각 읍에서 총약환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조총의 경우 중앙의 훈련도감과 군기시, 그리고 왜란 중 도회제하의 조총 생산이 실시된 황해・충청도의炭鐵産地를 제외한다면 당시로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했던 조총을 각 읍에서자체 생산할 수 없었으며, 화약의 경우 염초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유황은 구

<sup>49) 《</sup>宣祖實錄》 권 164, 선조 36년 7월 정축.

<sup>50)</sup> 柳承宙、〈朝鮮後期「都監」制下의 官營手工業에 관한 一研究〉(《震檀學報》 69, 1990). 71쪽.

<sup>51)</sup> 柳馨遠,《磻溪隨錄》 권 21, 兵制.

입할 수밖에 없었고, 연환도 연광이 관내에 없는 한 구입 제작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었다. 결국 총약환의 법정가는 정부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었다.

이때 정부가 각 읍을 位差에 따라 차등 배정한 총약환수나 法定價米의 년 간 총액이 얼마나 되었던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참고로 중종 25년(1530)에 증보한《東國輿地勝覽》 중의 각 읍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조총이 3.510병 에 법정가미는 11,700석이며, 화약은 14,040근에 9,360석, 연환은 70,200개에 2,340석으로 年總月課米는 23,400석에 달하였다.52) 각읍월과군기법상의 총약 환 법정가가 전국적으로 년간 23,400석에 달하지만 읍별로는 大府・도호부가 160석, 부가 120석, 군이 80석, 현이 40석이었다. 이 법정가는 총약환을 구입 할 때 소요되는 법정가액일 뿐이며 자체 생산시에 소요되는 자금 액수는 아 니었다. 만약 각 읍에서 총약환을 자체 생산한다면 工匠의 급료나 원료 구입 비로서의 자금은 필요하지만 그 밖의 연료 조달이나 원료의 운반 및 제조과 정의 잡역은 농민들의 부역노동에 의존함으로써 법정가액의 일부만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각 읍의 총약환 구입비이거나 제조비이거나 그것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우지 않고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자체 경비에서 마련토록 한 것53)은 총약환을 구입하면 수령의 부담이 클 것 이므로 자연히 자체 생산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곧 각읍월과군기법의 일차적인 목적은 각 읍의 자체 생산을 의무화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염초 외에는 유황이나 연철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조총까지도 구입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때 각읍월과군기법의 시행은 鐵鑛・硫黃鑛・鉛鑛 개발을 촉진하였고 銃・藥・丸의 상품화를 불가피하게 하였으므로 조선 후 기 광공업 발전사상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다.

그런데 각읍월과군기법이 실시된 광해군 말년에는 이미 각 읍의 수령들이 총약환에 필요한 비용을 관내의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수령들은 농민

<sup>52)</sup> 柳馨遠,《磻溪隨錄》에서는 大府・都護府는 大府・大都護府로 파악하였고, 牧의 경우는 大都護府使와 牧使가 다 같이 正三品이기 때문에 大府・都護府의 기준 치로 화산하였다.

<sup>53) 《</sup>承政院日記》 1책, 인조 원년 4월 13일.

들의 전결수에 따라 일정량을 정수하여 그것에 충당한 것이다.54) 이에 각 읍의 농민들은 염초 등의 製造役 뿐 아니라 제조비 또는 구입비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적인 세역을 지게 된 셈이었다. 따라서 부역농민들의 세역을 거부하는 피역 저항이 심화되었고 정부로서도 이를 강행할 경우 민심을 수습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인조가 즉위한 뒤에 정부는 각 읍의 月課軍器役을 4년간 중지키로 하였고, 또 인조 4년(1626)에 재개하려 하였으나 사헌부에서 民力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간 더 정지토록 요청함에 따라 다시 3년간을 정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55) 곧 인조초의 7년 동안은 각 읍의 월과군기법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인조 5년의 정묘호란과 14년의 병자호란 등 전란의 와중에서는 더욱 월과군기법을 시행하기가 어려웠으며 병자호란 이후에 이르러서야 겨우 재개할 수 있었다.56)

어떻든 전술한 바와 같이 광해군대에 각읍월과군기법이 제정되면서 각읍에서는 월과군기가를 수령이 자체 경비로 마련하거나 농민들로부터 布를 징수하여 月定量의 軍器를 충당하여 왔다. 각읍월과군기법의 총약환 법정가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었지만, 실제의 생산가에 비하여 얼마나 높게 책정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7세기 중엽의 경우 대략 생산가의 2, 3배에 달했던 것으로 보아 17세기초의 책정시에도 2배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당시의 月課 鳥銃이나 화약 및 연환가는 상당한 이윤이 보장되는 상품이었고 전국 각 읍을 상대로 하는 넓은 판로를 갖는 物種이었다. 이 때문에 각읍월과군기법이 제정 실시된 후 서울의 富民들은 점차 총약환의 무기 제조장을 개설 운영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울에서 부민들에 의한 무기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방에도 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동시에 서울과 지방으로 왕래하면서 제품이나 원료를 매매하는 상인들도 있었다.57) 곧 각 읍의

<sup>54) 《</sup>備邊司謄錄》 13책, 인조 27년 3월 20일.

<sup>55)《</sup>仁祖實錄》권 14, 인조 4년 11월 갑오.

<sup>56) 《</sup>備邊司謄錄》 31책, 숙종 원년 11월 19일 및 40책, 숙종 14년 4월 4일.

<sup>57) 《</sup>承政院日記》 302책, 숙종 10년 2월 13일. 《備邊司謄錄》 38책. 숙종 10년 2월 14일.

수령들은 서울의 부민들이 생산한 총약환을 구입하여 월과군기에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sup>58)</sup>

결국 각읍월과군기법은 시행되는 즉시 守令 부담·자체 생산이란 본래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에는 각 읍 수령들 이 월과군기가를 전적으로 농민에게 부과하였으며 자체 생산을 기피하고 서 울의 민간 제조업자들로부터 구입 충당하는 실정이었다.59) 이처럼 각읍월과 군기법은 비록 월과군기가가 대동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들이 민결에서 염출하였고 민간 제조업자들이 월과군기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총 약환을 제조 납품하는 등 사실상 공물의 방납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하에서 정부는 효종 3년(1652)에 이르러 충청도에 대 동법을 적용하면서부터 관내 각 읍의 월과군기가를 대동미에 산입하는 이른 바 各邑月課銃藥丸法을 제정 실시하였다. 정부가 이때 각읍월과총약환법을 제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종래의 각읍월과군기법이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월과군기가 를 부담토록 규정하였지만 점차 民結에 부과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강한 저 항을 받아 왔기 때문에60) 정부는 수령들이 비합법적으로 월과군기가를 민결 에 부과했던 행위를 합법화시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한 조처로서 취해졌 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각읍월과군기법은 각 읍의 월과군기수를 官位의 차등 에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민호와 전결이 부족한 읍의 농민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중되었을 것이다. 또 수령이 월과가를 전결에 부과했다 고 하지만 당시 수령으로서는 양반이나 토호의 전결에 균등히 부과했을리가 없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빚어졌을 농민들의 불만도 함께 해소하는 방안으 로 모색되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17세기 중엽인 효종·현종·숙종초에 걸쳐 대동법이 실시된 도는 충청도와 전라도 및 경상도 등이었다. 효종 3년 충청도에, 8년에 전라도의 沿海邑에,

<sup>58) 《</sup>備邊司謄錄》 13책, 인조 27년 3월 20일.

<sup>59)</sup> 주 57) 참조.

<sup>60) 《</sup>備邊司謄錄》 13책, 인조 27년 3월 20일.

그리고 현종 3년(1622)에는 전라도의 山郡에, 숙종 3년(1677)에는 경상도에 각각 대동법이 적용되었다.61) 그러나 대동법이 적용된 시기와 각읍월과총약환가가 대동미에 計上된 시기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각읍월과총약환가를 대동미에 포함시켰어도 그것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시행세칙인「事目」이 완성되기까지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종 3년(1652)에 대동법이 적용된 충청도의 사목은 동왕 5년 3월에 재가되었고,62) 효종 8년 연해 읍과 현종 3년 산군에 대동법이 적용된 전라도의 사목은 현종 4년에 재가되었으며,63)숙종 3년에 대동법이 적용된 경상도의 사목은 동왕 7년에 재가를 받았다.64)

이때 각 읍의 월과총약환가를 대동미에 포함시킨 三南이 경우 각읍월과총약환법은 종래의 각읍월과군기법과는 각 읍의 分等 기준부터 확연히 달랐다. 각읍월과군기법에서는 분등 기준을 大府・都護府・府・郡・縣 등 관위의 차등에 두고 있었지만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법에서는 전결수를 기준으로 大・中・小・殘邑 또는 대・중・중소・소・잔읍 등으로 나누어 충청・전라도는대・중・소・잔읍으로 분등하였고, 경상도는 대・중・중소・소・잔읍으로 분등하였다.(55) 이처럼 전결수를 기준으로 월과총약환을 배정함으로써 각읍월과군기법에서의 불합리한 배정 비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그리고 다음〈표 2〉에나타난 충청・전라도의 각 읍에 배정된 年總 월과총약환수를〈표 1〉의 각읍월과군기수에 비교해 보아도 이미 어느 정도 실정에 맞도록 감액 책정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일일이 예시하지 않더라도〈표 1〉에 최소 읍인현에 배정한 월과군기수가〈표 2〉에서는 소읍의 그것과 일치하고〈표 2〉에는 다시 잔읍을 설정하여 극소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縣 중에서도 민호나 민결이 적은 현은 잔읍으로 분등하고 월과총약환수를 보다 적게 배정한 것이니 종래 현이면 일률적으로 월과군기수를 배정한 데 비해 훨씬 합리적인 것이다.

<sup>61)《</sup>新補受教輯錄》, 史典 京官職 宣惠廳.

<sup>62) 《</sup>湖西大同事目》, 順治 11년 3월(효종 5년 갑오).

<sup>63)《</sup>全南道大同事目》康熙 2년 3월(현종 4년 계묘 계하).

<sup>64)《</sup>嶺南廳事例目錄》外官會滅,各邑月課外邑措置 今廢.

<sup>65)</sup> 주 62) · 63) · 64) 참조.

〈표 2〉 충청·전라도의 연총월과총약환수

	鳥銃(柄)	火藥(斤)	鉛丸(箇)
大 邑	24	96	4,800
中 邑	12	48	2,400
小 邑	6	24	1,200
殘 邑	2	8	400

충청·전라도보다 늦게 대동법이 적용된 경상도의 경우는 각 읍의 대소분등과 월과액의 차등 배정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었다. 각 읍을 대·중·중소·소·잔읍으로 분등하여 대읍은 매월 조총 2柄·화약 8斤·연환 400箇를, 또 매 3朔마다 조총 4병·화약 15근·연환 750개를 각각 마련토록 배정하였으며, 중읍은 조총 1병·화약 4근·연환 200개를, 중소읍은 매 3삭에 조총 3병·화약 2근·연환 450개를, 소읍은 매 2삭에, 잔읍은 매 4삭마다 각각 조총 2병·화약 4근·연환 200개를 마련토록 규정하였다.66)

이처럼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법이 제정되어 전결수에 기준한 월과액이 책정됨으로써 비로소 각 읍의 읍세에 준하는 세역 부과가 이루어졌고 또 종래의 각읍월과군기법에 비하면 배정액도 전반적으로 차감 책정되었다.67) 그러나총약환의 법정가는 종래와 다름없이 조총은 1병에 米 3석 5두였고, 화약은 1근에 미 10두, 연환은 100개에 미 5두였다. 이중 연환가는 숙종 7년에 충청병사의 건의로 100개에 5두를 4두로 인하하고 1두를 감한 대신 연환의 배정량을 늘렸다.68) 따라서 각 읍은 연환의 경우 매년 대읍은 1,344개, 중읍은 672개,소읍은 332개, 잔읍은 112개가 각각 증가 배정된 셈이다.69) 숙종 7년 당시의 三南月課銃藥丸 배정액과 그것의 價米數는 다음 〈표 3〉과 같다.70)

<sup>66)</sup> 주 64) 참조.

<sup>67)</sup> 일례로 忠淸道의 月課鳥銃量만 비교해 보아도 종전에는 年間 468柄(米 1,560石) 이 할당된 데 비하여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불과 398柄(米 1,326石 10斗)에 지나지 않았다.

<sup>68)《</sup>嶺南廳事例目錄》.

<sup>69)《</sup>湖南廳事例》, 月課銃藥丸.

<sup>70)</sup> 주 62) · 63) · 64) 참조.

#### 삼남월과총약환수 및 가미량

		忠淸道	全羅道	慶尙道	計
鳥銃	鳥銃數	389柄	504柄	623柄	1,525柄
	月課米	1,326石 10斗	1,680石	2,076石 10斗	5,083石 5斗
火藥	火藥量	1,592斤	2,016斤	2,436斤	6,044斤
	月課米	1,061石 5斗	1,344石	1,624石	4,029石 5斗
鉛丸	鉛丸數	99,500箇	126,000箇	231,750箇	457,250箇
	月課米	265石 5斗	366石	618石	1,219石 5斗
道別	月課米	2,653石 5斗	3,360石	4,318石 10斗	10,332石

삼남의 각 읍에 매년 배정한 월과조총은 1,525병에 월과미가 5,083석 5두였고, 화약은 6,044근에 4,029석 5두며, 연환은 457,250개에 1,219석 5두로써 총월과미는 10,332석에 달하였다. 이처럼 삼남 각 읍의 월과미를 효종 5년(1654)에는 충청도, 현종 4년(1663)에는 전라도, 숙종 7년(1681)에는 경상도의 대동미에각각 포함시킴으로써 조총·화약·연환이 새로운 물종의 공물로 확정되었다.

충청·전라·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도의 경우, 경기도는 일찍이 정부가 인조 2년(1624)에 摠戎廳을, 4년에 守禦廳을 설치하면서 관내 각 읍의 속오군을 양청에 분속시킴에 따라 자연히 각읍월과군기법은 혁파되고 소속 군문에서제조 분급케 되었으며,71) 그 밖의 황해·강원·평안·함경도 등은 확인할 수

필자가 작성한 표의 통계는 전적으로 各大同事目에 의거한 것이나 湖西와 湖南의 약환가가 일부의 다른 기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부언해 두려 한다. 湖西銃藥 丸價는 忠淸道大同事目의 기록과《備邊司謄錄》18책, 효종 7년 4월 13일조의 기록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火藥과 鉛丸의 합계가《萬機要覽》 賑恤廳事例에는 1,346석 9두 8승이라 기록되어있고,《六曹條例》戶典 宣惠廳條에 또한 1,346석으로 기재되어 있어〈표 3〉의 1,326석 10두와는 약 20석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湖南藥丸價도《備邊司謄錄》28책, 현종 10년 정월 3일조에 1,680석이라 기록되어 全南道事目과 일치되지만《賑恤廳事例》나《六典條例》戶典 宣惠廳條에는 1,688석으로 기재되어 있어 8석의 차이가 난다.《賑恤廳事例》나《六典條例》는 훨씬 뒤에 쓰여진 기록이고 그간에 月課表의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록상의차이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필자가 集計하는 과정에서 느낀바인데 우연인지는 흑 모르겠으나 湖南과 湖西의 경우 조총가가 반드시 약환가의 합계와 일치되고 있었다. 이것은 당초 月課價를 책정할 때 계산상의 편의를얻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다. 이것이 사실이라면〈표 3〉은 정확한 것이다.《備邊司謄錄》31책, 숙종 원년 정월 19일·40책, 숙종 12년 9월 20일 및 42책,

<sup>71) 《</sup>備邊司謄錄》 31책, 숙종 원년 정월 19일·40책, 숙종 12년 9월 20일 및 42책, 숙종 14년 4월 4일.

없으나 종래의 각읍월과군기법이 준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종래의 각읍월 과군기법에서는 월과가의 부담이 수령에게 지워져 있었고 농민들의 전결에 기초한 收布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였지만,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법이 제정 실시된 뒤부터는 그것이 정당화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법과는 월과가의 수취형태가 달랐지만 일종의 공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72) 정부는 숙종 34년에 황해도·강원도의 월과가도 詳定價에 포함시켰다.73) 황해도의 각읍월과총약환가는 大小米 각 420석 13두 9승 8합 2작이었고74) 강원도의 각읍월과총약환가는 大米 24석, 田米 8석, 錢 982량 9전 6분이었다.75)

### (3) 군문 · 영문의 무기제조와 월과총약환의 방납

광해군대에 각읍월과군기법이 시행된 뒤 각 읍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비축하고 관내 속오군의 총약환을 조달함으로써 각 도의 감·병·수영에서는 도회제하의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영내의 비축 무기와 군사의 상용 무기만을 자체 조달하는 소규모의 제조장을 운영하게 되었고76) 또 지방군의 무기조달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던 軍器寺에서도 대량 생산이 요구되지 않았다.77) 군기시의 무기제조 기능은 왜란중 훈련도감의 도감제 생산체제에 흡수되었었고 광해군 연간에는 다시 서울에 개설되었던 각종 도감의 종속적 기능을 수행할 따름이었다. 이 당시에 정부는 황폐된 도성을 복구하기 위하여 宗廟宮闕營造都監·書籍校印都監·繕修都監·欽敬閣建設都監·祭樂器製造都監 등을 개설하는 한편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火器都監・軍器都監 등도 개설

<sup>72) 《</sup>備邊司謄錄》 45책, 숙종 17년 12월 19일.

<sup>73) 《</sup>備邊司謄錄》 18책, 효종 7년 4월 15일 및 45책, 숙종 17년 12월 19일. 《六典條例》兵典 軍器寺.

<sup>74)《</sup>江原廳事例》,附海西公剩. 《海西廳事例目錄》,'肅宗三十四年戊子創設 初付於湖西廳矣 英廟三十四年戊寅 移屬江原廳'.

<sup>75)《</sup>江原廳事例》, 詳定恒式會減, '有逐年會減者 有間年上下者'.

<sup>76)</sup> 주 72) 참조.

<sup>77)</sup> 주 44) 참조.

운영하였다. 곧 군기시의 무기제조는 각 읍으로부터 공물로 수취하던 철물에 의존해 왔었는데 화기도감 등이 개설되면서부터 그것이 모두 도감으로 흡수되었고,780 이어 경기·경상·평안·함경도로부터 수취하던 공물가 마저 모두 삭감되었으므로790 이후 군기시의 기능은 유사시에 대비할 비축 무기를 보관하는 업무와 매년 정기적으로 왕실과 청나라에 封進하는 무기 등 극소수의 정교한 제품을 생산하는 한산한 기관으로 전략하였다.800

한편, 인조가 즉위한 뒤에는 내란의 공포와 외침의 위협이 증가하여 정부는 훈련도감에만 의존할 수 없었으므로 서울의 외각 수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인조 2년(1624)에는 摠戎廳을, 4년에는 守禦廳을 설치하였다. 총융청은 水原・南陽・通津・坡州・長湍 등 5개 營의 속오군을, 수어청은 廣州・陽州・竹山・原州 등 4개 영의 속오군을 각각 통할토록 하였다.81) 그러나 인조 14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은 임란 중에 편성된 속오군 체제가 지닌 전략・전술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왜란은 장기적인 전면전이었으나 병자호란은불과 10억일 만에 서울이 합락된 단기적인 국지전이었다. 전면전에 대비하여편성한 속오군의 동원 체제가 단기간에 서울을 급습했던 국지전에는 별반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서울의 수비를 강화시켜야만 하였고 동시에 북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정예 부대를 서울에 배치시켜야만 하였다. 효종 3년(1652)에는 어영청의 正軍을, 현종 12년(1671)에는 訓鍊別隊를, 숙종 8년에는 禁衛營의 정군을 각각 편성하였다. 이들 정군은 모두 각 읍의 속오군 중에서 富實하고 강건한 자들을 차출한 것이며 番次에 따라 교대로 서울에 올라와근무하던 番上 정군들이었다. 훈련도감의 군사들에 이어 이들 정군에게도資裝과 糧餉을 조달키 위해 給保法이 실시되었다.82) 따라서 군문의 戶・保

<sup>78) 《</sup>火器都監儀軌》, 광해군 7년 7월 26일.

<sup>79) 《</sup>承政院日記》 414책, 숙종 22년 10월 15일.

<sup>80) 《</sup>承政院日記》 564책, 경종 4년 정월 21일.

<sup>81) 《</sup>顯宗改修實錄》 권 10, 현종 4년 11월 무인.

<sup>82) 《</sup>顯宗改修實錄》 권 10, 현종 4년 11월 무인. 《萬機要覽》軍政篇 3, 御衛營.

數인 정군과 保人數는 엄청나게 불어났다. 곧 훈련도감은 馬・步兵 5,200여명에 馬兵 714명이었고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砲保・餉保가 44,000여명이었으며, 어영청은 標下軍・別破陣이 1,800여명에 鄉正軍이 16,700여명이었고, 6도의 米布保人數는 50,000여명이었다.83) 금위영도 標下馬兵 726명에 향정군이 16,300여명이었고, 향정군의 보인이 49,000여명원이었는데, 이들 삼군문의 총 정군은 40,726명이며, 보인은 143,000여명이었던 셈이다. 그 중 어영청과 금위영의 정군수는 훈련도감의 정군수에 비하면 거의 3배에 달하였다.

어떻든 훈련도감을 위시하여 17세기 초·중엽에 설치된 이들 총융청이나 수어청·어영청·금위영 등도 정부 예산상의 재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정군과 보인만을 확보하였으므로 각 군문에서는 이들에게 지급할 각종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처지는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 각 영은 나름대로 관내에 수탈 대상으로서의 농민과토지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서울의 각 군문과는 사정이 달랐다. 그런데 서울의 5군문 중에서도 총융청과 수어청은 경기도내 각 읍의 속오군을장악함으로써 감영·병영·수영과 유사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85) 따라서영내 군사의 무기 조달에 급급했던 군문은 역시 훈련도감과 어영청 및 금위영 등이었다.

효종·숙종 연간에 훈련도감의 군사수보다 각기 3배씩에 달하는 어영청과 금위영을 설치하면서도 정부가 무기 제조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던 것은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가를 대동미에 포함시킨 사실과 전연 무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것은 효종 3년에 어영청의 설립과 동시에 충청도에 대동법이 실시되었고, 5년에 충청도의 각읍월과총약환가가 대동미에 산입되는 즉시어영청은 훈련도감과 더불어 충청도의 각읍월과총약환을 방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당시 각읍월과총약환의 責價는 생산비에 비해

<sup>83)</sup> 李 瀷,《星湖僿說》上, 軍兵保.

<sup>《</sup>增補文獻備考》121型, 兵考 13, 總論軍制.

<sup>84)《</sup>續大典》兵曹 番上.

<sup>85)《</sup>增補文獻備考》121, 兵考 13, 總論軍制.

2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였으므로<sup>86)</sup> 효종 5년(1654)에 훈련도감·어영청 양국이 충청도의 각읍월과총약환가 2,653석 5두를 선혜청으로부터 반분해 가지더라도 최소한 각기 700여 석 이상의 餘分米를 갖게된 셈이었고 이 여분미로써 자체내의 필요한 무기 생산비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훈련도감과 어영청은 다시 현종 7년(1666)에 전라도의 월과총약환까지 방납하게 되었다.<sup>87)</sup> 이처럼 훈련도감과 어영청이 충청·전라도의 각읍월과총약환의 방납을 통하여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되자 다른 군아문에서도 욕심내게되었다. 현종 11년에 정부는 충청·전라의 각읍월과조총가를 군기시와 수어청에도 일부를 분배하고 있었다. 양도의 월과조총 908柄(價米 3,026석) 중에서 훈련도감에 300병(1,000석), 군기시에 200병(666석 10두), 수어청에 108병(360석)을 각각 분급한 것이다.<sup>88)</sup>

한편, 숙종 7년(1681)에는 경상도의 각읍월과총약환가가 대동미에 포함되었고<sup>89)</sup> 8년에는 禁衛營이 설치되었다.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은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삼군문에서 방납하게 되었다.<sup>90)</sup> 그러나숙종 10년에는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을 江華府가 관내 4,000명 군사의 무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액 방납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금위영도 강화부 예에 따라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을 수년간 독점 방납토록 요청하여 논란을 거듭한 끝에 숙종 12년부터 삼군문이 균분 방납토록 결정되었다.<sup>91)</sup>

이처럼 삼군문은 종래 각읍월과군기법하에서 서울의 富民들이 방납해 왔던 전국 각 읍의 월과군기 중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 방납권을 모두 빼앗은셈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대동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다른 도에서도 월

<sup>86) 《</sup>承政院日記》 309책, 숙종 11년 6월 3일·497책, 숙종 42년 8월 2일 및 552책, 경종 3년 3월 6일.

<sup>《</sup>備邊司謄錄》 39책, 숙종 11년 6월 4일·45책, 숙종 17년 12월 19일·69책, 숙종 42년 8월 3일·83책, 영조 4년 2월 9일 및 127책, 영조 30년 12월 10일.

<sup>87) 《</sup>湖南廳事例》.

<sup>88) 《</sup>備邊司謄錄》 29책, 현종 11년 4월 17일.

<sup>89)《</sup>嶺南廳事例》.

<sup>90) 《</sup>備邊司謄錄》 39책. 숙종 11년 3월 22일.

<sup>91) 《</sup>備邊司謄錄》 39책, 숙종 11년 3월 28일.

과군기가와 생산가간의 엄청난 차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당해 도의 감영에서 관내 각 읍의 월과군기를 방납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각 읍의 년간 月課價가 매우 높이 책정되어 있어 1년분의 월과가로도 2년분의 월과군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감영에 서는 값이 후한 것을 탐내어 각 읍의 월과군기를 모두 영문에서 방납하였 다.92) 이처럼 서울의 삼군문과 각 도의 감영들은 종래 민간 제조업자들이 장 악했던 각읍월과군기나 각읍월과총약환의 방납권을 탈취함으로써 영내 군사 들의 무기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한 셈이지만 한편으로 는 각 읍의 월과군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工匠이나 시설 및 원료나 연료 등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우선 당시 서울의 삼군문에서 균분 방납한 삼남의 각읍월과총약환 중 각 군문에 할당된 양만해도 상당량에 달하기 때 문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조총이 1,525병(5,083석 5두), 화약이 6,044근 (4,029석 5두), 연환이 457.250개(1,219석 5두)였다. 그러나 이 중 연환은 숙종 12 년부터 常平廳에 이관되었으므로 조총과 화약만으로 보면 각 군문은 대략 조총 508병(1,675석) · 화약 2,015근(1,343석)을 매년 생산해야 하는 셈이었고 거 기에다 군문소속 군사의 조총 · 화약 · 연환도 제조해야 하였다.

삼군문 중 가장 정군의 수가 적었던 훈련도감의 경우만 하여도 조총과 環 기를 매년 각각 300병씩 제조 또는 개조하여 군사들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 었다.<sup>93)</sup> 화약과 연환수는 기록되지 않았으나〈표 1〉의 조총·화약·연환 비 율이 1병:4근:200개란 사실을 고려할 때 매년 조총 300병을 新造한다면 화약 1,200근과 연환 60,000개를 제조해야 하였다. 따라서 삼남의 各邑月課銃 藥과 합치면 년간 조총 808병과 화약 3,215근을 제조하고 그 밖에 자체 조달 을 위한 연환 60,000개와 환도 300병을 생산해야 하는 셈이었다.

이상과 같이 17세기의 각 軍・營門에서는 자체 내의 수용 무기뿐 아니라 각 읍의 월과총약환까지 방납함으로써 매년 상당량의 무기를 정기적으로 제 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내에는 대규모의 제조장을 설치하였고 수백명의 工

<sup>92) 《</sup>備邊司謄錄》 45책, 숙종 17년 12월 19일.

<sup>93)《</sup>萬機要覽》軍政篇 2, 訓鍊都監 財用 鳥銃色.

匠과 助役軍을 모취하였으며 단기간에 우수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공정을 세분화한 분업적 협업형태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군문・영문의 무기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것에 소요되는 제조원료였던 鐵・硫黃・鉛 등의 광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각 군문・영문에서는 자체 소유의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1) 군수광산의 개발

17세기에 軍需鑛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효종대를 전후한 시기였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을 겪은 뒤 위정자들은 새삼 각읍월과군기법을 실시하였는데 각 읍은 자기 邑에 부과된 월과군기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기를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구입해야 하였다. 총약환의 제조 원료인 철·유황·연철이 각 읍마다 생산될 리 없고 또 제조 기술이 미숙한 각 읍의 공장들이 모두 조총을 자체 생산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총약환의 제품 또는 제조원료를 생산하여 각 읍에 판매하려는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출현하기 마련이고 전술한 바 서울의 부민들이 무기제조장을 개설하게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에 효종이 북벌정책을 표방하고 군비증강에 진력하자 서울의 각 군문과 지방의 감영・병영・수영에서도 군사훈련과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총과 화약・연환의 수요는 증가되고 그것의 생산이 활발해지면 서 제조원료인 철・유황・연철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자연히 군수 광물의 가 격은 등귀하고 또 고가로도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문·영문에서는 褒賞을 미끼로 給價買入하거나 광산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상을 받는 규정은 신분과 공적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관인들은 陞敍·加資하고94) 양민들에게는 給帖하며95) 천인은 면천하였다.96)

<sup>94)《</sup>光海君日記》권 143, 광해군 11년 8월 무진.

<sup>《</sup>顯宗改修實錄》권 10, 현종 5년 3월 을축.

그러고 광산을 개발한 자는 반드시 監官에 임명하였고<sup>97)</sup> 광산의 경영 성과에 따라 堂上·嘉善帖文을 주고 있었다.<sup>98)</sup> 군문·영문의 급가메입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군문·영문이 직접 상인에게 급가메입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군문·영문이 특정인에게 급가하면 특정인은 그 자금으로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하여 군문·영문에 바쳤다. 전자의 경우 상인들은 주로서울의 富商이었고 후자의 경우 특정인들은 서울의 상인들이 아닌「出身」등 군문·영문과 유관한 자들이었다. 전자는 주로 값비싼 일본의 유황을 수입 판매하였고 후자는 국내산의 광물을 구입 납품하였다.

서울의 상인들은 효종말~현종초에 걸친 10여 년간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의 유황을 수입 판매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국내 생산이 없던 유황의 수입 판매는 포상과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 정부나 군문의 책임자가 使行중의 倭語 譯官을 통해서 對馬島主 또는 倭商과유황수입을 약정토록 하고 서울의 부상들로 하여금 부산에 내려가 수매 반입하는 형태로 무역이 추진되었다. 유황 무역에 참여한 서울의 상인들로서는 서울의 부상 李應祥을 위시하여 林茂盛·方以恭·金德生·任之竹·皮起門 등이유명하였다. 이들은 군문의 관계 대신에게 요청하여 堂上·嘉善帖文 등을 받기도 하였고, 유황의 국내 판매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다.99)

한편 군문・영문이 특정인에게 급가매입하는 형태는 당시의 군문・영문이 철물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급가매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군문・영문은 철물을 무상 수취하고 있었다. 그것은 특정인들 자체가 당상・가선첩문 등의 賞典을 바라거나 관권에 의부하여 관직에 진출하고자한 자들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군문・영문에서 지급한 자금의 한도

<sup>95) 《</sup>顯宗實錄》 권 8, 현종 5년 윤6월 계유.

<sup>《</sup>備邊司謄錄》40책, 숙종 12년 9월 8일.

<sup>《</sup>承政院日記》320책, 숙종 13년 3월 25일 및 329책, 숙종 14년 6월 13일.

<sup>96) 《</sup>顯宗實錄》 권 10, 현종 6년 7월 계축.

<sup>97) 《</sup>備邊司謄錄》 36책, 숙종 8년 7월 4일 및 41책, 숙종 13년 4월 23일.

<sup>98) 《</sup>備邊司謄錄》 20책, 현종 원년 8월 24일.

<sup>99)</sup>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高麗大 出版部, 1973), 121~122쪽.

내에서 철물을 사서 바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재를 충당하거나 또는 官務를 빙자, 생산자를 협박하여 싼값으로 구입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 한 끝에 군문・영문에서 받았던 원금을 환납할 뿐 아니라 給價한 자금 몫의 철물 및 과외의 철물도 마련해 바쳤던 것이다.100) 이를테면 숙종 13년(1687) 에 李旭은 강화도의 해묵은 쌀 3.000석으로 만 1년만에 본래 받았던 쌀 3.000석을 돌려 바치고도 그 利息 米로 薪鐵 40,000근과 炭 6.000석을 사서 바쳤는데 동시에 강화도에다 倉基 640餘 間을 구입하여 직접 廳舍・庫舍 합 35간을 감독 조성하였다. 李忠伯은 금위영의 은자 5.000냥으로 만 1년만에 本銀을 환납했을 뿐 아니라 그 利息 銀으로 熟銅爐口 1,000坐를 만들어 바쳤 다.101) 그리고 出身 金南潤도 역시 금위영에서 受價한 뒤 本色을 환납하고도 철 10,000근을 납부하였다. 이처럼 군문·영문의 급가매입제에 편승하여 포 상을 노렸던 자들은 이 시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정부는 이들에게 일 일이 논상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결국 특정인들이 급가매입을 자원한 의 도가 포상만을 노린 데서 나왔고 또한 생산자를 수탈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 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포상을 미끼로 한 급가매입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어지 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숙종 14년 6월에 급가매입한 자에 대한 정부의 논상 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군문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논상케하는 이른바 軍門 論賞制로 격하시켰던 것이다.102)

한편 군문·영문의 포상을 미끼로 한 광산 개발정책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포상 규정은 광산을 발견 보고한 자를 監官에 임명하고 또성과에 따라 給帖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상 규정은 일반인의 상을 타려는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새로운 광산지가 개발되면 군문·영문은 주변의 민호로부터 인부들을 모취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군문에 의한 광산개발과 인력동원에는 당해 지방 수령들의 반발이 컸다. 광산지의 수령들은 후술하겠지만 屯稅·店稅·匠稅 및 軍役 烟戶雜役・還上 등 각종의 수취대상

<sup>100) 《</sup>備邊司謄錄》 40책, 숙종 12년 9월 8일.

<sup>101) 《</sup>承政院日記》 320책, 숙종 13년 3월 25일.

<sup>102) 《</sup>承政院日記》 329책, 숙종 14년 6월 13일.

을 대부분 상실하였으므로 군문의 광산개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문의 대신들은 감사·병사와 수령들이 광산개발을 방해하거나 또는 기존 광산을 침해하는 것을 엄정토록 요구하였다. 현종 4년(1663) 6월에는 硫黃鑛의 개발을 방해한 수령을,103) 숙종 원년 정월에는 鉛鑛의 개발을 방해하는 감사·병사를,104) 또 동년 5월에는 기존 철광을 침해하는 감사를 엄정하는 규정을 하달하였다.105) 이처럼 위에서는 포상으로 유혹하고 아래서는 영·읍 감사나 수령들의 방해가 심화된 풍토에서 광산개발은 계속추진되었다. 이 당시의 광산개발은 주로 각 지방의 의욕적인 자들에 의해서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광산지에대한 정보를 얻기 쉬웠고, 또 주변의 광산을 현지 답사하여 식견을 넓힐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17세기 중엽에 개발된 광산의 대개가 현지의 거주자들에 의해 발견 보고된 것인데,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광산을 개발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으로 밝혀진 것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지방민에 의한 광산개발 내역

開鑛者名	店 名	所管軍營門	典 據
李義立	蔚山 達川 鐵店	訓鍊都監	《求忠堂先生文集》(효종 8년 개발)
李源(前司評)	坡州 銀店	戶曹	《孝宗實錄》권 7, 2년 7월 을유
李嶬(出身)	江界(閻延・茂昌) 鉛鐵店	訓鍊都監	《孝宗實錄》권 7, 2년 7월 을사
辛景輝	昌原 黄店	備邊司	《備邊司謄錄》36책, 숙종 8년 7월 4일 (현종 15년 개발)
宋汝信	昌原 黃店	備邊司	《備邊司謄錄》33책, 숙종 3년 11월 14일
張信立	晉州 黃店	守禦廳	宋挺濂,《存養齋集》上,辭獻納兼言事疏 (숙종 3년)
張秋立	三嘉 鉛店	守禦廳	上 同
金南澄	長淵 鐵店	禁衛營	《承政院日記》, 숙종 31년 9월 13일 (숙종 19년 개발)
李克敬	原州 銅店	禁衛營	《承政院日記》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그러나 당시의 광산개발이 반드시 현지의 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sup>103) 《</sup>備邊司謄錄》 23책, 현종 4년 6월 17일.

<sup>104) 《</sup>備邊司謄錄》 31책, 숙종 원년 정월 20일.

<sup>105) 《</sup>備邊司謄錄》 31책, 숙종 원년 5월 27일.

것은 아니다. 蔚山人 李義立의 경우 23세의 약관으로 광산에 대한 보잘 것 없는 지식을 갖고 광맥을 탐사하기 위하여 伽倻山・金剛山・三角山・妙香山・九月山・白頭山・俗離山・太白山 등 전국의 이름난 산을 편력하기 16년간, 효종 8년(1657)에 蔚山의 達川 철광을 발견하고 또 동년에는 慶州 盤石谷에서 砒霜脈을 찾았으며 현종 10년(1669)에는 月城郡의 强湖峰硫黃脈을 발견하였다.106) 그리고 그의 아들 李克敬도 李義立의 硫黃 燔造法을 전수하고 수차에 걸쳐 각 군문의 硫黃監官으로 있었는데, 숙종 38년(1712)에는 금위영의 유황감관으로서 原州・提川의 접경지에서 유황을 채굴하던 중 동광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107)

이처럼 지방민들에 의하여 17세기에는 많은 軍需 광산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개발하여 군문·영문의 소관 광산으로 등록된 철·유황·鉛店을 일 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철점의 경우 훈련도감은 선조 27년(1594)에 이미 황해도 재령의 산철지에 鐵峴屯을 折受한 바 있지만,108) 효종 8년에는 울산에 달천철점을 설치하였고,109) 숙종 연간에는 충청도의 남포에도 철점을 설치하였다.110) 어영청은 현종 즉위년에 황해도 장연의 산철지에 汪濟屯을 설치하였으며,111) 14년에는 총융청도 역시 장연에 吹鐵牙兵을 두어 身鐵을 수취하였다.112) 수어청은 숙종 29년에 영월철광을 개발하였고113) 42년에는 砥平屯에 철점을 설치하였다.114) 금위영도 숙종 19년에 장연에 철점을 설치한 바 있고115) 41년에는

<sup>106)</sup> 李義立,《求忠堂先生文集》,三寶創得日記.

<sup>107) 《</sup>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sup>108) 《</sup>備邊司謄錄》 31책, 숙종 9년 5월 27일.

<sup>109) 《</sup>備邊司謄錄》 30책, 현종 원년 8월 24일. 《肅宗實錄》 권 10, 숙종 6년 12월 갑인.

<sup>110) 《</sup>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sup>111)《</sup>萬機要覽》軍政篇 3, 御營廳 諸屯.

<sup>112)《</sup>萬機要覽》軍政篇 3, 摠戎廳 募民養兵.

<sup>113) 《</sup>承政院日記》 409책, 숙종 29년 정월 10일.

<sup>114) 《</sup>承政院日記》 426책, 숙종 31년 9월 13일.

<sup>115) 《</sup>承政院日記》 488책, 숙종 41년 3월 3일.

재령의 산철지에 萬山屯을 절수하였다.116) 곧 서울의 군문들은 당시 산철지로 유명했던 황해도의 재령·장연 등지의 철광을 주로 흡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에서는 관내에 철점 장인들을 장인으로서 또는 吹鐵牙兵으로 편입하여 현물 또는 價布를 수취 충당하였으므로 별도의 철점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117)

硫黄店의 경우 현종 2년에 수어청이 처음으로 珍山 硫黄店을 개설함과 동시에 정부가 유황산지의 보고자에 대한 重賞法을 하달하였고,<sup>118)</sup> 이어 4년에는 광산개발을 방해하는 수령에게 제재를 가하여 광산개발을 촉진하였다.<sup>119)</sup> 곧 현종・숙종 연간에는 무려 23개 처가 개발되었는데 다음〈표 5〉와 같다.<sup>120)</sup>

〈표 5〉 군영문소관 유황 산지 및 개발 연대

設店 衙門	硫黃 産地 및 開發 年代
訓鍊都監	求禮(顯宗代), 慶州(肅宗代), 忠原 寶連山(肅宗 26年), 安陰(肅宗代)
摠 戎 廳	三陟(肅宗 8年)
守 禦 廳	珍山(顯宗 2年), 晉州智異山(顯宗 11年), 慶州·淸道 接境地(肅宗 8年)
御 營 廳	咸昌(顯宗4年),尚州(肅宗 4年)
禁 衛 營	江界(肅宗 13年), 原州・提川 接境地(肅宗 38年)
忠 淸 監 營	沃川(顯宗 4年), 西原(顯宗4年)・地名 未詳 3處(顯宗 4年)
慶尙左兵營	密陽(顯宗 9年),
備邊司	昌原(肅宗 8年) 刊湖峯下卷耳(現 慶北月城郡甘浦面權伊里)
顯宗 年間에 알려진 곳으로 채굴 여부 미상	京中昭格署洞(現 三淸洞) 端川・淸州

<sup>116) 《</sup>備邊司謄錄》 71책, 숙종 44년 10월 6일.

120) 《顯宗改修實錄》 권 5, 현종 2년 6월 경인 및 권 9, 현종 4년 8월 계묘.

《備邊司謄錄》 23책, 현종 4년 6월 17일 ; 27책, 현종 9년 4월 19일 ; 36책, 숙종 8년 5월 3일·7월 4일 ; 41책, 숙종 13년 4월 23일 ; 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顯宗實錄》 권 8, 현종 5년 2월 임술 및 권 18, 현종 11년 정월 신묘.

《守禦廳謄錄》, 숙종 14년 10월 4일 狀啓.

《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英祖實錄》권 43, 영조 13년 2월 임신.

<sup>117)《</sup>承政院日記》499책, 숙종 42년 12월 1일.

<sup>118) 《</sup>顯宗改修實錄》 권 5, 현종 2년 6월 경인.

<sup>119)</sup> 주 103) 참조.

鉛店의 경우 鉛鑛은 곧 銀鑛으로서 연・은은 동일한 광석에서 생산되었다. 조선 시대 연광 중 은의 함유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端川銀鑛이었지만 이곳의 연・은 비율도 약 80:1에 불과할 만큼 전국 연광의 은 함유량은 보잘것이 없었다.[21] 하지만 임란 이후 은이 국내외의 공・사거래에 일종의 화폐로서 통용되었고 또 鉛鐵이 조총의 鉛丸에 이용됨으로써 호조와 군문・영문은 경쟁적으로 연・은광산 개발을 서둘렀다.

그런데 임란 이후 효종대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년간에 결쳐 3~40여 곳의 광산이 개발되었지만 호조의 端川貢銀店을 제외하면 장기간 채굴된 곳도 생산량이 풍부한 곳도 없었다. 그것은 광산 자체의 탓만도 아니었다. 우선 官採일 경우 농민들의 부역노동에 의존하였고, 民採인 경우 부세가 과중하기도하였지만 그 보다는 어느 경우이든 광산 개발자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褒賞規定이 없었고 또 지방의 수령이 이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효종 2년 (1651)에는 設店收稅法을 발동하여 富商大賈를 유치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광산개발은 오히려 군문에서 監官制를 적용하고 監司・兵使들의 방해를 제재함으로써 촉진되었다.122)

여기에서 17세기에 걸쳐 군문・영문에 의해 개발된 연광의 수나 각 연점이 설치된 년도와 읍들을 일일이 상고할 수는 없다. 하지만 《萬機要覽》에 의하면 숙종 13년(1687)에 호조가 은점을 專管 收稅하게된 뒤부터 은점이 전국에 확대 설치되어 그 수가 68개 읍에 달했다고 한다.123) 이렇게 숙종 13년에 호조가 군문・영문 연점의 전관 수세권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군문・영문에서도 연철을 수취하기 위하여 호조에 빼앗겼던 연점의 일부를 되찾거나 新店을 개설하였다. 이 때문에 숙종 13년 이후에는 호조와 군문・영문이 설점수세권을 둘러싼 분쟁이 거듭되면서 연・은 광산이 개발되고 있었다. 그런데 숙종 26년에 호조판서였던 金構가 "각 도의 60~70개소에 달한銀店 중에서 成川・盈德銀店 등 광맥이 풍부한 곳 약간만을 남기고 모두 혁

<sup>121) 《</sup>燕山君日記》 권 51, 연산군 9년 11월 정축.

<sup>122)</sup> 柳承宙, 〈朝鮮後期 鑛業의 經營形態에 관한 一研究-17·8世紀 別將制下의 銀店을 中心으로-〉(《歷史教育》28, 1980), 82~85쪽.

<sup>123)《</sup>萬機要覽》財用篇 4, 金銀銅鉛.

파하였다"124)고 한 것을 미루어 볼 때《만기요람》의 68개 읍은 곧 이때의 호조 소관 은점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 은점은 대개가 군문·영문에서 개발한 鉛店들임에 틀림없으므로 17세기에 걸쳐 군문·영문에서 개발한 연점의 수도 60여 개소에 달했던 것이라 여겨진다.125)

#### (2) 점소의 운영재원

店所의 운영비는 군문・영문이 절수한 각종의 재원에서 염출되었다. 당시 군문・영문에서 절수했던 재원의 형태와 규모는 점소의 입지적 조건이나 店勢에 따라 상이하였다. 그러나 대개 군문・영문에서는 토지를 절수하는 것이 통례였고 그 밖에도 각종 재원들을 절수하고 있었다. 점소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절수한 최초의 사례는 훈련도감 소속 鐵峴屯의 경우를들 수 있다.126) 왜란 중 정부는 훈련도감의 경비를 마련키 위해 선조 26년 (1593)에 서울 근교의 閑荒地와 충청도내 40여 곳의 寺社位田을 모두 屯田으로 절급하고,127) 이듬해에는 훈련도감의 경비는 물론 특히 무기제조에 필요한 철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황해도 재령의 산철지인 鐵峴에도 둔전을절급한 것이다.128) 이 때 훈련도감의 각 둔전들은 낭청이 직접 관장토록 하였지만 각 처의 수많은 둔전들을 낭청이 모두 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곳곳마다 감관들을 임명 파견하고 있었다.129)

철현둔은 둔민을 단속하여 長壽山城을 수비해야 하는 군사적 임무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감관을 別將, 둔민 중의 丁男을 鎭軍으로 불렀고 따라서 철현 둔도 흔히 鐵峴鎭이라 불렀다. 철현진은 재령군에 속했지만 그 경계는 海州・平

<sup>124) 《</sup>備邊司謄錄》 52책, 숙종 28년 2월 13일.

<sup>125)</sup> 주 121) 및 柳承宙, 앞의 글(1980), 82~85쪽.

<sup>126) 《</sup>鐵峴鎭事例》訓鍊都監編, 순조 8년.

<sup>127)</sup> 車文燮, 앞의 책, 171~178쪽.

<sup>128)《</sup>鐵峴鎮事例》訓練都監編, 순조 8년.《萬機要覽》軍政篇 2, 訓鍊都監 諸鎮.《承政院日記》1,152책, 영조 34년 정월 13일.

<sup>129) 《</sup>宣祖實錄》 권 127, 선조 33년 7월 병인.

山과 연접하였고, 鎭의 定界는 門岩 彌勒山 大水磨嶺 白樂山을 잇는 둘레의 길이가 120리에 달하였다.130) 처음 절수한 둔전은 21결 37부 7속에 불과하였으나 점차로 개간지가 불어나 영조 33년(1757) 기록에는 총 52결 38부 13속에 달하였다.131) 그리고 鎭內에는 本鎭과 冠岩・孤山・白樂・水磨・旱栗・沙器・鷲峰・獅峴・靑羅・內蒜山・外蒜山・鹽水・南石 등 14개 마을이 들어 있었다.132) 곧 이들 둔민들로부터 수취하는 地稅가 점소의 운영비에 충당된 것이다.

鐵峴屯 例는 이후 각 철점에도 적용되었다. 숙종 19년(1693)에 금위영이 설치한 황해도 장연의 佛陀山 철점에도 정부가 점소의 둘레 30리 이내의 산야를 절급하고 있었다.133) 또한 금위영에서는 숙종 41년에도 항해도 재령에 철점을 개설한 뒤 43년에 은자 1,000냥으로 明善公主房의 면세 전답 60결을 매입하여 葛山屯을 설치하고 그곳의 屯稅穀으로 吹鐵 및 質鐵費에 충당하였다.134)

이러한 철점의 예와 같이 점소의 운영비를 염출토록 하기 위한 토지의 절수형태는 유황점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현종 11년(1670)에 수어청에서 설치한 진주 지리산 硫黃店의 경우 점소로부터 50리 이내에 위치한 三壯·矢川·雲谷·加西 등 4개 면에 걸친 화전을 절수하였고135) 동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의 稅를 경상감영에서 받아 정기적으로 이곳의 硫黃監官에게 이송하였으며, 또 지리산 유황점의 유황감관은 당시 영남의 중요한 수운로였던 낙동강에 貰船을 운행하여 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었다.136) 그리고 훈련도감의 忠原縣 寶連山 硫黃店도 화전을 절수하여 운영비를 염출하였고137) 비변사소관 창원 유황점은 인근의 臨海淵 捉漁所에서 漁稅를 징수하고 있었다.138)

<sup>130)《</sup>鐵峴鎮事例》訓鍊都監編, 순조 8년.

<sup>131) 《</sup>承政院日記》 1,151책, 영조 33년 12월 17일.

<sup>132)《</sup>鐵峴鎮事例》訓鍊都監編, 순조 8년.

<sup>133) 《</sup>承政院日記》 426책, 숙종 31년 9월 13일.

<sup>134) 《</sup>備邊司謄錄》 71책, 숙종 44년 10월 6일.

<sup>135) 《</sup>守禦廳謄錄》, 己巳 4월 12일.

<sup>136) 《</sup>承政院日記》 323책, 숙종 13년 8월 17일.

<sup>137) 《</sup>備邊司謄錄》 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sup>138) 《</sup>備邊司謄錄》 33책, 숙종 3년 11월 14일.

이 밖에도 군문・영문에서는 광산의 인부를 필요 이상으로 모집 등록하고 身役의 대가로 稅木이나139) 保米140) 등을 수취 충당하였다. 특히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에서는 관내의 大同米・大同木이나141) 강제로 수괄등록 시킨 工匠奉足들로부터 布를 징수하여 이에 충당하였다.142) 심지어는 赴番軍을 吹鐵役에 투입하였다.143)

그런데 연점의 경우는 별도였다. 이 경우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효종 2년 (1651)에 훈련도감이 出身 李羲의 요청을 받고 閻延・茂昌 등에 둔전을 설치하고 그곳의 연・철광산을 채굴하려 한 것도 역시 운영비의 염출을 위한 토지 절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144)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절급한 기사는 발견되지 않지만 주로 保人收布制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미 군문・영문의 연점들이 호조에 흡수된후인 숙종 39년의 「良役査定別單」을 살펴보면 훈련도감에는 願留軍・龍津鎮軍・採鉛軍・卜馬軍・武藝別監 등의 保人이 3,433명이나 남아 있던 것에서알 수 있다.145) 이 중 採鉛軍의 보인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군문의 鉛軍에게는 군역대신 物役을 지는 보인제가 적용되었던 것임을 짐작케 한다.

요컨대 군문・영문 監官制下의 모든 광산은 정부가 운영비를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은 광산의 소재지를 절급한 셈이었고, 나아가 店所 주변의 임야를 획급한 셈이었다. 군문・영문에서는 광산의 소재지를 매입한 적이 없이 점소 주변의 임야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각 점의 감관들은 그곳에서 점소의 시설이나 갱내의 동발 및 수없이 소모되는 연료용 목재들을 무상으로 採伐해 쓸 수가 있었다.146) 그리고 冶爐(용광로)와 風箱(풀무)

<sup>139) 《</sup>備邊司謄錄》 20책, 현종 원년 8월 24일·63책, 숙종 37년 12월 26일 및 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sup>140) 《</sup>承政院日記》 426책, 숙종 31년 9월 13일.

<sup>141) 《</sup>備邊司謄錄》 32책, 숙종 2년 2월 3일.

<sup>142) 《</sup>備邊司謄錄》 36책, 숙종 8년 9월 25일.

<sup>143) 《</sup>備邊司謄錄》 85책, 영조 5년 6월 22일.

<sup>144) 《</sup>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7월 을사.

<sup>145) 《</sup>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7월 8일.

<sup>146) 《</sup>備邊司謄錄》 41책, 숙종 13년 8월 13일.

및 각종의 채굴 제련용의 도구들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철점인 경우는 자체생산이 가능하였고 또 대부분의 점소에서는 운영비로 제작 구입했을 것이지만 유황점의 경우에는 점소 관내의 철물점이나 瓶缸店에서 현물 수세하여 사용토록 조처하고 있었다.147)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군문·영문의 鑛山은 정부가 각종 재원을 절급함으로써 자체 운영이 가능하였다.

### (3) 감관·공장·모군의 성격

왜란 중 훈련도감의 둔전에 감관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뒤 모든 군문·영문의 산업부문에 확대되었다. 鐵峴屯의 감관도 처음에는 둔전의 관리책임자로서 임명된 것이었고 당시로서는 鐵店을 위한 감관은 아니었다. 광산만을관장토록 감관이 임명된 예는 기록상 광해군 9년(1617)에 호조에서 出身 李瀛을 淸風銀店에 파견한 것이 최초였다.148) 청풍은점에 감관제를 적용한 뒤 호조에서는 端川銀店에도 종래의 採銀官制를 폐지하고 감관제를 적용하였다.149)

17세기 군문・영문 소관 광산의 감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개가 광산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의욕적인 지방민들로서 광맥을 찾은 보상으로 감관에 임명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직명 그대로 店役을 감독하는 곧 광산을 운영하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점소에 상주하고 있었다.[50] 그러나 감관은 왕명을 받은 정식 관원이 아니었고 각 군문・영문에서 파견한 임시직의 관원들이었다.[51]

감관들의 사회적 지위는 밝혀진 바 없으나 出身152)이나 品官153)들이 간혹 있을 뿐 모두가 일반 양민들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감관들은 모두 정부의 重賞 규정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그 중에는 自號를 「求忠堂」이라고 한 李義立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는 胡亂期를

<sup>147) 《</sup>承政院日記》 323책, 숙종 13년 8월 17일.

<sup>148) 《</sup>光海君日記》 권 111, 광해군 9년 정월 무인.

<sup>149)《</sup>增補文獻備考》160型, 財用考 7, 附金銀銅.

<sup>150) 《</sup>守禦廳謄錄》 무진 10월 13일.

<sup>151)</sup> 南九萬、《藥泉集》 4、 疏箚 五十度呈辭後乞免兼論採銀事箚.

<sup>152)</sup> 주 148) 참조.

<sup>153)</sup> 주 149) 참조.

살면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착과 구국의 일념으로 효종의 북벌정책에 호응하여 軍需 광산의 개발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였다. 그는 울산의 達川鐵鑛과 慶州의 砒霜鑛 및 强湖峰硫黃鑛 등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군수물품을 헌납하여 堂上帖 등 影職도 받았고,<sup>154)</sup> 현종 14년(1673)에는 肅川府使에 제수하였으나 이를 고사하고 대신 達川鐵鑛을 하사받은 인물이었다.<sup>155)</sup>

정부의 重賞令은 李義立과 같은 경우로 볼 때 당시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산개발에 투신케 하였을 것이고 동시에 감관들에게는 신분 상승욕을 자극하는 큰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료상에도 당시의 감관들에 대해서는 財利에 대한 탐학행위보다는 신분 상승을 위한 비행을 지탄하는 일이 많았다.[56] 그것은 지리산 유황점만 하더라도 감관들이 課 외의 증산을 꾀하기 위하여 정원 외의 장인이나 硫黃軍을 증모한다든지 운영비를 차용하고 인근 주민들의 蜂桶까지 수세하여 많은 別備品을 상납함으로써 그 곳의 감관으로 있었던 자들이 모두 堂上帖이나 嘉善帖 등을 취득했다는 것이다.[57] 결국 당시의 감관들은 수공업자 출신은 아니지만 광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서 점소에 상주하여 광산의 채굴ㆍ제련 작업을 감독했던 일종의 기술직 임시관원이었으며[58] 또한 영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적지위를 높이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각종 광산의 채굴·제련과정에서 기술부분을 담당했던 장인은 鑛種에 따라 철점은 冶匠, 鉛·銀店은 鉛·銀匠, 硫黃店은 黃匠으로 통칭되었지만 그밖에도 각 점소에는 광맥을 굴착하는 석공이나 동발 등을 제작하는 목수 등여러 장인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철점과 같이 숙련공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경우는 다르지만 연·은점이나 유황점 등 채굴·제련기술이 생소했던 광산들은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17세기 전반기의 연·은광

<sup>154)</sup> 주 98) 참조.

<sup>155)</sup> 李義立,《求忠堂先生文集》, 三寶創得日記.

<sup>156)</sup> 南九萬,《藥泉集》4, 疏箚 五十度呈辭後乞免兼論採銀事箚.

<sup>157) 《</sup>備邊司謄錄》 41책, 숙종 13년 8월 13일.

<sup>158)</sup> 李義立,《求忠堂先生文集》, 三寶創得日記. 《承政院日記》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산 개발시에는 반드시 端川銀鑛의 은장들을 초치하여 시굴하였는데159) 17세기 중엽에 개발되기 시작한 유황점에서는 우선 점소 주변의 紙匠이나 각종店의 장인들을 정발하였고,160) 煮黃法에 익숙한 감관들로부터 기술이 전습되어 갔다.161) 각 점소에 소속된 장인의 수는 광산의 종류나 그 규모에 따라다르게 마련이지만 대체로 10여 명 내지 20~30명에 달했던 것 같다. 그것은 연점에 관한 기록에 "감관들은 20~30명을 거느리거나 혹은 1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하였고,162) 유황점인 경우도 監官 李克敬은 10여 명을 대통하고있었다.163) 그리고 각 점소의 장인수는 모군수의 약 1/10정도였던 것 같다. 그것은 지리산 유황점의 모군수를 정부가 100명으로 줄이려 했을 때 수어청이 黄匠을 10명 정원으로 할 것을 요구한 사실로서도 점작된다.164)

각 店의 장인들에게는 반드시 糧料와 役價가 지불되었다. 철점의 경우도 둔전의 地稅가 吹鐵費에 충당되었고,165) 유황점의 경우도 전술한 각종의 재원에서 황장의 양료와 역가를 염출하였으며166) 부역하지 못한 모군의 身布를 징수하여 황장에게 지급키도 하였다.167) 그리고 연·은점에서도 생산물중에서 일정량을 급료로 지급하고 있었다.168) 그런데 양료와 역가 중 양료는 주로 쌀로 지급되어 料米로 불려져 왔고 역가도 지불하는 물종에 따라 價布 또는 工錢 등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각 점소의 장인들에 대한 양료와 역가의 지급액이 밝혀진 자료는 없다. 다만 인조 19년(1641) 현재 훈련도감의 조총·궁전·염초장인이 모두 합쳐 140여 명인데 매월 112석의 요미를 지급하고

<sup>159) 《</sup>光海君日記》 권 111, 광해군 9년 정월 무인.

<sup>160)</sup> 宋挺濂,《存養齋集》(上)〈辭獻納兼言事疏〉(丁巳).

<sup>161) 《</sup>顯宗實錄》 권 18, 현종 11년 정월 신묘.

<sup>162) 《</sup>承政院日記》 324책, 숙종 13년 9월 13일.

<sup>《</sup>備邊司謄錄》41책, 숙종 13년 9월 13일.

<sup>163) 《</sup>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sup>164) 《</sup>守禦廳謄錄》 무진 10월 4일 · 13일.

<sup>165) 《</sup>備邊司謄錄》 70책, 숙종 44년 10월 6일.

<sup>166) 《</sup>守禦廳謄錄》 무진 10월 4일.

<sup>167) 《</sup>備邊司謄錄》 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sup>168)《</sup>增補文獻備考》160科, 財用考 7, 附金銀銅.

있어<sup>169)</sup> 평균 한 사람에게 매월 12斗를 지급한 셈이다. 그러나 현종 10년 (1669)에 泰安의 安民倉 新設工事에 참여한 장인들, 곧 목수・석수・冶匠들에게는 균등하게 매월 1인당 요미 9두와 가포 2필이 지급되었는데<sup>170)</sup> 이 때의요미 9두는 숙종 10년(1684)에 강화도・南漢山城의 弓匠・冶匠・木手에게 지급한 요미액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sup>171)</sup> 따라서 동시대 각 점소의 장인들에게도 매월 요미 9두와 가포 2필 정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점소의 광산 노동자에 대한 호칭은 광산의 종별에 따라 달랐을 뿐 아니라 동일한 광산의 노동자들에게도 갖가지 별칭들이 붙여지고 있었다. 이를 테면 철점인 경우에는 吹鍊軍・吹鐵軍・吹鐵屯軍・吹鐵募軍・採鐵募軍 또는 納鐵軍으로 불리었고 다만 鐵峴鎭은 진군으로 불려졌다. 유황점은 유황군이지만 연점도 採鉛軍・鉛鐵軍・鉛軍 등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철・유황・은점의 광산 노동자를 통칭하여 募軍이라고 하였다.

모군의 모집 절차는 감관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거의 강제성을 띤 채 진행되었다. 鐵峴屯鐵店의 모군은 왜란 중에 둔전을 耕食하도록 모취한 流離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17세기초 중엽 이후의 모군들은 대개가 점소 주변에 정착해 있던 농민들이었다. 광산 소재지의 읍민만을 정발키도 하지만172) 광산이 郡界에 위치했을 때는 양 읍민을 동원하였다.173) 광산의 입지적 여건에 관계된 것이긴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인근의 장인들 곧 山店民들을 모취하려 하였고 일반 농민들 중에서도 터전이 잡히고 건장한 사람들을 정발하고 있었다.174)

군문・영문 소관 점소의 모군에게는 각종의 세역 부담이 면제되고 있었다. 모군들의 세역문제에 관한 조치로서 선례가 된 鐵峴鎭鐵店의 모군 곧 鎭軍 들의 경우 유사시 長壽山城의 수비 임무를 띤 군병으로서 군문의 철점에서 신역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속 읍의 각종 稅役이 면제되었다. 곧 鎭軍의

<sup>169) 《</sup>備邊司謄錄》 6책, 인조 19년 5월 2일.

<sup>170) 《</sup>備邊司謄錄》 28책, 현종 10년 2월 10일.

<sup>171) 《</sup>備邊司謄錄》 38책, 숙종 10년 3월 14일 · 17일.

<sup>172)</sup> 주 148) 참조.

<sup>173)</sup> 주 161) 참조.

<sup>174) 《</sup>承政院日記》 465책, 숙종 38년 정월 3일.

호적은 그가 입적한 읍에서 관장하였지만 그 외 진군에 대한 還上이나 烟戶 雜役 등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심하면 수령을 논죄하고 가벼우면 色吏 및 面任輩를 훈련도감으로 불러들여 엄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175)

철현진 철점의 진군에 대한 각종의 면역 조처들은 이후 각 군문・영문 소관 점소의 모군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철현진 철점의 모군이 훈련도감의 군병으로 등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각 군문・영문 소관 점소의 모군들도 모두 소속 군문・영문의 군병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양자는 모두 군역대신 점소에서 신역을 지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점은 다만 유사시의 군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가 없는가의 형식상의 문제였을 뿐이다. 따라서 연점의 연군들에게는 군역과 연호잡역이 면제되었으며176) 유황군에게도 군역과 戶役이 면제되고 있었다.177) 그리고 이들 모군은 군역 대신 신역으로서의 店役을 지고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身役價도 규정되어 있었다. 신역의 법정가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숙종 30년(1704) 釐整廳에서 재조정하였다.178) 이에 의하면 철점 모군의연간 신역철은 50근이었고179) 유황점 모군의 신역 유황은 5근이었다.180) 鉛店 모군의 身役鉛額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銀店軍의 身役銀이 5전이었던181) 사실과 더불어 당시의 철・유황・은・연의 시세를 비교할 때 鉛 5斤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82) 이러한 신역가의 규정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군문・영문이 소관 점소에서 수취할 광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備邊司謄錄》31책, 숙종 원년 5월 27일.

《承政院日記》703책, 영조 6년 3월 3일.

<sup>175) 《</sup>鐵峴鎭事例》訓鍊都監編, 순조 8년.

<sup>176) 《</sup>備邊司謄錄》 52책, 숙종 28년 2월 13일 및 141책, 영조 38년 3월 17일.

<sup>《</sup>承政院日記》529책, 경종 원년 2월 5일. 177) 주 107) 참조.

<sup>178) 《</sup>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sup>179) 《</sup>承政院日記》 671책, 영조 4년 9월 28일.

<sup>180) 《</sup>備邊司謄錄》 85책, 영조 5년 3월 18일.

<sup>181)《</sup>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2월 18일·6월 26일 및 141책, 영조 38년 3월 17일. 李恭遇,《換几翁漫錄》10, 暗行御史書啓.

<sup>182)</sup> 鐵・硫黄・銀의 斤 단위와 米價를 비교하여 年 5斤이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마련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군이 부역할 수 없을 경우 납부토록 할 할당액을 미리 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문·영문이 매년 점소에서 수취하는 광물량은 점소의 모군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또 모군들 중 부역하지 못한 사람이나 광맥이 단절되어 폐광된 점소의 모군들은 반드시 신역가로 부과된광물을 구입해 납부토록 하였다.

17세기 군문・영문의 각 점소에 종사하던 모군의 수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숙종 30년 釐整廳에서 작성한《各營釐整廳謄錄》을 근거로 그전후의 사정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鐵店의 경우 우선 五軍門의 모군에 대한 숙종 30년의 釐整定額을 간추려 보면 다음〈표 6〉과 같다.183)

〈표 6〉 숙종 30년의 각 군문 취철군 釐整定額

軍門別	吹鐵軍所屬處	從前吹鐵軍數	肅宗30년 釐整時의 增減數	釐整定數	
	載寧吹鐵店募軍	350명 兒弱 66명	100명, 兒弱 66명 減	250명 載寧 216명 平山 37명	
訓鍊都監	藍浦吹鐵店募軍	84명 兒弱 40명	34명, 兒弱 40명 減	藍浦 45명 50명 鴻山 3명 定山 2명	
御營廳	長淵吹鐵募軍	50명	正軍官保의 餘軍 250 명을 充數	300명	
禁衛營	載寧葛山屯吹鐵 募軍	250명	50명 增	300명	
摠 戎 廳	黄海道吹鐵牙兵	83명	3명 減	80명	
守 禦 廳	水鐵牙兵	225명	25명 減	200명	
	水原秃城山城 吹鐵牙兵	83명	3명 減	80명	

숙종 30년 이정청의 설치는 정부가 양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졌고 특히 각 군문·영문의 비정규 군병 중 과다한 인원을 삭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군문의 철점은 군문 자체내의 수용 무기및 三南月課鳥銃 등의 무기류 생산과 아울러 釜鼎이나 器皿類를 자체 조달

<sup>183) 《</sup>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sup>《</sup>備邊司謄錄》85책, 영조 5년 4월 20일.

하는 데 절실하였으므로 모군을 삭감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훈련도감과 총융청·수어청의 취철군을 약간 명씩 줄여 당해 읍의 수령에게 넘겼으나 어영청과 금위영은 오히려 상당수를 증원하여 삼군문은 모두 300명을 정원으로하였고, 수어청은 200명, 총융청은 80명을 정원으로 책정하였다. 결국 이때의5군문 소속 취철군의 釐整定額은 1,260명으로 종래의 취철군 1,125명과 兒弱106명보다 29명이 불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민간의 야철 수공업이성장하여 〈표 7〉의 수어청의 水鐵牙兵과 같이 이미 감관제하의 모군이 아닌민영 철점의 水鐵匠들로부터 현물 또는 匠布를 수취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있었다. 따라서 각 도의 營門에서 자체 경영하는 철점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철물 장인들로부터 현물 또는 米·布를 수취하였던 것이다.184)

〈표 7〉 숙종 30년·39년 각 군문·영문 유황군

	顯宗2年~肅宗30年	肅宗 30年 釐整定額	肅宗 39年 査正定額	設店地
	慶州 265명	慶州 159명		慶州
訓鍊都監	求禮 164명	求禮 91명	300명	求禮
	忠州 97명	忠州 50명		忠州
摠 戎 廳	389명	300명	300명	慶尙道
御營廳	172명(京畿柳灰軍 20명 포함)	300명	300명	慶尙道
禁 衛 營	710명	300명	300명	?
守 禦 廳	431명	300명	300명	晉州 智異山
慶尚監營・統營 ・左右兵營	?	?	각 300명	慶尙道
慶尚左水營・金	?	?	각 200명	慶尙道
井・鳥嶺山城				
慶尙左水營虞候 所屬 硫黃軍	?	?	革罷	慶尙道

硫黄店의 모군은 三南月課火藥價가 공인에게 이속된 시기였던 숙종 30년

<sup>184) 《</sup>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및 67책 숙종 40년 2월 7일.

과 39년(1713) 등 두번에 걸쳐 良役 査定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음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인원수가 삭감되었다.185)

5군문의 경우만 하여도 숙종 30년 이전의 硫黃軍數가 총 2,228명인데 整整定額은 1,500명으로 무려 728명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숙종 39년의 京外 군문・영문의 사정정액인 3,300명도 역시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을 것을 감안하면 숙종 30년 이전에는 慶尙左水營虞候 所屬 유황군을 합쳐 군문・영문의 유황 군수가 5,000명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鉛店의 모군은 숙종 30년의 이정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인원수 를 파악키가 어렵다. 이정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앞서 숙종 28년에 鉛銀店에 대한 호조의 專管收稅權이 확립되고 군문・영문의 모 든 연점과 모군들이 호조에 이속된 것이 계기가 된 듯 하다. 그것은 정부의 이정 목적이 군문・영문의 인원을 삭감하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호조의 연 군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86) 그런데 호조의 전관수세 이후 각 군문・영문에서 鉛丸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설한 몇몇 개소의 연점은 숙 종 39년의 사정대상이 되었다. 곧 금위영 소속 4개 연점의 연군을 400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62명을 삭감하였으며 慶尙左水營虞候 소속 연군을 모두 혁 파한 것이다.187) 여기에서 금위영 4개 연점의 연군을 400명으로 한정한 것은 각 점에 100명씩을 정원으로 한 조치였다. 물론 이 인원수는 숙종 30년 이전 각 연점의 평균 모군수에 못 미칠 것이 당연하나 우선 이를 기준으로 숙종 26년의 전국 연점 68개소에 합산해 보더라도 당시의 모군수가 6,8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숙종 30년경의 모군수는 5군문 소관 철점의 취철군 1,125명과 兒弱 106명, 유황점의 유황군 5,000여 명 그리고 연점의 연군 6,800여 명 등 약 13,00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sup>185) 《</sup>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sup>《</sup>備邊司謄錄》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sup>186) 《</sup>備邊司謄錄》 52책, 숙종 28년 6월 26일.

<sup>187) 《</sup>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 (4) 점소의 작업실태

17세기 군문・영문의 모든 광산은 군문・영문이 각 점소에 사사로이 파견한 監官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감관들은 점소의 운영비를 관장하고 점역을 감독하며 할당된 생산량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감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토록 하기 위하여 각 군문・영문에서는 書東・使令・庫直등을 각각 1명씩 배정하였다. 서리는 물품의 출납과 장인・모군 등에 관한사무를 처리하고 문서화하는 일을, 사령은 감관의 지시 사항이나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고직은 각종 물품의 보관 업무를 담당케 한 것으로 보인다. 188)

감관의 주관하에 실시된 점역은 대개 채광·제련·埋炭작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장인들이 각 부문의 작업 현장에서 모군들을 거느리고 이를 실시하였다. 광석의 굴착·운반 배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채광작업은 광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인과 갱도를 굴착하는 석공들이 주관하였다. 189) 그런데 17세기초에는 이미 석공들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한 암석의 발파 기술이 이용되고 있었다. 190) 이른바 鑛砲라고 불리었던 이 발파 도구가 언제 어느 광산에서처음으로 이용되었던 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왜란 중 화약무기가 널리사용되면서 연구되고 당시의 가장 큰 석광이던 端川銀鑛에서 이용된 것으로여겨진다. 191) 어떻든 광포의 이용은 조선 후기 채광기술상 획기적인 발전을가져온 것임에 틀림없다.

광석의 제련작업은 가장 기술을 요하는 부문이었고 흔히 治匠・黃匠・鉛匠(銀匠)으로 불리던 장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광석의 제련기술은 철・은 등의 금속 광물과 유황 등의 비금속 광물이 서로 달랐다. 철・연 등 금속 광물을 처음 제련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冶爐와 風箱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은 연광석을 제련함으로써 생산되었지만,192) 철은 生鐵과 熟鐵의 생산과정에 약

<sup>188)</sup> 柳承宙,〈朝鮮後期 軍需鑛工業의 發展〉(《史學志》3, 1969), 21쪽.

<sup>189) 《</sup>端川邑誌》山川.

<sup>《</sup>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6월 26일.

<sup>190) 《</sup>宣祖實錄》 권 203, 선조 39년 9월 무자.

<sup>191)</sup> 李羲準,《溪西野談》.

<sup>192) 《</sup>端川邑誌》山川.

간의 차이가 있었다. 생철은 水鐵 또는 무쇠라 불리었고, 숙철은 시우쇠 또는 正鐵이라고도 하였다. 생철이나 숙철을 제런하는 도구는 다 같은 야로와 풍상이었지만 야로와 풍상간에 연결된 風穴數에 차이가 있었다. 곧 생철 제 련용의 풍혈은 1개인데 비하여 숙철용은 9개였다. 이러한 구조상의 차이는 제조 과정에 있어서도 생철 제련이 숙철 제련보다 수배의 노력을 요하게 하였다. 생철・숙철을 같은 용적의 야로로 제련할 때 생산되는 양을 비교해 보면 "생철이 100근 생산된다면 숙철은 그 보다 다소 적었다"고 하고 "숙철 初出品을 薪鐵로 하여 1근을 打鍊하면 정철의 劣品 4냥이 생산된다"고 하였다.193) 생철은 주로 釜鼎이나 농기구를 제작하는 데 쓰여졌고 숙철(正鐵)은 槍劍 등 무기나 낫・칼 등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편 비금속 광물인 유황은 야로가 아닌 陶器에 넣어 제런하였고, 一周期만에 取出하였다. 194) 煮黃法에는 이밖에도 渣滓를 제거하는 去滓法과 악취를 제거하는 無臭法 등 일련의 기술적인 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195) 埋炭作業은 벌목 운반작업과 더불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각 작업장과 막사등의 건축 공사나 갱내의 동발 설비에도 목재가 필요하였지만 특히 제련시의 연료용의 목탄을 굽는 데는 엄청난 양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점소를 설치할 때는 광맥이 풍부한 곳도 중요했지만 점소 주변에 풍부한 산림이 있는 가도 크게 고려되었다.196)

이상과 같은 점소의 제반 작업과정에서 기술을 요하는 부문은 장인들이 담당하였고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모군들이 담당하게 마련이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장인과 모군의 비율은 1:10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당시 각 점소의 모군수는 점의 규모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철점의 모군은 〈표 6〉에서와 같이 적은 곳은 50명에서 많은 곳은 300여 명이었고, 유황점도 〈표 7〉에서와 같이 적은 곳은 150여 명에서 많은 곳은 400여명이었으며, 연점의 모군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평균 100명에 달하고 있

<sup>193)</sup>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권 60, 鉛鐵辨證說.

<sup>194)</sup>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附錄, 五洲書種博物考辨, 石硫黃類.

<sup>195)</sup> 南九萬,《藥泉集》 권 29, 嶺南雜錄.

<sup>196)</sup> 蔡濟恭,《樊岩集》, 論扶安蝟島銀鑛設店便否啓.

다. 각 점소의 이들 모군은 장인들과 더불어 당연히 채굴·제련·매탄 작업 장에 분속되고 분업에 기초한 협업형태로 店役을 지고 있었다.

〈柳承宙〉

#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 1) 금속화폐 시행론

15세기 후반에 유통수단으로서 널리 상용된 것은 布貨였다. 포화의 소재는 처음에 베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15세기 후반 이후로는 목화 재배의 보급과 면포의 상품성이 중시됨에 따라 면포가 베보다 더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포화는 五升布가 기준 포로 바로 正 1승은 80올이므로 5승포란 곧 400올로 짠 1필의 면포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3승포·4승포 등이 常布란 이름으로 널리 쓰이기도 하였다. 이것들은 5승포보다 훨씬 조악하게 짰으며, 추포 또는 악포라고 불리던 2승포는 옷감으로 전혀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성글게 짰다. 올 수가 성글었을 뿐만 아니라 길이도 30척 이하로 35척(1 필)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短布가 상포에는 많았다. 이렇게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만들어 진 것은 전적으로 화폐로서의 용도 때문이었다. 5승포보다는 훨씬 작은 소액 규모의 거래에 쓰기 위해 그러한 단포·추포가 출현한 것이다.1) 그러므로 소액 거래에 알맞는 추포, 그 위의 상포, 고액 거래에 상응한 정포·은 등이 나름대로의 화폐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16세기의 우리 나라화폐경제는 이와 같이 동전의 주조만 결여되었을 뿐 기본적인 조건에서는 금속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화폐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종 10년(1515) 6월에 동전 주조 문제가 두 차례에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宋在璇,〈16世紀 綿布의 貨幣機能〉(《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389 ~430쪽.

권인혁, 〈15세기 후반 저화제의 동요와 포화유통〉(《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 學論叢》상, 1992), 802~803쪽.

정포와 더불어 法貨로 채택된 楮貨를 다시 통용시키면서 동전을 주조하여함께 유통하자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경제적인 미숙 때문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문제 때문에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정치에서 정치의 실천을 장악한 것은 威臣들과 이에 결탁한 부류로서 이들은 군역과 공물·조세등의 부과·징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화폐나 마찬가지인 면포를 과도하게 거두어 축재하는 것이 하나의 풍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비리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비판 대상이 되었지만 인조 연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전 주조가결정되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의 우리 나라 경제는 농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농민도 시장에 팔 잉여물을 가질 정도로 농업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농촌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장시2)가 더욱 발달하여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원거리 교역의 비중이 크던 종래의 유통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화폐제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3)

16세기말에 발생된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화폐경제를 발달시킨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조선왕조 전기에 있어서 동전의 주조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의가 전개되었고 또 때로는 동전 통용을 시도해 보기도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선왕조 중기에 와서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동전 주조론이 더욱 빈번하게 대두되었고, 숙종때부터는 동전의 주조, 유통이 조선왕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되었다.

조선 왕조 중기에 본격적으로 동전 주조 문제가 거론된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임진왜란 중에 제기된 동전 주조 문제는 구원군으로 우리 나라에참전한 명나라의 楊鎬가 선조 31년(1598) 4월에 이르러 조선 왕조 조정에 대해萬曆通寶의 주조 통용을 제의함으로써 비롯되었다.4)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經理인 양호가 만력통보의 주조 통용을 제의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였다. 그 하나는 임진왜란의 발발과 더불어 국가 재정이 극도로 궁핍해짐을

<sup>2)</sup> 李景植、〈16世紀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韓國史研究》57, 1987), 87~91쪽.

<sup>3)</sup> 李泰鎭, 〈16세기 東아시아 경제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朝鮮儒教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102~104쪽.

<sup>4) 《</sup>宣祖實錄》 권 98, 선조 31년 4월 병진 · 임술.

보고 적자 재정을 보완하도록 하려는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비용 부담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궁핍을 동전의 발행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다른 하나는 명나라 군사의 군수품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다시중국은 화폐경제가 상당히 발달하였으므로 화폐경제에 익숙한 그가 전쟁을치르는 과정에서 군수품 조달 등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꼈으리라 추측된다.

양호에 의하면 동전 주조 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에서는 찬반론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국왕부터가 우리 나라의 토산과 풍속이 중국과 다르고 특히 주전 원료인 銅鐵이 부족하다고 하여 양호의 제의를 반대하였다.5)

그러던 중 선조 31년(1598) 6월 양호가 萬世德과 교체되어 귀국함으로써6 동전 주조에 대한 논의는 자연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중 명나라 양호에 의해 제의되었던 동전 주조 문제는 전란으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가혼란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주전 원료인 동철 공급의 곤란 등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란 중에 논의되었던 동전 주조론은 임진왜란후 생산력이 복구 발전되고 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시 대두되게 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비록 부분적이기는 했으나 은이 금속화폐로서 유통 보급 되었다. 구원군으로 과견된 명군이 제반 군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은을 반입 하여 사용함으로써 널리 보급되었다. 명나라에서는 은의 유통이 활발하였는 데 은은 명나라 이전인 金·宋·元 시기에도 화폐로 사용된 바 있었다. 그러 나 당시에는 규모가 큰 거래에만 사용되었고 明에 이르러서야 소액 거래에 도 사용되는 등 화폐로서의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7) 이처럼 명나라 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은이 명군에 의해 국내에 반입·유통된 것이다.8)

그러나 당시 은은 그 양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축재 수단으로 退藏됨으로써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널리 유통될 수 있는 동전 주조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sup>5) 《</sup>宣祖實錄》 권 98, 선조 31년 4월 병진·신유·임술·계해.

<sup>6) 《</sup>宣祖修正實錄》 권 32, 선조 21년 7월 갑신.

<sup>7)</sup> 崔虎鎮、《韓國貨幣小史》(瑞文堂, 1974), 84쪽,

<sup>8) 《</sup>宣祖實錄》 권 98. 선조 31년 4월 무인 · 임진.

17세기에 들어와 동전을 유통시키는 것은 국가의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기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선조 36년(1603) 5월에 特進官 成泳은 전란으로 궁핍해진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전의 주조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달에 호조와 고위 관료들이 서로 앞다투어 동전주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였고,9) 동년 6월에도 2품 이상 고위 관료들이 대궐에 모여 동전 주조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영의정 李德馨은 미곡과 포화 등 현물 화폐만을 통용하고 동전을 통용하지 않는 관계로 농업이 쇠퇴하여 국가 경제가 궁색해졌다는 이유를 들고 시급한 경비 지출과 뜻하지 않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전을 주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尹承勳과 우의정 柳永慶 등은 주전 원료인 동철이 부족하고 화폐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도 부족하여 오히려 동전 유통이 여러 폐단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동전 주조를 반대하였으며 국왕도 이를 반대하여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선조 연간에는 동전 주조 문제가 세 차례에 걸쳐 크게 논의되었으나 실천에는 옮겨지지 못하였다.

# 2) 금속화폐의 논의와 주조

#### (1) 인조대의 주전론과 동전 주조

선조대에 실현을 보지 못한 주전 논의는 인조대에 이르러 다시 대두되었다. 선조대의 주전 논의가 명군 楊鎬에 의해 비로소 제기되었듯이 인조대의 주전 논의는 당시 假島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 毛文龍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인조 원년(1623) 5월에 호조판서 李曙는 국왕에게 중국 화폐인 大明通寶를 수입함과 동시에 私鑄錢을 장려해 화폐를 널리 통용시키자고 건의한 바 있는데11) 이는 당시의 명장 모문룡이 조정에

<sup>9) 《</sup>宣祖實錄》 권 162, 선조 36년 5월 기사 · 무인.

<sup>10) 《</sup>宣祖實錄》 권 162, 선조 36년 6월 기유.

<sup>《</sup>宣祖修正實錄》권 37, 선조 36년 6월 병술.

<sup>11) 《</sup>仁祖實錄》 권 2, 인조 원년 5월 병신.

대해 은 3만냥을 내어놓고 양곡과 교역할 것을 독촉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모문룡이 직접적으로도 조정에 대하여 동전의 주조 통용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이렇게 인조대의 동전 주조 통용 문제가 외부에 의하여 제기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궁핍한 국가 재정의 타개가 주요 이유였다. 즉, 인조 3년(1625) 10월에 호조판서 金藎國은 궁핍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민생을 돕기 위해 동전 유통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건의하였다. 13) 호조에서도 동년 11월에 仁慶宮에 鑄錢廳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마침내 주전사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14) 그러나 당시에는 匠人의 수가 적고 기술이 미숙한데다가 주전 원료인동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인조 4년 6월에 이르기까지 겨우 600관의 동전을 주조하는 데 불과하였다. 15)

한편, 주조된 동전의 통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정은 인조 4년 8월에 형조와 한성부·사헌부 등의 徵贖을 동전으로 수납할 것을 결정하였다.16) 그러나 그것이 미처 실현되기 전에 인조 5년 정월에 정묘호란이 일어나 중단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1620년대에는 소량이나마 모처럼 동전을 주조하고 그 보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강구했으나 실제로는 그 유통은 보지 못하였다. 그 후 인조 6년 7월에 南以恭이 동전 통용을 건의했으나<sup>17)</sup> 국가 보유의 동전 수량이 적고 더 주조한다 해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정묘호란으로 중단되었던 인조대의 주전사업은 인조 11년 10월에 호조의 제의로 다시 재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한다는 건의

<sup>12) 《</sup>仁祖實錄》 권 7, 인조 2년 11월 신미. 《仁祖實錄》 권 8, 인조 3년 3월 기유.

<sup>13) 《</sup>仁祖實錄》 권 10, 인조 3년 10월 임인.

<sup>14)</sup> 元裕漢,〈官僚學者 金蓋國의 貨幣經濟論〉(《車文燮教授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 研究》, 1992), 238~242쪽.

<sup>15) 《</sup>仁祖實錄》 권 13, 인조 4년 윤6월 무오.

<sup>16)《</sup>仁祖實錄》권 14, 인조 4년 8월 신축.

<sup>17) 《</sup>仁祖實錄》 권 19, 인조 6년 7월 계유.

가<sup>18)</sup> 국왕의 허락을 받게 되자 인조 11년(1633) 11월에 상평청에서 관장하던 주전사업을 호조가 주관하고 중국 화폐인 만력통보의 모양을 본따 朝鮮通寶를 주조하였다. 이 때에 주조된 조선통보는 八分體의 글자로 바뀐 것으로 조선 왕조 전기의 그것과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미곡과 동전의 교환 비율은 동전 1문으로써 미곡 반되와 교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국 화폐의 유통을 금지시켰다.<sup>19)</sup>

한편 조정에서는 화폐 보급책의 일환으로 조선통보를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주조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고 주전 원료의 공급이 유리한 지방을 선정하여 鑄錢所를 분설, 동전을 주조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처음에는 안동·개성·대구 등지에 주전소가 분설되었고, 후에는 해주·수원 등지에도 주전소가 설치되어 동전을 주조하기에 이르렀다.20) 이 때 주목되는 점은 수원의 동전 주조가 국가의 물력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주전 즉 민간 물력에 의해 주조되었다는 점이다. 일찍이민간에 의한 사주조가 건의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수원의 경우가 처음인 것이다.

또한 조정에서는 각종 賦稅에 대해 동전 수납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화폐 유통을 촉진하였다. 즉 국가가 수납하는 미·포 중에 1/3~1/4을 동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삼사에서 죄인에게 거두는 贖錢과 각사의수수료도 동전으로 수납토록 하였다. 그러나 전세나 三手糧 경우에는 먼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동전을 갑자기 마련하여 바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 실시를 보류하였다. 21) 인조 12년 2월에는 선혜청에서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8말씩 거두어들이는 곡식에 대해서 1/10에 해당하는 8되를 동전으로 수납하기도 하였다. 22) 그러나 아직도 화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백성들은 동전 사용에 소극적이었고 여전히 미곡 및 포화 등 현물 화폐만을

<sup>18) 《</sup>仁祖實錄》 권 28, 인조 11년 10월 갑술.

<sup>19) 《</sup>仁祖實錄》 권 28, 인조 11년 11월 임진.

<sup>20)</sup> 元裕漢, 〈李朝 肅宗時代의 鑄錢에 대하여〉(《史學硏究》18, 1964), 633~634쪽.

<sup>21) 《</sup>仁祖實錄》권 28. 인조 11년 11월 임진.

<sup>22) 《</sup>仁祖實錄》 권 29, 인조 12년 2월 경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새로 주조된 조선통보 통용은 명목만 있을 뿐 실제로는 유통이 부진하였다. 따라서 인조 13년 7월에 상평청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동전 유통 방안을 건의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 내용은 모두 6개항으로 첫째, 市井人 중 원하는 자는 錢市의 설치를들어준다. 둘째, 각사·각아문의 징속과 수수료의 동전 수납을 이제부터 다시 착실하게 거행한다. 셋째, 동전 통용은 저자의 자잘한 물건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땔감·야채 등의 물건은 반드시 동전으로 매매하도록 5부와 평시서에 착실히 분부한다. 넷째, 京中과 지방에서 점포를 내려는 자는 그 소원을 들어준다. 다섯째, 경중에서 소를 매매할 때 오직 동전만을 사용하고만약 어겼을 때는 동전으로 징속한다. 여섯째, 경성에서 8도에 이르는 길 주변의 각 관아에서는 반드시 점포를 설치하여 동전을 유통하게 하며 수령은이를 착실하게 거행하도록 한다23)라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전 유통에 대한 국가의 노력은 인조 14년 12월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인조 22년 9월과 25년 12월에 金堉이 황해·평안도에 동전 유통을 건의했으나 국왕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sup>24)</sup>

### (2) 효종대의 화폐 논의와 동전 주조

효종 연간에는 淸錢의 수입 및 사주전의 허용 등 매우 이례적이며 과감한 동전 유통책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화폐정책을 주관하고 있었던 김육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 나라 화폐경제 발전에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김육의 화폐 유통책은 우선 청전의 수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효종 원년(1650)6월에 김육은 청나라에 陳慰使로 다녀오면서 자신의 노자로 청전 15만 문을수입하여 평양과 안주에 이를 유통시킬 것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25)이를 계기로 효종 2년 3월에 비변사의 요청으로 의주·안주·평양 등지에서

<sup>23) 《</sup>仁祖實錄》 권 31, 인조 13년 7월 임술.

<sup>24)</sup> 元裕漢,〈朝鮮後期의 金屬貨幣 流通政策〉(《東方學志》13, 延世大, 1972), 104쪽.

<sup>25)</sup> 元裕漢,〈潛谷 金堉의 貨幣經濟思想〉(《弘大論叢》11, 弘益大, 1979), 211쪽.

각각 1천여 석의 管餉穀을 내어 청전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점차 통용해 보아 시행할 만하면 더 많이 사오기로 국왕의 내락을 받았다.<sup>26)</sup>

이와 같이 김육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청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그 하나는 청전을 수입하여 시험해본 후 동전 통용의 가능성이 있으면 국내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통용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동전을 주조하는 것 보다 소요 경비가 절감될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다. 당시의 청전 수입 가격은 그 명목 가치와는 관계없이 重量으로 사들일 수 있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청전을 중량 단위로수입해 그것을 명목 가치대로 통용시키면 동전 주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할수가 있었다.27)

효종 원년에 김육이 수입한 청전 15만 문은 이를 은 값으로 환산한다면28) 대략 185냥에 불과한 소액이었으나 이것이 조선 왕조 중기의 최초의 청전수입이었으며 또 이를 계기로 하여 부분적이나마 일부 지역의 화폐 통용이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효종 2년(1651) 5월에 이르러 국왕이 먼저 황해도ㆍ평안도의 동전 통용 문제를 거론할 때 영의정 김육은 赴燕使行을 통한 청전 수입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국왕은 바로 국내에서의 주전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국왕의 태도는 곧 훈련도감의 동전 주조로 나타났고<sup>29)</sup> 아울러 인조대에 일시 논의된 바 있던 민간의 私錢을 허용하여 두 지역의 동전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였다. 특히사주전 문제는 동년 7월에 우의정 韓興一이 건의한 것으로서 좌의정 李時白의 지지로 국왕의 허락을 받게 된 것이다.<sup>30)</sup> 이 문제는 인조대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 폐단을 염려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효종 연간에는 김육을 비롯한 여러 신료들의 노력

<sup>26) 《</sup>孝宗實錄》 권 6, 효종 2년 3월 정해ㆍ경인.

<sup>27)</sup> 元裕漢,《朝鮮後期 貨幣史研究》(韓國研究院, 1975), 87~88\.

<sup>28) 《</sup>孝宗實錄》 권 6, 효종 2년 3월 경인.

<sup>29)《</sup>孝宗實錄》권 6, 효종 2년 5월 기축.《增補文獻備考》권 159, 財用考 6, 錢貨 효종 2년.

<sup>30) 《</sup>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7월 갑신.

으로 청전의 수입 통용과 사주전의 허용 등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었으나 관청과 민간의 주전사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민간에서의 동전 유통도 활발하지 못하여 효종 7년 9월에 동전 유통책이 중단되고 말았다.31) 그 이유 는 동전 유통에 적극적이었던 김육이 노쇠로 인하여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 고 효종도 동전 유통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32)

효종대 동전 유통책은 상평청이 효종 2년 10월에 마련한 동전 유통 방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로서 첫째, 쌀 1되의 값을 동전 3문으로 한다. 둘째, 각사의 收贖許通免賤·老職·空名帖의 동전 수납을 허용한다. 셋째, 시장의 모든 물건을 모두 동전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동전이 필요한 자는 본청에다 쌀을 바치고, 쌀이 필요한 자는 쌀을 바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상평청의 동전 유통책<sup>33)</sup>은 비교적 철저한 내용을 가진 것이었으나 당시의 사회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상평청의 동전 유통책은 화폐를 유통 보급함에 있어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을 일으켰다,<sup>34)</sup>

또한 상평청은 화폐 유통을 장려하는 수단의 하나로 각 읍의 백성들로 하여금 동전 50문씩을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行錢別將을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행전별장은 동전 통용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효종 5년 4월에 행전별장을 폐지하고 都事로 하여금 대신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행전별장이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효종 7년에도 경기도에서는 행전별장이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35)

효종 6년 12월에는 앞서의 동전 유통책을 고쳐 현실에 맞도록 하였다. 김육이 작성한 이 更定科條36)는 "첫째, 경기도 대동미 8말 중 1.2말을 동전으

<sup>31)</sup> 宋贊植, 《李朝의 貨幣》(한국일보사, 1975), 41~42쪽.

<sup>32)</sup> 元裕漢, 앞의 글(1972), 122쪽.

<sup>33) 《</sup>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10월 계유.

<sup>34)</sup> 崔虎鎭, 앞의 책, 91쪽.

<sup>35)</sup> 宋贊植, 앞의 책, 37~38쪽.

<sup>36) 《</sup>孝宗實錄》 권 15, 효종 6년 12월 계해.

로 수납한다. 둘째 경기·황해·평안도에 점포를 설치하여 경중과 지방의 동전 유통을 장려한다. 셋째, 호조·병조·한성부·장예원의 贖布는 절반을 동전으로 수납한다. 넷째, 각사의 공물 값 중 1/5, 각사의 雇役, 호조·병조에서 지급하는 料布의 1/3을 동전으로 지출한다. 다섯째, 은을 동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 은 1냥을 동전 600문으로 하고 쌀 1되는 동전 4문으로 하되 은 값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전 유통책은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후일을 기다려야 했다.

# 3) 화폐정책의 난맥과 폐단

#### (1) 숙종대의 동전 유통과 폐단

효종 7년(1656)에 동전 유통책이 중단된 지 22년만인 숙종 4년(1678)에 영의정 許積의 제의<sup>37)</sup>로 常平通寶가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조정에서는 호조·상평청·진휼청·정초청·어영청·사복시·훈련도감 등 중앙 7개 기관을 비롯하여 지방 관청에서도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에서 주조된 동전이 현지에서 수용·유통되지 못하고 중앙으로 대거 몰리게 됨에 따라 동전의 명목 가치가 절반 값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어영청이 보유하고 있던 면포 수백 동을 방출하여 동전의 명목 가치를 회복·유지하게 하는 한편, 지방에서의 동전 주조는 일체 못하게 하였다.<sup>38)</sup> 그러나 시급한 재정 수요와 군사비 충당이 거론됨에 따라 다시금 중앙 및 지방 관청에 주전을 허용하게 되었고 다만 주전 기간을 설정하여 동전 주조량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주전을 담당한 관청들이 제한량을 초과하여 주전하게 됨에 따라 동전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폭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숙종 15년에 이르러 주전을 중단하고 말았다.<sup>39)</sup>

그러나 중앙과 지방을 물론하고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던 주전사업은 숙종

<sup>37) 《</sup>備邊司謄錄》 34책, 숙종 4년 정월 4일.

<sup>38) 《</sup>肅宗實錄》권 9, 숙종 6년 2월 계해.

<sup>39) 《</sup>肅宗實錄》 권 20, 숙종 15년 3월 경오.

17년 10월에 勅需와 군사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성부의 동전 주조를 허락하게 되었다.<sup>40)</sup> 국가가 일단 중단시킨 주전사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하기는 했으나 동전의 惡鑄·濫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즉 鑄錢爐 數와 주전 기간을 제한하고 동전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악주와 濫鑄의 폐단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더욱이 숙종 19년 7월에는 국가의 동전 주조사업을 호조와 상평청에서 專管할 것을 결정하였다.(41) 중앙과 지방 여러 곳에서 주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폐단을 방지하고 貨權在上의 명분에 따라 화폐의 주조 권한을 중앙에서 독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숙종 20년 9월에 어영청에 동전 주조를 허용함으로써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숙종 21년, 전국에 걸친 엄청난 흉황으로 말미암아 지방 관청에까지 주전을 허락함으로써 국가에서 의도한 주전사업의 전관 방침은 좌절되기에 이르렀다.(42)

이 시기에 허용된 주전은 숙종 23년경에 모두 끝나는데 이 후 20년간은 동전 주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전사업이 중단되자 숙종 말년에 이르러서는 동전 유통량이 줄어들어 동전의 명목 가치가 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숙종 4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전론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숙종 43년에 평안도에서, 동 45년에는 제주도에서 각기 구휼을 위한 주전을 요청하였지만 주전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과다하고 奸弊가 예상된다는 이유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43)

#### (2) 주전 원료의 부족과 사주전

주전 원료인 銅의 공급 부족은 조선 중기의 화폐경제 발전을 저해한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따라서 당시의 화폐정책 담당자들은 동의 공급 문제가 가 장 큰 문제였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다. 동전 통용을 시도하던 인조·효

<sup>40) 《</sup>肅宗實錄》 권 23, 숙종 17년 10월 갑오.

<sup>41) 《</sup>備邊司謄錄》 47책, 숙종 19년 7월 4일.

<sup>42)</sup> 元裕漢, 앞의 책, 95~96쪽.

<sup>43)</sup> 元裕漢, 앞의 글(1964), 663~666쪽.

종 연간은 물론 동전 유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전개되던 영·정조 이후에 있어서도 정부의 가장 큰 고심은 주전 원료난의 해결이었고 상평통보를 주조하기 시작한 숙종 연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숙종대에 주전사업을 개시한 지 1년만인 숙종 5년(1679) 1월에 이미 동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전사업은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좌참찬 吳挺緯는 국왕에게 궁중에 저장된 동을 주전청에 보내자고 하였으며 국왕도 이를 받아들여 동 100근을 진휼청에 내려 보냈다.44)

그리고 동년 2월에는 비변사에서「鍮器禁斷事目」을 제정하기에<sup>45)</sup> 이르렀는데 이는 두 가지의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 하나는 시급한 주전 원료의 공급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동전 가치가 하락할 경우 동전을 녹여서유기를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유기금단사목의 주된 내용을보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식기·수저·촛대 등 1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유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궁중의 동 하사나 유기 사용의 제한 등으로 만성적인 주전 원료의 공급 부족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다. 즉, 이웃 나라로 부터 동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일본 동이 주전 원료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동의 수입량은 연간 3천여 칭(稱)에 달하고46) 있었으며 倭館에서의 동철 100근은 은 10냥이고 서울에서는 운반비 명목으로은 2냥이 더 붙었다.47) 또한 부연 사행을 통하여 중국의 동도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은 간헐적이었으며 수입량도 대단치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일본 동의수입은 꾸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량도 상당히 많았으므로 주전 원료의주된 공급원은 일본이었다.

한편, 국가에서는 국내 동광을 채굴하여 부족한 주전 원료를 보충하고자

<sup>44) 《</sup>肅宗實錄》 권 8, 숙종 5년 정월 임자.

<sup>45) 《</sup>備邊司謄錄》 35책, 숙종 5년 2월 4일.

<sup>46) 《</sup>備邊司謄錄》 47책, 숙종 19년 7월 4일.

<sup>47) 《</sup>備邊司謄錄》 57책, 숙종 32년 4월 29일.

하였다. 그러나 채광과 제련 기술의 부족, 채산성의 결여, 민폐 발생 등의 이유로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sup>(8)</sup>

국가의 주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모리를 꾀하는 私鑄行爲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동전의 사주는 官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주가 합법적인 동전 주조인데 반하여 사주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법에 저촉되는 커다란 범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통례였다. 조정에서는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주가 끼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 사주를 엄금하였다. 인조 11년(1633) 11월에 호조에서 제정한 동전 유통 방안을 보면 동전 사주자는 大明律에 따라 주전 기술자와 함께 교수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49)

그러나 동전 유통에 급급했던 17세기 전반기에 있어서는 동전 사주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규정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도 없었다. 사실상 이 시기에는 동전 유통에 대한 국가의 의욕이 강렬하여 동전 유통책수행에 필요한 동전을 얻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민간인에게 동전 사주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반적으로 동전을 사주하는 목적은 모리에 있고 그 모리욕은 동전의 명목 가치가 소재 가치 이상으로 통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다.50)

그러나 17세기 전반기의 동전 유통책은 주전 원료의 부족과 정책 운용의불합리성 등으로 말미암아 동전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때문에 동전의 명목 가치의 보장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 13년(1672) 12월에 동전 사주자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종래의 처벌 규정이폐기되기에 이르렀다.

17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동전이 법화로서 그 유통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 숙종 7년 3월에 전주 판관 沈揖이 동전 수천 관을 사주하여 모리하는 행위가 나타났고 관찰사가 진휼을 빌미로 하여 부당하게 동전을 주

<sup>48)</sup> 元裕漢, 앞의 글(1964), 652~654쪽.

<sup>49) 《</sup>仁祖實錄》 권 28, 인조 11년 11월 임진.

<sup>50)</sup> 宋贊植, 앞의 책, 156~173쪽.

조하거나 심지어는 前職 判書의 曾孫婦인 士族女가 사주 행위를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숙종대에는 사회적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주 행위를 자행하는 자가 많았고 그 장소도 깊은 산골이나 섬, 해상의 배가 이 용되어 저질러졌다.51)

그리하여 숙종 21년(1695)을 전후로 하여 사주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그 이전에도 사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했으나 주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의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것이 다. 그래서 종래에는 사주한 匠人은 사형, 그를 보조한 奉足은 정배로 다스리 던 것을 이 때에 와서는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숙종 22년에는 接主人도 사형 에 처하고, 사주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도 사형 아래의 벌을 적용하였다.52)

〈權仁赫〉

# 5. 중개무역의 성행

#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명무역

'冊封-朝貢體制'라는 틀에서나마 비교적 활발하게 유지되어 왔던 조선·중국·일본 사이의 무역은 16세기 초·중반 일본이 일으킨 '寧波의 亂'(1523)과 '乙卯倭變'(1544) 등을 계기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양자는 모두 중국·조선과의 무역 확대를 추구하던 일본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여 과거의 倭寇와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려던 와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을묘왜변 이후 조선 정부는 備邊司를 설치하는 등 일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무역에서도 엄격한 통제 조처를 취함으로써 朝日貿易은 쇠퇴 일로를 겪게 되었다. 明 역시 영파의 난을 계기

<sup>51)</sup> 元裕漢, 앞의 책, 133~134쪽.

<sup>52) 《</sup>備邊司謄錄》 49책, 숙종 21년 10월 25일. 《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 3월 병인.

로 일본과의 勘合貿易을 폐지하는 바람에 군사력을 이용하여 무역 확대를 도모했던 일본의 시도는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1) 임진왜란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중국·조선과 무역활동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지녔던 열세와 불리를 군사력을 이용하여 일거에 만회해 보려던 시도가 바로조선 침략, 나아가 중국 침략의 도모라는 굴절된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豊臣秀吉(토요토미 히데요시)은 중단된 감합무역을 군사적 도발을 통해 부활시키고자 했던 것이다.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과 일본 사이의 공무역은 물론 조선을 매개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면서 이루어졌던 중개무역은 일단 중단되었다. 적대적인 군사활동이 지속되는 와중에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시기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衞 이전에는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무역 구조가 생겨났다. 전란을 맞아 군량미와 군수 물자의 조달이 다급해졌던 조선의 요청을 明이 받아들임으로써 中江開市라는 공식적인 교역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또 명의 원군이 대규모로 조선에 참전하게 되면서 명의 상인들도 조선 각지로 진출하여 여러 가지 교역활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 (1) 중강개시를 통한 조명무역

中江開市는 임진왜란 발발 직후 부족한 양곡을 조달하려고 柳成龍의 발의로 조선이 明의 遼東都司에 요청하여 처음 시작되었다.3) 왜란 이전인 16세기전반에도 평안도 지역의 상인들 뿐 아니라 서울 상인들이 人蔘・銀・鎌器 등을 갖고 요동의 상인들과 활발한 교역을 벌였었는데,4) 중강개시는 전쟁이라

<sup>1)</sup> 임진왜란 이전까지 중국·조선·일본 사이의 무역의 추이에 대해서는 河字鳳,〈일 본과의 관계〉(《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및 金東哲,〈국제교역의 발 달과 마찰〉(《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1996)에 잘 정리되어 있다.

<sup>2)</sup> 무역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이 임진왜란을 도발한 것에 대해서는 李 泰鎭, 〈16세기 東아시아의 歷史的 狀況과 文化〉(《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315쪽 및 金東哲, 위의 글, 135~136쪽에 정리되어 있다.

<sup>3)</sup> 柳成龍、《西匡先生文集》 권 16、雜著〈中江開市〉.

<sup>4) 《</sup>中宗實錄》 권 45, 중종 17년 8월 계묘.

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왜란 전의 교역행위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란 발발 직후 遼左 지방에는 미곡이 풍부하여조선의 면포 1필로써 미곡 20와 이상을 살 수 있었다. 면포 1필로 겨우 皮穀 1과 밖에는 살 수 없을 만큼 곡가가 앙등했던 당시 조선의 형편에서 중강개시를 통한 양곡 조달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전쟁 기간 중에 평안도민 뿐 아니라 서울 사람들까지 중강에 뱃길로 왕래할 정도로활기를 띠었다. 5)이 같은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되어 1600년 무렵까지도 義州 일대의 평안도 사람들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정도가 되었다.6)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조선 조정은 "潛商들의 作弊를 없앤다"는 명분을 내세워 명에 대해 중강개시를 폐지하자고 요청했다.7) 하지만 명은 조선의 혁파 요구에 반발하여 개시를 계속하자고 移容해 왔다. 명의 입장에서는 개시를 통해 상인들에게서 거두는 商稅의 이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조 34년(1601) 조선이 개시를 혁파하자고 요청하면서 상인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명의 遼東都司는 사람을 보내 조선의 금지 때문에 상인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세금을 대신 義州府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8)

명의 입장에서 중강개시는 조선에 원병을 파견하면서부터 극도로 피폐해진 遼東民들의 경제적 상태를 다시 호전시키는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왜란시기 명군이 조선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었던 요동의 지역민들이 떠안았던 경제적 부담은 몹시 무거워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자식을 팔아서 생계를 도모하는 자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9) 그러나 중강개시를 통해 조선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요동민들의 빈궁했던 衣食 상태는 점차 개선되어 갔다. 더욱이요동도사는 중강에서 商稅를 징수해서 해마다 약 2만 냥 이상의 銀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개시를 없애려는 조선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sup>5)</sup> 柳成龍,《西匡先生文集》 권 16, 雜著〈中江開市〉.

<sup>6) 《</sup>宣祖實錄》 권 130, 선조 33년 10월 무자.

<sup>7) 《</sup>宣祖實錄》 권 125, 선조 33년 5월 정미.

<sup>8) 《</sup>宣祖實錄》 권 142, 선조 34년 10월 계미.

<sup>9) 《</sup>宣祖實錄》 권 109, 선조 32년 2월 계유.

조선도 市場을 명과 半分하여 의주부를 통해 상세를 거두고 있었지만 收稅 체계의 미비와 관리들의 부정 때문에 '한 웅큼 정도의 銀'밖에는 얻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조선은 개시를 통해 얻는 세입이 미미한 상태에서 오히려 奸細輩들을 통해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시장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다.10) 급기야 중강개시의 치폐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朝明 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광해군대까지 계속되었다.

### (2) 임진왜란 시기 중국 상인들의 조선 진출

임진왜란 시기 조선과 중국 사이의 무역활동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明 상인들의 활발한 조선 진출과 매매 활동이었다. 명에서는 당시 변방의 군대 주 둔지에서 필요한 미곡·면포·소금·농기구 등의 일용품이나 화약원료인 硫 黃 등을 전적으로 상인들을 통해 조달했는데 山西商人 등은 그 과정에서 물화를 운반·납품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sup>11)</sup> 따라서 수많은 명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명 상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대규모의 '소비시장'으로 각광을 받았고 왜란 당시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 상인들은 명 내지에서 군량을 조달하거나 조선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본토에서 수집한 곡물을 높은 가격으로 명군 진영에 납품하거나, 조선으로 군량을 운반할 때 곡가의 지역적 차이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일례로 명군 지휘부가 양곡을 현물로 조선으로 운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상인들은 折價(銀)만을 들고 와서 조선에서 미곡을 구입하여 납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익을 챙겼던 것이다.12)

명 상인들은 또한 조선까지 직접 왕래하면서 명군과 조선인들을 상대로 상업활동을 벌였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銀으로 받아 구매력을 갖춘 수만의 明軍이 주둔해 있던 조선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市場이었거니와 명군 지휘부 역시 그들을 적극적으로 조선으로 유치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은화가 제대

<sup>10)</sup> 中江開市에서의 收稅 문제와 그 置廢 논의에 대해서는 韓明基,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奎章閣》15, 서울大, 1992), 15~16쪽 참조.

<sup>11)</sup> 寺田隆信,《山西商人の研究》(京都大 東洋史研究會, 1972), 123~124쪽 참조.

<sup>12) 《</sup>宣祖實錄》 권 96, 선조 31년 정월 갑진.

로 유통되지 않고, 酒肉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조선의 상황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던 명군 지휘부가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려고 遼東商人 등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13) 이 같은 배경에서 조선에 들어온 명 상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선조 33년(1600) 무렵까지도그들이 서울과 지방에 퍼져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14) 명 상인들이 의주부터 부산까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물건들을 모두 판매하기 때문에 명군이 들여온 은의 대부분이 다시 명 상인들의 차지가 되어 조선에서 유출된다고 지적될 정도였다.15)

명 상인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조선인들에게 직접 중국산 물화를 판매하는 것이었다. 명 상인들은 조선인들을 상대로 곡물 등 생필품 뿐아니라 명주와 같은 사치품을 판매하였다. 특히 당시 조선 사람들이 靑藍布나 絹織物 등을 선호하는 것을 알고 이들 품목을 대량으로 반입하여 서울의鍾路 등지에 점포를 열고 판매하였다. 이렇게 명 상인들을 통해 견직물을 비롯한 각종 唐物이 유입되면서 "조금이라도 容儀를 꾸미는 자들은 전부 비단과 羊裘를 착용한다"고 지적될 정도로 전란 중 조선에서는 사치 풍조가 사회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16)

명 상인들은 이 밖에도 조선에서 새로운 利源이 될만한 것을 찾는 데 골몰하였다. 그들은 명군과 함께 조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은광을 찾아 개발을 시도하였고, 명으로 가져가면 이익이 될만한 물자를 수집하여 명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상인들 가운데는 조선 각지에서 막대한 양의무쇠(水鐵)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실어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명으로 가져가 江南 등지의 농기구 제작소에 판매하려는 목적이었다.17) 요컨대 왜란은 요동상인을 비롯한 중국 상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기회였다.

<sup>13)</sup> 왜란 시기 명 상인들의 활발한 진출과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韓明基, 〈明의 派 兵과 경제적 영향〉(《宣祖代 후반~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연구》, 서울大 博士學 位論文, 1997), 50~54쪽 참조.

<sup>14) 《</sup>宣祖實錄》 권 124, 선조 33년 4월 병신.

<sup>15) 《</sup>宣祖實錄》권 134, 선조 34년 2월 병자.

<sup>16)</sup> 尹國馨,《大東野乘》 권 55, 甲辰漫錄.

<sup>17)</sup> 韓明基, 앞의 책, 52~53쪽 참조.

임진왜란은 또한 명의 은화가 조선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은본위의 경제구조를 지녔던 명은 원정군에게 소요되는 군량과 군수물자를 은을 풀어 조달하였고, 장병들의 급여 역시 은으로 지급했기 때문이었다. 명이 왜란 시기 지출한 은의 총액은 약 900만 냥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가운데 대부분은 본토에서 지출되었지만 조선으로 유입된 양도 적지 않았다. 은의 유입은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조선 사람들은 명군이나명 상인들과의 잦은 거래를 통해 은의 화폐로서의 기능에 주목하게 되었고, 조선 각지에서 은을 찾으려는 열풍이 불기도 하였다. 실제 임진왜란 말기인선조 31년경에는 酒肉・두부・땔감 등의 물자를 거래할 때 은을 사용하는 것이 습속으로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었다.18) 이처럼 왜란 시기 명나라 은의 유입과 은을 이용한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조선은 명의 銀經濟圈으로 편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 2) 임진왜란의 종식과 중개무역의 재개

# (1) 기유약조의 체결과 조일교역의 재개

임진왜란이 계속되는 중에도 일본의 무역에 대한 욕구는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선조 26년 정월 평양전투 이후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본측이 제시한 요구 조건에도 명확히 나타난다. 선조 27년 6월, 풍신수길은 7개조의 강화 조건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두번째의 것이 "폐지된 勘合貿易을 복구하고 官船과 商船을 왕래시키자"는 것이었다. 특히 명에대해 풍신수길을 국왕으로 책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바로 감합무역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19) 그러나 명측은 '寧波의 亂' 등을 통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경험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풍신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책봉한 번국에게 허용하는 것이 상

<sup>18) 《</sup>宣祖實錄》 권 99, 선조 31년 4월 임술.

<sup>19)</sup> 佐島顯子,〈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って〉(《年譜 朝鮮學》, 九州大 朝鮮學研究 會, 1994), 26\.

례인 貢市만큼은 완강히 거부하려 하였다.20)

실제 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도 무역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었는지는 일본군이 장기간 주둔해 있던 경상우도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사람 들과 일본 상인들 사이에 잠상무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29년(1596) 8월, 都體察使 李元翼은 "조선 사람들 이 교역을 위해 倭營을 자유로이 드나들고, 倭商들 역시 끊이지 않고 왕래한 다"고 그 실상을 전한 바 있었다.<sup>21)</sup>

전쟁 중임에도 잠상 교역 등의 형태로 명맥이 이어졌던 조선과 일본 사이 의 교역은 왜란이 끝나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일본은 德川幕府가 들어 서면서부터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였다. 그 배후에는 조선과의 무역이 경제적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였던 對馬島의 필사적 인 중개가 있었다. 그들은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려는 의도에서 幕府將軍이 조선에 보내는 國書까지 위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조선 역시 '萬 世不共의 怨讐'인 일본 본국과 국교를 재개하는 것에는 미온적이었지만 대마 도에 대해서는 무역의 재개를 허락하면서 그들을 이른바 羈縻體制 속으로 편 입하려고 시도하였다.22) 조선은 일본에 대해 幕府將軍 명의의 국서를 보낼 것과 왜란 당시 宣陵과 靖陵을 파헤쳤던 범인을 묶어 보낼 것을 요구했는데 대마도의 술수를 통해 그 조건이 충족되자 선조 40년 덕천막부에 '回答兼刷 還使'라는 명칭의 사절을 보냄으로써 양국 사이에는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어 광해군 원년(1609) 이른바 己酉約條가 체결됨으로써 공식적인 교역도 재개되 었다. 이 시기 조선이 내키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일본과의 국교와 교역을 재 개한 것은 서북방에서 점증하고 있었던 後金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마도 를 羈縻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남쪽으로부터 의 위협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23)

<sup>20)</sup> 岡野昌子、〈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中山八郎教授頌壽記念明淸史論叢》,東京:燎原書店、1977)、148~154쪽 참조.

<sup>21) 《</sup>宣祖實錄》 권 78. 선조 29년 8월 계해.

<sup>22)</sup> 孫承喆, 〈국교회복과 교린체제의 부활〉(《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119~145쪽.

<sup>23)</sup> 孫承喆, 위의 책, 145~150쪽.

기유약조는 1609년 조선의 李趾完과 對馬島主 宗義智(소오 요시토시)가 체결한 통교 무역상의 제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양국 사이의 통교 관계의 기본이 되었던 조약이었다. 모두 12개조로 구성된 규약은 대마도로부터 조선에 도항하는 선박의 종류・隻數・渡航者・渡航證・접대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의 양국관계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무역선의 숫자였다. 기유약조 당시 무역선의 수는 20척으로 제한되었는데 이것은 癸亥約條(1443) 당시의 50척, 壬申約條(1512) 당시의 25척, 丁巳約條(1557) 당시의 30척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다. 또 왜선이 조선에 도항할 때 대마도주가 발행한 文引을 지참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광해군 3년 대마도로부터 기유약조 체결 이후 첫 歲 造船이 파견되는데 대마도는 이제 조일무역, 나아가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up>24)</sup>

### (2) 기유약조에 따른 조일무역의 내용25)

기유약조 이후 재개된 조일무역의 내용은 임진왜란 이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대마도주의 進上과 조선측의 回賜, 公貿易, 私貿易 등이 그것이었다.

기유약조에서 규정된 진상 품목으로는 胡椒・明礬・丹木 등 동남아시아산 물화와 일본산 공예품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에 대한 조선의 회사품으로는 인삼・虎皮・명주・白苧布・백목면・약재 등 12종에 달하였다. 이같이 회사 물품을 주는 것 이외에도 조선은 일본인들이 倭館에 머무를 때 각종 명목으 로 연회를 베풀어주고, 식량을 지급하였는데 전체적인 대차관계를 따져보면 조선측이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다.

閔德基,〈朝鮮後期 朝·日講和外 朝·明關係〉(《國史館論叢》12, 國史編纂委員會, 1990) 补圣,

<sup>24)</sup> 田代和生,〈日朝關係の再開と對馬〉(《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東京: 創文社, 1981)、44~51等.

孫承喆, 위의 책, 145~151쪽.

<sup>25)</sup> 본 절은 주로 田代和生, 위의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ㆍ기술하였다.

공무역이란 조선 정부가 목면을 풀어 일본 상인들로부터 구리와 주석・丹木 등을 구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미 광해군 즉위년 조선은 대마도와의 약정을 통해 공무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거니와 광해군 원년(1609) 규정된 바에 따르면 조선은 구리 100근을 목면 60필, 후추 1근을 목면 1필, 단목 3근을 목면 1필로써 구입하고 있었다. 광해군 5년 조선은 일본의 特送船 1척당 목면 151同의 교역을 허락하였다. 공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된 목면의양은 점증하여 인조 18년(1640)에는 1,000同까지 이르렀고 일본에서는 조선목면이 피복 원료로써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목면을 주고 구입한 구리・단목・후추 등의 물자를 星州에 있는 倭物庫와 花園倉 등에 보관했다가 민간의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는데,이 가운데 구리와 주석 등은銅錢의 원료나 銃筒과 火藥의 주조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사무역은 15세기이래 시작된 것으로 왜관에서 조선 상인과 대마도인 사이에 이루어진 사적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품목과 수량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위해 행해진 교역이었다. 이것은 일본측에 의해 '開市'로 지칭되기도 했는데 사무역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잠상의 횡행과 국가 기밀의 누설 등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다가 조선이 최종적으로 이를 허락한 것은 광해군 2년 3월이었다. 李德馨은 사무역을 금지하면 오히려 잠상을 중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일본 상인들의 上京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사무역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어 東萊府使 趙存性의 건의에 의해 월 6회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 3) 17세기 중·후반 중개무역의 성행과 그 영향

기유약조를 통해 대마도를 매개로 조선이 일본과 무역을 재개하면서 양국 사이의 무역은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양국 사이의 무역을 이제 사무역이 주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서 조선 상인들은 중국산 물자를 일본 상인들에게 전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또 조선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土産品이 임진 왜란 이전에는 주로 면포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 人蔘이 중요한 물화로서 취 급되었다.

조선 상인들은 북경에서 사온 비단・생사 그리고 조선산 인삼 등을 일본의 銀이나 鐵을 받고 매매하였다. 명에서 판매를 급하고 있던 蟒龍緞을 제외한 여타 직물의 거래는 제한이 없어서 상인들은 紅黃色・紬布 등 각종 직물들을 전매하였다. 특히 광해군 4년의 기록에 따르면 의주나 동래를 거점으로활약하던 잠상들이 중국의 주단 등을 왜인에게 중개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왜란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중국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중국산 물화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조선 상인들이 전매를 통해 거두어들이는 이익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일본 상인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의육로를 통해 직접 요동이나 북경 등지의 開市處로 진출하는 것을 열망했으나 그것은 조선에 의해 거부되었다.26) 어떻든 왜상들은 조선 상인들에게서 넘겨받은 물화만 일본에 가져가도 많은 이윤이 남았으므로 日本銀을 갖고중국에 들어간 조선 상인들이 중국 물화를 사서 돌아올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해군 10년경 왜관에 머무는 일본인들이 1,000명에 이르렀고, 인조 2년에는 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7세기초 가시화되었던 明淸交替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개무역의 중심지로서 조선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조선은 일찍부터 여진족에 곡물·면포·소금·농기구·耕牛 등을 공급해 왔거니와 명과의 전쟁 때문에 對中貿易이중단되어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화를 조달하는 데 애로를 겪었던 後金은물화의 공급자로서 조선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더욱이 확대된 영토를 기반으로 유목집단에서 농경국가로 전환을 도모하던 시점에서 17세기 小冰期의 도래를 맞아 잦은 자연 재해와 그에 따른 기근과 농산물의 부족에 시달리던 후금은 남하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27)

인조 5년의 정묘호란은 바로 이러한 후금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전쟁이었다. 조선에서 歲幣 명목으로 곡물과 면포 등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후금의 침략군이 철수했거니와 정묘호란이 종식된 직후인 인조 6년 조선인 포로의 쇄

<sup>26) 《</sup>光海君日記》권 53, 광해군 4년 5월 신유.

<sup>27)</sup> 李泰鎭,〈前近代 韓 中 交易史의 虛와 實〉(《震檀學報》78, 1994), 179쪽.

환을 위해 열린 開市에서 후금 측은 조선에게 중국산 견직물과 면포 등을 공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다.<sup>28)</sup> 인조 11년(1633)경에 이르면 조선은 椵島를 매개로 명에 대해서 뿐 아니라, 남으로는 일본, 북으로는 후금에 대해서도 물화를 공급하므로 힘이 부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sup>29)</sup> 이것은 이제 조선이 동북아 3국 사이에서 물화 교역의 매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淸이 중원을 장악하여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던 17세기 후반부터 중국과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거점으로서 조선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분기점은 현종 9년(1668)이었다. 본래「寧波의 亂」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직접적인 무역은 정지되었지만 이후에도 제3국 상인을 매개로 간접 무역은 지속되었다. 선조 25년(1592)부터는 이른바 朱印船이라 불리는 선박들이일본에서 출항하여 인조 13년까지 모두 356척이 마닐라・臺灣・캄보디아・샴 등지의 항구에서 중국 선박들과 무역을 벌였다. 당시 무역 허가증인 朱印狀을 얻은 상인들은 일본 상인과 중국 상인 이외에도 영국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또 포르투갈 상인과 화란 상인들 역시 각각 마카오와 대만을근거지로 하여 17세기 초반 일본의 長崎(나가사키)를 왕래하면서 무역에 종사하였다.30) 이들 상인들을 통해 중국산 견직물과 生絲・도자기 등이 일본에반입되었고 일본은 그 결제대금으로서 은을 지급하였다. 비록 16세기 후반부터 은 생산량이 폭증했던 일본이었지만 이 같은 중국산 물화들을 수입하면서 너무 많은 은이 유출되자 덕천막부는 현종 9년부터 장기로부터의 은 수출을 금지했던 것이다.

장기를 통한 日本銀의 수출이 중단된 이후 조선의 왜관은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더욱 각광을 받게되었다. 이제 대마도와 조선을 통한 무역로는 일본이 중국산 물화를 수입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중국산 비단과 원사, 그리고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면서 일본은 은을 수출하였는데 그 양은 숙

<sup>28)</sup> 金鍾圓, 〈정묘호란〉(《한국사》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253쪽.

<sup>29) 《</sup>仁祖實錄》 권 28, 인조 11년 12월 갑술.

종 12년(1686)의 10여 톤을 정점으로 숙종 10년부터 36년까지 총 188톤, 연평균 약 7톤에 이르렀다. 숙종 12년 중국 상선들이 장기로부터 겨우 2톤 정도의 은을 실어갔던 것을 고려하면<sup>31)</sup> 中日貿易의 중개 거점으로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중개무역을 통한 일본은의 유입은 조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이 높아지자 17세기초 이래 잠상배들이 이를 노리고 대거 東萊 등지로 몰려들었다. 동래의 왜관은 일본은의 집결지이자 조선이나 중국으로 유통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가 기밀의 유출을 우려한 조정은 누차 잠상을 단속하라는 禁令을 내렸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오 히려 단속의 책임을 맡은 동래부사가 잠상들과 연결되어 그들을 옹호하는 형편이었다. 다음으로 은의 집합처로서 왜관의 존재는 조선 조정에 경제적으 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17세기 초반 왜관과의 교역과 收稅를 통해 획득한 은은 조선이 明使를 접대하고, 궁궐을 영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 되었던 것이다. 특히 명사들의 과도한 은 요구 때문에 전전긍긍할 무렵에는 왜관에서 그것을 대여받거나, 광해군 10년(1619)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치는 원병을 요동으로 보낼 때에는 군량의 운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곡을 왜관 에 보내 은으로 바꾼 다음 그것을 요동에서 다시 곡물로 바꾸는 방식을 강 구하기도 하였다. 인조대에는 조선 상인 가운데 왜관과의 잠상무역을 통해 7 만냥의 은자를 축적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였다.32)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조선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거의 독점하게 된 현종 9년 이후로는 그 경제적 이득이 더욱 컸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17세기 후 반 이른바 八包制가 실시되면서 조선의 譯官과 富商大賈들은 일본산 은을 갖고 연경에 가서 白絲와 紬緞 등을 수입하고, 그것들을 다시 왜관에 수출하 였다. 현종 11년의 경우, 조선 상인들은 白絲 100근을 은 60냥에 수입하여

<sup>31)</sup> Kazui Tashiro, Exports of Japan's Silver to China via Korea and Changes in the Tokugawa Monetary System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Precious Metals, Coinage and the Changes of Monetary Structures in Latin-America, Europe and Asia,*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100~102等 참조.

<sup>32)</sup> 韓明基, 앞의 글, 33~34쪽.

왜관에 전매할 때에는 160냥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 조선 상인들은 중개무역을 통해 약 2.7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33) 또 이들 譯商輩들에게 편승하여 재부를 축적해 갔던 중외의 관청들은 역상배들에게 公用銀을 대여하여 利殖을 도모하기도 하였다.34) 이 같은 추세에서 중개무역은 상업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였고, 17세기초 실시된 大同法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맞물려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 경제가 회복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35)

17세기 중반 이후 본 궤도에 오른 중개무역을 통해 조선이 이익을 보았던 추세는 18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점차 은의 대량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은화의 순도를 낮춘 惡貨를 주조하는 등 통제정책을 취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더욱이 1730년대 덕천막부가 장기로부터 중국의 남경에 이르는 직접 무역로를 개설하면서부터 대마도와 동래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은 결정적인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36) 자연히 일본산 은화의 유입은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동래에서 거래하는 물화는 미곡을 비롯한 소소한 생필품 몇 가지로 위축되었다. 요컨대 왜란 이후 100여 년 동안 조선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던 중개무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韓明基〉

<sup>33)</sup> 柳承宙,〈朝鮮後期 朝‧清 貿易小考〉(《國史館論叢》30, 國史編纂委員會, 1991), 229쪽.

<sup>34)</sup> 柳承宙, 위의 글, 226쪽.

<sup>35)</sup> 李泰鎮, 〈國際貿易의 성행〉(《韓國史市民講座》9, 一潮閣, 1991), 79~80쪽.

<sup>36)</sup> Kazui Tashiro, 앞의 글, 108~109쪽.

# 찾 아 보 기

[¬]

가경전 加耕田 417 가공언 소설 賈公彦 疏說 104 가내수공업 家內手工業 446 가도 椵島 584, 604 《가례》《家禮》 101, 112 《가례원류》《家禮源流》 166, 168, 178 가삼 家蔘 446 가선첩 嘉善帖 572 가용 加用 533 가작경영 家作經營 450 가전별초 駕前別抄 250 가정 可定 527 가포 價布 573 가호노동력 家戶勞動力 450 가후금군 駕後禁軍 276 《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整廳謄錄》 576 각읍월과군기법 各邑月課軍器法 549 ~551 각읍월과자초법 各邑月課煮哨法 548 각읍월과조총가 各邑月課鳥銃價 559 각읍월과총약환법 各邑月課銃藥丸法 547, 552 각진월과궁전법 各鎭月課弓箭法 548 간빙기 間氷期 309 간종 間種 435 갈산둔 葛山屯 568 245, 263, 571, 579 감관 監官 감목관 監牧官 545 감병사 監兵使 294

감사도계진상 監司到界進上

감합무역 勘合貿易 595, 599

507

갑술별시방 甲戌別試榜 46 갑술양전 甲戌量田 415, 418, 424, 425, 463 갑술환국 甲戌換局 148, 160, 163, 177, 178, 286, 287 갑인예송 甲寅禮訟 114 갑인환국 甲寅換局 148, 153, 155, 176, 178 강빈 姜嬪 89, 283 강사상 姜士尚 24. 44 강석기 姜碩期 86.89 강익문 姜翼文 70 강차지 江次知 531 강학소 講學所 140 강홍립 姜弘立 280 강화기인포 江華其人布 505 강희맹 姜希孟 개병제 皆兵制 380 개시 開市 337, 519 거재법 去滓法 580 건경직파법 乾耕直播法 431 건극론 建極論 164 건앙법 乾秧法 433 격탁양청 激濁揚淸 62 결부법 結負法 416 결부제 結負制 431 결역 結役 394 결포제 結布制 388~390, 400 겸관별후부 兼管別後部 경별과진 兼別破陣 겸사복 兼司僕 270, 274, 276 겸영장 兼營將 294 겸과총 兼把摠 250, 254 경고차지 京庫次知 531 《경국대전》《經國大典》 102, 106,

107, 111, 115, 116, 406, 411, 413, 416, 계왕 桂王 94 424, 464, 470 계운궁 啓運宮 78 경군문 京軍門 계해약조 癸亥約條 267 601 경기군 京畿軍 261 고가 雇價 447 경기전 慶基殿 고공 雇工 507 349, 443 경기청 京畿廳 고립제 雇立制 506 8, 397 경리청 經理廳 258 고신 告身 544 경모군 京募軍 401 고역 雇役 590 경상청 慶尚廳 고역제 雇役制 506 326 경세 經稅 고지노동 雇只勞動 384 443 경시 京市 고직 庫直 518, 528 513, 579 공가 貢價 382, 529, 530 경신대기근 庚辛大饑饉 366, 370 경신대출척 庚申大黜陟 285 공계 貢契 10, 531 경신환국 庚申換局 121, 155, 157, 160, 공계인 貢契人 532 177, 178, 286 공납 貢納 7, 346, 518, 532 경안령 요 慶安令 瑤 56 공납제 貢納制 479~483, 497, 515~ 《경연일기》《經筵日記》 517, 526~528, 534 48 경염전 京鹽廛 공론 公論 521 72, 92, 209, 217, 231, 234, 경영 京營 505 237, 239 경오식년방 庚午式年榜 공론정치 公論政治 5,38,123,217,218, 46 경원대군 慶原大君 231, 239 14 경유사 京有司 146 공룡 소멸설 恐龍 消滅說 316 공릉장 恭陵場 경인환국 庚寅換局 149, 164, 177 539 경자양전 庚子量田 8,421,423,427~ 공명첩 空名帖 589 430 공무역 公貿易 601 경작권 耕作權 462 공물 貢物 517, 518, 528, 532 경장의 京掌議 146 공물방납 頁物防納 518 공물・진상 관련 요역 貢物・進上 關聯 경재임제도 京齋任制度 146 경정과조 更定科條 381 589 徭役 경종법 耕種法 433 공법 貢法 342, 417 경주인 京主人 382, 505, 529 공북문 拱北門 247, 256 경진사진 庚辰査陳 422 공삼가 貢蔘價 501 경차관 敬差官 344 《공선정례》《貢膳定例》 501 경표하군 京標下軍 251 공수전 公須田 492 경희궁 慶熙宮 공시 貢市 600 공시당상 頁市堂上 198 계 契 257 계립군 유 桂林君 瑠 43 공신 功臣 95, 174, 221 계묘양안 癸卯量案 427 공안 貢案 483, 486, 516, 527, 528 계묘양전 癸卯量田 418, 423 공액 貢額 527 계사 計士 공용은 公用銀 513 606

공인 貢人 484, 488, 504, 505, 514, 528, 구언 求言 237, 338 529, 531, 533, 534 구인기 具仁堅 262 공인권 貢人權 구인후 具仁垕 72 531 구충당 求忠堂 공잉색 公剩色 513 571 공작미 公作米 구황절목 救荒節目 338 공장 工匠 구황정책 救荒政策 519 324, 341 공장성적제 工匠成籍制 522 《구황촬요》《救荒撮要》 공전 工錢 573 국둔전 國屯田 공조 선자 工曹 扇子 국별장 局別將 245 507 공조 칠전 工曹 漆田 504 국용전 國用田 464 공폐 貢弊 534 국제기년복 國制朞年服 102, 113 공해전 公廨田 464 국제기년설 國制朞年說 106, 111 공호충정사업 空戶充定事業 368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00, 102 과전 科田 452 국출신 局出身 245 과전법 科田法 447, 464 군관 軍官 245, 263, 269, 273 곽순 郭珣 13 군권 軍權 284 곽재우 郭再祐 71 군기도감 軍器都監 556 관동 방물계 關東 方物契 군기시 軍器寺 504, 547, 556 506 군령권 軍令權 관동 삼계 關東 蔘契 506 282 관둔전 官屯田 464, 492 군문논상제 軍門論賞制 563 관료지주 官僚地主 449 군수노보 軍需奴保 269 관리사 管理使 군수부서 軍需部署 285 541 관무역 官貿易 519 군역 물납세화 軍役 物納稅化 380 관보 官保 249 군역변통 軍役變通 관봉 官封 347 군역제도 軍役制度 관상감 觀象監 504 군자감 軍資監 342 관향 모곡 管餉 耗穀 354 군자당 君子黨 73, 77, 164, 175 광포 鑛砲 579 군자붕당설 君子朋黨說 광흥창 廣興倉 342 군자주부 軍資主簿 294 교련관 敎鍊官 250, 251, 254, 263, 269, 군자창 軍資倉 356 275 군적 軍籍 367, 368 교사 敎師 251 군제변통절목 軍制變通節目 252 교하 交河 군포 軍布 362 539 구관당상 句管堂上 190, 195 군포수직군 軍鋪守直軍 구광 具宏 72 군향구관 軍餉句管 195 구례 求禮 537 군호 軍號 259 구법당 舊法黨 궁방전 宮房田 452, 453, 455, 459, 461, 61 구봉령 具鳳齡 38, 45 462, 492 구수병축론 俱收並蓄論 62 궁장 弓匠 574 구양수 歐陽修 궁장파수 宮墻把守 61, 76 246

금송 禁松 권대운 權大運 97, 155, 157, 160~162, 246, 260 355 《금양잡록》《衿陽雜錄》 440 권대임 權大任 97 금위대장 禁衛大將 254, 275 권대재 權大載 97 금위영 禁衛營 98, 157, 273, 275, 285, 권대항 權大恒 97 559 권덕여 權德輿 금화 禁火 56 257 권무군관 勸武軍官 245, 254 급가매득제 給價買得制 457, 461 권민수 權敏手 240 급가매입 給價買入 561 권반 權盼 급가모립 給價募立 8, 383 486 권벌 權機 급대 給代 13 246 권벌 權閥 급료병 給料兵 253 15 권분 勸分 7, 347 급보법 給保法 557 권상유 權尙游 171 급복 給復 298 권상하 權尙夏 166, 168, 174 급복전 給復田 491, 492 권설아문 權設衙門 185, 547 기거주 起居注 312 권시 權課 98, 109, 111, 113, 115, 229 기경전 起耕田 407 기고병 旗鼓兵 권신체제 權臣體制 34, 35 256 권심행 權審行 31 기년복 朞年服 103, 110, 116, 153 기년설 朞年說 권철 權轍 24, 34 99, 100, 102, 105~107, 권협 權協 97 110, 111 권환 權瑍 기대승 奇大升 29,40 157 궐액진충규칙 闕額嗔充規則 295 기묘사류 己卯士類 33, 35 궐전 闕錢 392 기묘사림 己卯士林 216 궐채 蕨菜 기묘사화 己卯士禍 504, 507 13, 214 규장각 奎章閣 288 기묘인 己卯人 13 균역법 均役法 397, 448 기물 己物 441 균역청 均役廳 246, 471, 506, 512 기미체제 羈縻體制 균전사 均田使 기보총융사 畿輔摠戎使 428 261 근경법 根耕法 기비 基肥 436 435 근세 소빙기 近世 小氷期 309 기사별장 騎士別將 254 금군 禁軍 274 기사보 騎士保 249 금군과 禁軍窠 276 기사장 騎士將 254 금군별장 禁軍別將 기사환국 己巳換局 276, 277 148, 157, 161, 177, 금군절목 禁軍節目 276 178. 286 금군청 禁軍廳 270, 275, 277 기우제 祈雨祭 324 금난전권 禁亂廛權 521, 523~526 기유대처분 己酉大處分 176 금단직정사목 禁斷直定事目 206 기유약조 己酉約條 599 금산 錦山 496, 508, 510 기유양안 己酉量案 427 기인 其人 382, 505, 529 금속화폐 金屬貨幣 581, 583, 584 금속화폐 시행론 金屬貨幣 施行論 580 기자헌 奇自獻 74

기총 旗摠 294, 541	김식 金湜 228
기패관 旗牌官 245, 250, 251, 254	김신국 金蓋國 82, 86, 585
기해예송 己亥禮訟 100, 114	김안국 金安國 34
《기효신서》《紀效新書》 243, 279, 290,	김안로 金安老 13, 215
541, 542	김여부 金汝孚 21
《기후와 역사》《Climate and History》	김용택 金龍澤 171, 175
308	김우굉 金宇宏 31
길성위 권대임 吉城尉 權大任 97	김우명 金佑明 95, 99, 114, 115, 119
김개 金鎧 34, 40, 216	김우옹 金字顒 44, 46, 54, 122
김경 金坰 136	김원량 金元亮 81
김경징 金慶徵 85	김육 金堉 9, 82, 95, 101, 137, 486~
김계휘 金繼輝 35, 45, 48	488, 491, 497, 587~589
김구 金構 567	김익경 金益炅 116
김권 金權 141	김익훈 金益勳 158, 160
김귀영 金貴榮 44	김인 金寅 162
김규 金虯 20	김인후 金麟厚 29
김남윤 金南潤 563	김일경 金一鏡 171, 175
김대명 金大鳴 46	김일손 金馹孫 213
김덕생 金德生 562	김자점 金自點 84, 88, 90, 94, 95, 101,
김덕원 金德遠 160, 161	124, 271, 282, 283
김류 金瑬 72, 81, 82, 84, 271, 281~	김자점 옥사 金自點 獄事 95
行开 並宝 12, 01, 02, 04, 211, 201°	
283	김장생 金長生 73, 74
283	김장생 金長生 73, 74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283김만기 金萬基116, 117, 156김만철 金萬鐵157김명윤 金明胤16, 37, 44김민택 金民澤171김범 金範32	김장생 金長生 73,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355,488 김중하 金重夏 157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김장생 金長生 73,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355,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김집 金集 95, 101, 283, 486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성일 金畝— 51, 123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성일 金誠一 51, 123 김성행 金省行 171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김집 金集 95, 101, 283, 486 김창집 金昌集 165, 167, 169, 170, 172,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성일 金誠一 51, 123 김성행 金省行 171 김세림 金世濂 82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김정 金集 95, 101, 283, 486 김창집 金昌集 165, 167, 169, 170, 172, 173, 176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성일 金誠— 51, 123 김성행 金省行 171 김세렴 金世濂 82 김세룡 金世龍 89 김수 金睟 43, 46 김수항 金壽恒 109, 117, 154, 158, 160	김창생 金長生 73,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355,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김정 金集 95,101,283,486 김창집 金昌集 165,167,169,170,172,173,176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성일 金誠— 51, 123 김성행 金省行 171 김세렴 金世濂 82 김세룡 金世龍 89 김수 金睟 43, 46 김수항 金壽恒 109, 117, 154, 158, 160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김정 金集 95, 101, 283, 486 김창집 金昌集 165, 167, 169, 170, 172, 173, 176 김천일 金千鎰 228 김첨 金瞻 57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성일 金誠— 51, 123 김성행 金省行 171 김세렴 金世濂 82 김세룡 金世龍 89 김수 金睟 43, 46 김수항 金壽恒 109, 117, 154, 158, 160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김집 金集 95, 101, 283, 486 김창집 金昌集 165, 167, 169, 170, 172, 173, 176 김천일 金千鎰 228 김참 金瞻 57 김춘택 金春澤 162
283 김만기 金萬基 116, 117, 156 김만철 金萬鐵 157 김명윤 金明胤 16, 37, 44 김민택 金民澤 171 김범 金範 32 김상헌 金尚憲 79, 82, 84, 486 김석주 金錫胄 96, 99, 113, 114, 117, 119, 148, 154, 156, 158, 159, 284, 285 김성일 金畝— 51, 123 김성행 金省行 171 김세렴 金世濂 82 김세룡 金世龍 89 김수 金睟 43, 46 김수항 金壽恒 109, 117, 154, 158, 160 김수홍 金壽弘 111	김장생 金長生 73, 74 김재로 金在魯 490 김제남 金悌男 71 김종직 金宗直 213 김좌명 金佐明 95, 355, 488 김중하 金重夏 157 김직재 金直哉 71 김직재 옥사 金直哉 獄事 71 김진구 金鎭龜 162 김집 金集 95, 101, 283, 486 김창집 金昌集 165, 167, 169, 170, 172, 173, 176 김천일 金千鎰 228 김첨 金瞻 57 김춘택 金春澤 162

김효원 金孝元 20, 45, 60, 216, 217

# [-]

나만갑 羅萬甲 82, 220 나선정벌 羅禪征伐 95 나주 괘서사건 羅州 掛書事件 287 낙당 洛黨 62 낙서령 洛西令 157 난전 亂廛 522~524 난후군 欄後軍 266 남계서원 藍溪書院 144, 145 남곤 南袞 40 남구만 南九萬 160, 163, 164, 172 남두북 南斗北 158 남명 南冥 66 남명서원 南冥書院 141 남명학파 南冥學派 30 남방토적 南方土賊 486 남언경 南彦經 32 남이공 南以恭 82, 86, 585 남인 南人 115, 147, 161, 178, 280, 283, 285, 287 남인 예설 南人 禮說 108 남주 濫鑄 591 남창 南倉 251 남천한 南天漢 98 남초 南草 446 남하정책 南下政策 603 남한산성 南漢山城 255, 268, 282 남한산성청 南漢山城廳 269 남행지현자 南行之賢者 228 납공노비 納貢奴婢 346 납속 納粟 324, 482 납속공명첩 納粟空名帖 338 납속면천 納贖免賤 348 납속보관 納贖補官 348 납속수가 納粟受價 348 납철군 納鐵軍 574 납초면역법 納硝免役法 547

납초면역제 納硝免役制 낭관 郎官 211 당관권 郎官權 55, 211, 219 낭관직 郎官職 3 낭료직 郎僚職 36 낭천권 郎薦權 42, 55 낭천제 郎薦制 38, 39, 226, 227 당청 郎廳 190,512 내궁방 內弓房 504 내궁방 유물 內弓房 油物 507 내금위 內禁衛 270, 274 내금위장 內禁衛將 276 내농포 內農圃 506 내삼청 內三廳 274 내수사 內需司 453, 455, 459 《내수사급각궁방전답총결여노비총구도안》 《内需司及各宮房田畓摠結與奴婢摠口都案》 460 내수사전 內需司田 452 내어물전 內魚物廛 521 내의원 內醫院 504 내의원 약재 內醫院 藥材 507 내의원 청대죽 內醫院 靑大竹 507 내정전횡기 內政專橫期 198 노군수보 奴軍需保 266 노농 老農 435 노당 老黨 39, 41 노론 老論 125, 158, 161, 164, 166, 168, 170, 171, 175, 178, 287, 514 노론사대신 老論四大臣 172, 173, 175 노비신공 奴婢身貢 346 노소당 老少黨 216 노수신 盧守愼 36, 44, 53 녹권 錄券 174 「と상절목」「論賞節目」 《 と 가 설 》 《 農 家 說 》 432,440 《농가월령》《農家月令》 433, 440, 446 《농가집성》《農家集成》 326, 433, 440 《농사직설》《農事直說》 326, 431 《농서집요》《農書輯要》 439

농시 農時 399 농장 農莊 450 농종법 董種法 434 뇌자 宰子 273 능군 陵軍 492 능양군 총 綾陽君 倧 72 능위전 陵位田 492 니산서원 尼山書院 142 니당개의 난 尼蕩介의 亂 55, 331, 336

#### [□]

단목 丹木 601 단속행오 團束行伍 290 단오 선자 端午 扇子 507 단천공은점 端川貢銀店 567 단천은광 端川銀鑛 545, 573, 579 단포 短布 581 달천철광 達川鐵鑛 572 당독역 唐毒疫 328 당론 黨論 136 당물 唐物 598 당상군관 堂上軍官 275 당상첩 堂上帖 572 당하관 堂下官 235 대간 臺諫 132 대간직 臺諫職 대공 大功 115 대공복 大功服 116, 153 대공설 大功說 117 대공수미법 代貢收米法 482, 483 대납청부상인 代納請負商人 528 대동목 大同木 495 대동미 大同米 552 대동미 상납분 大同米 上納分 381 대동미 유치분 大同米 留置分 382 대동법 大同法 7, 326, 381, 384, 394, 418, 448, 479, 481~493, 497, 502, 505, 512, 513, 516, 517, 528, 532, 534, 536, 552, 606 대동사목 大同事目 384

대동청 大同廳 485, 512 대동포 大同布 495 대리청정 代理聽政 169, 170 대립 代立 381 대립제 代立制 380 《대명률》《大明律》 102, 106, 593 대명통보 大明通寶 584 대방소임 大房所任 531 대변군관 待變軍官 대봉 代捧 499, 516 대북 大北 123 대북파 大北派 280 대왕대비 복제 大王大妃 服制 116 대윤 大尹 14 대장 大將 273 《대전통편》《大典通編》 408, 414 대조 大操 269 대총 隊摠 293, 541 대호지 大好紙 504 대화장 大化場 539 대흥산성 大興山城 285 덕망지사 德望之士 224 덕원 德源 539 덕종 德宗 107 덕천막부 德川幕府 600 덕천서원 德川書院 140, 144 덕평장 德坪場 539 덕흥군 德興君 32 도감제 都監制 546 도맥이모작 稻麥二毛作 432, 435 도봉서원 道峯書院 142 도사 都事 589 도산서원 陶山書院 144 도성분수 都城分守 246 도성성타 都城城垜 257 도소자취 熖焇煮取 도시빈민층 都市貧民層 402 도신징 都愼徵 113, 116, 119, 153 도원 都員 530

도원수 都元帥

279

도장 導掌 468 도장권 導掌權 462 도제조 都提調 127, 128, 190, 512 도제조군관 都提調軍官 245, 254 도조제 賭租制 461 도종 稻種 436 도중 都中 530 도지제 賭地制 9,451,452 도체찰부 都體察府 282, 284, 285 도체찰사 都體察使 279,600 도체찰사부 都體察使府 156 도호 都護 545 도회 都會 521, 545 도회제 都會制 546, 548 독대 獨對 169 독보 獨步 86 돈화문 敦化門 247 동가 動駕 273, 277 동가배호 動駕陪扈 246 동광 銅鑛 592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50 동래 東萊 605 동복오씨 同福吳氏 97, 99, 101 동・서분당 東・西分黨 동성군 東城君 172 동영 東營 251 《동의보감》《東醫寶鑑》 329 동인 東人 122, 280 「동인협공」「同寅協恭」 123 동전 銅錢 445, 582, 584~593 동전주조 銅錢鑄造 581~584, 586, 588 ~591 동정서사론 東正西邪論 52,53 동창위 권대항 東昌尉 權大恒 97 동철 銅鐵 583, 584, 592 동첨도위 同僉都尉 294 동평군 이항 東平君 李杭 162 두락제 斗落制 424 두레 443 두창 痘瘡 328

 둔아병
 屯牙兵
 262

 둔장초
 屯壯抄
 262

 둔전
 屯田
 266, 543

 《등록유초》《騰錄類抄》
 200

 등롱군
 燈籠軍
 273

 등패
 登牌
 257

#### [2]

램 Lamb H. H. 309 《로마제국의 쇠퇴와 멸망》 《Decline and Fall of Roman Empire》 305 루시엥 파브로 Lucien Febvre 306 루이 알바레즈 L. Alvarez 316

#### [[]

마대 馬隊 275 마병 馬兵 256 마산포장 馬山浦場 539 마운더 E. W. Maunder 316 마의 馬醫 245, 250 마준수조 磨准收租 501 마포미전 麻浦米廛 520, 522 마포염전 麻浦鹽廛 521 《만기요람》《萬機要覽》 500, 501, 505, 506, 567 만력통보 萬曆通寶 582, 586 만세덕 萬世德 583 망룡단 蟒龍緞 603 매득지 買得地 461 매탄작업 埋炭作業 580 맥작기술 麥作技術 433 면농 綿農 446 면조 面操 269 면주전 綿紬廛 523, 524 면포 綿布 444, 518, 581, 582, 590 명례궁 明禮宮 460 명목가치 名目價値 588, 590, 593 명반 明礬 601

명선공주방 明善公主房 569 문소전 文昭殿 39 명성왕후 明聖王后 156 문외미전 門外米廛 520, 522 명종비 심씨 明宗妃 沈氏 문인 文引 35 601 모곡 耗穀 352 문정왕후 文定王后 14. 24 모군 募軍 397, 447, 574, 578 문치주의 文治主義 100 모록자 冒錄者 359 미전 米廛 520 모립제 募立制 383, 390, 397, 447 민간수공업 民間手工業 446 모문룡 毛文龍 466, 584 민결면세제 民結免稅制 457, 458, 461 모입경포 募入京砲 민결면세지 民結免稅地 460, 461 492 목래선 睦來善 97,  $160 \sim 162$ 민결지정부 民結之丁夫 387 목릉 穆陵 388 민고 民庫 395, 489 목멱봉수 木覓烽燧 민몽룡 閔夢龍 277 70 민신의 대복사건 閔愼의 代服事件 목면경종법 木綿耕種法 438 96, 목성선 睦性善 79 114 목수 木手 574 민암 閔黯 97, 157, 160~162 목임일 睦林一 163 민역 民役 386 목창명 睦昌明 민유중 閔維重 97, 162 117 목호룡 睦虎龍 171, 173 민응협 閔應恊 97 몽테스퀴외 Charles Montesquieu 305 민점 閔點 97 묘갈명 墓碣銘 168 민정중 閔鼎重 154, 158, 355, 489 묘갈문 墓碣文 민제인 閱齊仁 167 13 묘위전 墓位田 492 민종도 閔宗道 161 무가상납 無價上納 534 민진원 閱鎭遠 175 무고의 옥 誣蠱의 獄 민희 閔熙 97, 157 164 무곡상인 貿穀商人 444 밀무역 密貿易 519 무군사 撫軍司 280 밀풍군 탄 密豊君 坦 176 무덕문 武德門 247 무벽리 無鐴犁 [日] 437 무비사 武備司 259 무쇠 580 박건 朴楗 70 무신란 戊申亂 150, 176, 179 박광우 朴光佑 13, 14 무예별감 武藝別監 245, 570 박동선 朴東善 74 무오사화 戊午士禍 박문수 朴文秀 275 213 무주진전 無主陳田 415 박빈 朴斌 무취법 無臭法 박세당 朴世堂 116 박세채 朴世采 무토둔전 無土屯田 467 102, 163, 172, 490 무토면세 無土免稅 박소립 朴素立 24 「무학사목」「武學事目」 291 박순 朴淳 25, 29 문묘종사 文廟從祀 박승종 朴承宗 125, 143 71 문서차지 文書次知 박영준 朴永俊 38, 43 531

박원종 朴元宗 235	백인걸 白仁傑 15
박응남 朴應南 24	번상군 番上軍 252
박응서 朴應犀 71	번안 飜案 174
박이서 朴彛敍 70	번장 番將 274
박정 朴炡 82	번주 藩主 332
박정길 朴鼎吉 70	벌열정치 閥閱政治 514
박지계 朴知誠 74, 78	범순인 范純仁 62
박지원 朴趾源 449	범중엄 范仲淹 120
박충원 朴忠元 39, 43, 44	《법의 정신》 《法의 精神》 305
박필몽 朴弼夢 171	법정가 法定價 549, 554
바호구 사라老 7/	법화 法貨 582, 593
박효원 朴孝元 63	《벽온신방》《辟瘟新方》 329
반대동 半大同 485	벽과 辟派 287
반상제 班常制 179	변별숙특론 辨別淑慝論 53,54
반청론 反淸論 78	변사암련자 邊事諳鍊者 185
발매 發賣 352	별공 別貢 504
방 坊 257	별군관 別軍官 245
방고전 防雇錢 392, 393	별기사 別騎士 266
방군수포 放軍收布 480	별기위 別騎衛 254
방납 防納 346, 517, 518, 527, 528	별대마군 別隊馬軍 261
방남권 防納權 518, 560	별마대 別馬隊 249
방납사주인 防納私主人 518, 528	별무 別貿 532
방물 方物 504, 507, 533	별무사 別武士 245, 250, 254
방민 坊民 529	별부료군관 別付料軍官 272
방사환 房使喚 531	별비품 別備品 572
방어사 防禦使 251	별세초 別歲抄 368
방어청 防禦廳 186	별수미 別收米 490, 492, 501, 506
방역 坊役 387	별순라 別巡羅 260
방영군관 防營軍官 251	별요위 別饒衛 254
방이공 方以恭 562	별용 別用 527
방자 房子 505	별임 別任 531
방자역가 房子役價 505	별장 別將 245, 252, 269, 272, 568
배호 陪扈 277	별장군관 別將軍官 276
배후금향명정책 排後金向明政策 282	별초무사 別抄武士 274
백대형 白大珩 70	별파진 別破陣 249, 250, 251, 254
백망 白望 171	별과진보 別破陣保 249
백면지 白綿紙 504	병권 兵權 152, 156, 178
백사 白絲 605	병농분리론 兵農分離論 381
백운동서원 白雲洞書院 29, 140, 141	병농분리제 兵農分離制 10
백유함 白惟咸 57,58	병마강 개삭 兵亇舡 改槊 507

병마강 신조 兵亇舡 新造 507 《早보록》《裒寶錄》 145 병산서원 屛山書院 144 부사공신 扶社功臣 172 병신처분 丙申處分 149, 168 부상대고 富商大賈 605 병신환국 丙申換局 149, 166, 168, 172, 부세 賦稅 586 부역노동의 물납세화 賦役勞動의 物納 177, 178 병용론 並用論 62 稅化 390 병자호란 丙子胡亂 94, 283, 336, 337, 부의 浮議 217 469, 486, 587 부장 部將 276 병작제 竝作制 9, 442, 450, 452 부장취재 部將取才 276 부제조 副提調 병조품지 兵曹稟旨 255 190 병항점 瓶缸店 부중세력 府中勢力 571 119 보거제 保擧制 북벌정책 北伐政策 98, 284, 299, 561 223 북이영 北二營 251 보군 步軍 249, 256 북인 北人 123, 280 보련산유황점 寶連山硫黃店 569 보미 保米 570 북한산성 北漢山城 255, 262 보수구事 保授救恤 349 분양마 分養馬 508 분양우 分養牛 보우 普雨 25 「분영사실」「分營事實」 보인 保人 248, 249, 368 291 보인수포제 保人收布制 570 분전법 糞田法 436 복마군 卜馬軍 249,570 분회 糞灰 435 복상 卜相 239 불타산 佛陀山 569 복선군 남 福善君 柟 157 붕당 朋黨 3, 50, 59, 60, 151, 164, 170, 복제논쟁 服制論爭 113, 147, 152, 155, 176, 221 붕당론 朋黨論 61, 76, 175 178 복제문제 服制問題 178 붕당망국론 朋黨亡國論 62,121 복제소 服制疏 105, 109, 111 붕당정치 朋黨政治 1,59,121,147,150, 복제예론 服制禮論 108 172, 177, 179, 218, 278, 280, 286, 287 비공신 사림계열 非功臣 士林系列 95 복제예송 服制禮訟 112 복창군 정 福昌君 楨 비국 備局 185 114 복평군 연 福平君 煙 비변사 備邊司 4, 127, 183, 185, 189, 278, 157 복호 復戶 248 279, 288, 465, 504, 505 본아병 本牙兵 251 「비변사 거사십조」「備邊司 擧事十條」 봉군 烽軍 492 205 봉름 俸廩 507 「비변사계」「備邊司啓」 127, 129 봉산 鳳山 비변사당상 備邊司堂上 539 127, 190 봉상시 奉常寺 505 비변사 제조 備邊司 提調 봉족 奉足 비변사 회의체 備邊司 會議體 184 290, 297, 594 「봉족정급절목」「奉足定給節目」 298 비부 婢夫 349 봉통 蜂桶 572 비어주획기관 備禦籌劃機關 185 부번군 赴番軍 570 빅터 쿠진 Victor Cousin 306

빈좌 賓座 184, 195 빙기 氷期 309

#### [시]

사경지 私耕地 450 사계 司啓 194 사관 四館 236 사구 沙丘 173 사담시 司膽寺 346 사대동 私大同 479, 481, 489, 490 사도세자 思悼世子 287 사도시 司導寺 505 사령 使令 513, 579 사림 士林 232, 279 사림세력 士林勢力 25 사림정치 土林政治 37,50 사림파 士林派 14 사마소 司馬所 238 사모군 私募軍 270, 281 사무역 私貿易 519, 601 사민추쇄구관 徙民推刷句管 195 사복시 司僕寺 424, 505 사복시 분양마 司僕寺 分養馬 505 사사위전 寺社位田 543 사상 私商 530, 534 사상도고 私商都賈 521, 523 사서인의 예 士庶人의 禮 99 사수 射手 290 사액서원 賜額書院 140,507 74 사업 司業 사여 賜與 454 사용원 司饔院 525 사우 祠宇 142 사인작회 舍人作會 236 사재감 司宰監 505 사종설 四種說  $102 \sim 104, 106$ 사주 私鑄 593, 594 사주전 私鑄錢 584, 587, 588 사주조 私鑄造 586

사직 社稷 507 사진 査陳 422 사패문서 賜牌文書 454 사평장 沙坪場 539 사포수 私砲手 283 사향 麝香 504 사화 士禍 2, 213 사후군 伺候軍 삭당 朔黨 62 삭선 朔膳 507 삭초법 朔抄法 295 삭훈문제 削勳問題 43 산당 山黨 95, 99, 101 산릉역 山陵役 385, 387, 399, 400 산림 山林 101, 158, 166, 226, 228 《산림경제》《山林經濟》 산림직 山林職 5,228 산림학자 山林學者 산서상인 山西商人 597 산점민 山店民 574 산직 山直 492 산척포수 山尺砲手 247 살수군색 殺手軍色 542 삼남월과화약가 三南月課火藥價 삼년복 三年服 102, 106, 153 삼년설 三年說 99, 100, 109~111 삼도대동청 三道大同廳 512 삼명일진상 갑주 三名日進上 甲胄 삼명일진상 마 三名日進上 馬 504 삼복 三福 98 삼사 三司 586 삼사 언론 三司 言論 132 삼수기 三手技 243 삼수기법 三手技法 541 삼수량 三手糧 245, 586 삼수미 三手米 491, 543 삼수병 三手兵 289 삼척 三戚 156 삼포왜란 三浦倭亂 331, 332 상규지도 相規之道 133

상납문안봉리유사 上納文案封裏柳笥 서인 西人 100, 107, 110, 118, 122, 147, 508 160, 161, 164, 178, 281, 283, 287 상납문안봉리조소 上納文案封裏條所 서인정권 西人政權 118 508 서적교인도감 書籍校印都監 556 상납문안봉리초석 上納文案封裏草席 서종하 徐宗廈 171 서필원 徐必遠 상납미 上納米 500, 501, 504, 505, 석실서원 石室書院 146 511, 514 석전제 폐백 釋奠祭 幣帛 507 상목 上木 504 선강개삭 船舡改槊 508 상미전 上米廛 선강신조 船舡新造 520, 522 508 상복도 喪服圖  $105 \sim 107$ 선공감 繕工監 525 상시잡역 常時雜役 380, 381, 386 선두포언 船頭浦堰 410 상언 上言 231 선마가 船馬價 507, 508, 510 상업적 농업 商業的 農業 445 선배사류 先輩士類 47 상역 償役 392 선상 船商 444 상의원 尙衣院 525 선수도감 繕修都監 556 상전 床廛 521 《선원록》《璿原錄》 285 상정가 詳定價 선전관 宣傳官 556 276 상정법 詳定法  $488 \sim 490, 493, 496$ 선정 先正 168 상진곡 常賑穀 선혜당상 宣惠堂上 358 198 상평창 常平倉 선혜법 宣惠法 338, 340 70, 484 상평창제 常平倉制 341 선혜청 宣惠廳 258, 358, 484, 498, 501, 상평청 常平廳 353, 357, 496, 512, 560, 502, 506, 512, 532, 559, 586 선혜청당상 宣惠廳堂上 586, 587, 589, 591 195 상평통보 常平通寶 445, 590, 592 설점수세법 設店收稅法 567 상포 常布 581 섭정왕 攝政王 상품화폐경제 商品貨幣經濟 179 성곽보수 城郭補修 94 상하유사체제 上下有司體制 144 성균관 의천 成均館 議薦 225 상회례 相會禮 133 성수침 成守琛 28, 29 색리 色吏 575 성영 成泳 584 생철 生鐵 579 성운 成運 32 서강미전 西江米廛 521, 522 성조 城操 269, 270 서경덕 徐敬德 35 성천은점 成川銀店 567 서량 西糧 488 성호빈 成虎彬 162 서리 胥吏 190 성혼 成渾 44, 54, 66, 80, 124, 143, 160, 서리 書吏 513, 579 163 서명선 徐命善 273 성황제 城隍祭 508 서민지주 庶民地主 세견선 歲遣船 601 449 서성 徐渻 세도정치 世道政治 74 서원 書院 세도정치 勢道政治 288, 514 4, 140

세목 稅木 570 속오법 束伍法 289 세선 貰船 속오보군 束伍步軍 266 569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속오분군법 束伍分軍法 229 541 세초 歲抄 368 속오분수지법 束伍分數之法 290 세초법 歲抄法 295 속오삼수제 束伍三手制 540, 541, 546 세폐 歲幣 94, 337, 504, 533 속오수미법 束伍收米法 295 소공 小功 115, 117 「속오절목」「東伍節目」 295 소기묘 小己卯 속오지군 東伍之軍 291 소노앙법 蘇老秧法 속전 續田 407, 417, 424, 489, 496 433 소당 少黨 39, 41, 42 속전 贖錢 586 소론 少論 158, 161, 164, 166, 168, 170, 속포 贖布 590 속환 贖還 337 171, 175, 178, 287 소목 昭穆 40 손척 孫倜 70 소북계 小北系 손홍적 孫弘積 17 128 소빙기 小氷期 6, 315, 603 송림서원 松林書院 141 소빙기 수재 小氷期 水災 송순 宋純 325 40 소빙기 이상현상 小氷期 異常現狀 송시열 宋時烈 95~119, 124, 136, 153, 154, 158, 160, 163, 166, 168, 179, 283, 486 359 소빙기 자연재해 小氷期 自然災害 338 ~488 소빙기 한재 小氷期 旱災 송유진 宋儒眞 325 482 소수서원 紹修書院 송응개 宋應漑 56 144 소식 蘇軾 송응형 宋應泂 62 53 송인수 宋麟壽 소윤 小尹 14 13, 16, 34 소윤 척신계 小尹 戚臣系 송준길 宋浚吉 19 95, 101, 103, 105, 108, 소인당 小人黨 77, 175 109, 112, 114, 119, 136, 168, 486 소임군관 所任軍官 273 송파장 松坡場 539 소현세자 昭顯世子 89, 283 송희규 宋希奎 14 소호지 小好紙 504 쇄마가 刷馬價 383, 486, 489, 507, 510 쇄마계 刷馬契 소회 疏會 242 506 소흘라 所訖羅 《쇄미록》《瑣尾錄》 349 434 《속대전》《續大典》 408, 460, 492 쇄환 刷還 337 《속무정보감》《續武定寶鑑》 17 쇼브 Schove D. J. 309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263 수경직파법 水耕直播法 431 속안 續案 424 《수교집록》《受教輯錄》 412, 414 속영체제 屬營體制 267, 268 수군 水軍 369 속오군 東伍軍 243, 261, 279, 289, 542, 수군습조 水軍習操 507 수기수세 隨起收稅 546, 547, 555 406, 407 속오군병 束伍軍兵 291 수도 隧道 95 속오군졸 束伍軍卒 수리계 修理契 291 505 속오급보법 束伍給保法 수문군 守門軍 251 295

수문장 守門將 244, 276 스미스 Lesley Smith 307 수미군 收米軍 269 승군 僧軍 269, 386, 400 수미법 收米法 489 승역 僧役 385 수석 首席 531 시립 侍立 255 수성분계 守成分界 시무 市貿 257 527 수성윤음 守城綸音 287 시비 是非 169, 172 수성절목 守城節目 257 시비기술 施肥技術 수소군 修掃軍 388 시비논쟁 是非論爭 179 시비법 施肥法 363 수시회감 隨時會減 501,508 수어경청 守禦京廳 시비분별론 是非分別論 267 164 수어청 守禦廳 156, 262, 268~270, 시안 市案 524, 525 282, 283, 285, 468, 557 시우쇠 580 수운선마가 輸運船馬價 486 시위 侍衛 255 수윤 秀胤 157 시전 市廛 444, 514, 520, 523, 530 수의 收議 235 시전상인 市廛商人 520, 522, 524~ 수조권 收租權 441 526, 529 수조권 분급제 收租權 分給制 447 시과 時派 287 수조반강 收租頒降 500,501 식년호적안 式年戶籍案 510 수조안 收租案 491 식례획급 式例劃給 501,507 수진궁 壽進宮 신경원 申景瑗 460 85 수차 水車 439, 488 신경진 辛慶晉 542 수철 水鐵 580 신경진 申景禛 72, 81, 85, 271, 281 수철계 水鐵契 506 신경희 申景禧 70 수철아병 水鐵牙兵 577 신곡계 新穀契 506 수철장 水鐵匠 577 신광한 申光漢 13 수통 水桶 438 신구관 영송의 역 新舊官 迎送의 役 수포군 收布軍 251 383 수포제 收布制 신면 申冕 95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413, 380 숙동노구 熟銅爐口 563 숙원 조씨 淑媛 趙氏 89 415 숙위소 宿衛所 273 신분제 身分制 179 숙종 肅宗 118, 120, 165, 166, 168, 신산서원 新山書院 141 신서 申西 95 169, 178 숙천부사 肅川府使 572 신숙 申夙 326 숙철 熟鐵 579 신역가 身役價 575 순령수 巡令手 273 신역연액 身役鉛額 575 순작 巡綽 245 신역은 身役銀 575 순치제 順治帝 94 신역철 身役鐵 575 순회세자 順懷世子 107 신완 申琓 164 숭의문 崇義門 247 신유의서 辛酉擬書 167, 168

신응시 辛應時 40, 45, 48 악화 惡貨 606 신익성 申翊聖 271 안경창 安景昌 329 신임환국 辛壬換局 149, 170, 172, 174, 안동권씨 성화보 安東權氏 成化譜 372 안명세 安名世 177. 179 17 신전 新田 안민창 安民倉 574 448 신진사류 新進士類 35 안성 安城 537, 539 《신찬벽온방》《新撰辟瘟方》 329 안식 安烒 158 신철 薪鐵 563 안향 安珦 140 신포 身布 573 암행어사 暗行御史 455 신현 申睍 암흑기 The Dark Ages 542 306 신흠 申欽 70, 74, 95 앙기 秧基 432 실결 實結 487, 492, 496 앙묘 秧苗 432 실무관료 實務官僚 164, 178 야로 冶爐 570, 579 실정막부 室町幕府 332 야인 野人 330 심강 沈鋼 야장 冶匠 572, 574, 579 심광수 沈光洙 110 약방 藥房 245 심기원 沈器遠 양구 羊裘 85, 266, 271, 282, 283 598 심단 沈檀 171 양군수보 良軍需保 226 심상길 沈尚吉 171 양대 凉臺 525 심연원 沈連源 양대전 凉臺廛 526 19, 21, 27 심열 沈悅 양료 糧料 86 573 심읍 沈揖 593 양맥 兩麥 435 심의겸 沈義謙 양부진전 量附陳田 425 27 심전 沈銓 양비론 兩非論 176 심지원 沈之源 106 양성지 梁誠之 380 심총 沈摠 487 양시양비론 兩是兩非論 52,65,122 심충겸 沈忠謙 46, 48 양안 量案 487 심통원 沈通源 19, 21, 22, 27 양역 良役 251 심희수 沈喜壽 46 양역변통 良役變通 286, 366, 370 양역사정 良役査定 578 [0] 양역사정별단 良役査定別單 570 《양역실총》《良役實摠》 371 아날학파 아날學派 306 양역제 良役制 366 아다개 阿多介 483 양연 梁淵 345 아록전 衙祿田 492 양재역벽서사건 良才驛壁書事件 아문둔전 衙門屯田 453, 464, 465, 471, 양전 量田 405, 417, 484, 487, 493 양전무용론 量田無用論 474, 492 429 아병 牙兵 262, 268 《양전사목》《量田事目》 415, 419 악주 惡鑄 양전어사 量田御使 418 591 악포 惡布 581 양전제 量田制 416

역총 役摠 양전청 量田廳 428 372 양주진 楊州鎭 267 연군 鉛軍 574 양천제 良賤制 연군 烟軍 380, 385, 387, 400 179 양현고 養賢庫 506 연군가 烟軍價 388 양호 楊鎬 연병규식 鍊兵規式 582~584 291 양화진아병 楊花津牙兵 《연병실기》《練兵實記》 251 262 어교 魚膠 504 연융대 鍊戎臺 256 어린작대 魚隣作隊 295 연잉군 延礽君 149, 170, 173, 179 어물전 魚物廛 연작상경 連作常耕 518, 535 521 어부계 漁夫契 연장 鉛匠 506 572, 579 어세 漁稅 569 연점 鉛店 575, 578 어염 구관당상 漁鹽 句管堂上 연철군 鉛鐵軍 198 574 어염선세 魚鹽船稅 347 연총월과미 年總月課米 550 어영군 御營軍 247, 250, 261, 282, 연호군 烟戶軍 380 어영사 御營使 247 연호잡역 烟戶雜役 386, 394, 465, 575 어영청 御營廳 156, 271, 282, 285 연환 鉛丸 545, 578 어융사 御戎使 247 염전 鹽田 521 어의궁 於義宮 460, 463 염초 焰硝 544 언관권 言官權 207, 239 영고탑 파병 寧古塔 派兵 199 언관직 言官職 영덕은점 盈德銀店 3 567 언론기관 言論機關 영릉 寧陵 209 96, 114, 115 에드워드 기번 Edward Gibbon 305 영문둔전 營門屯田 453, 465 여공저 呂公著 영송쇄마가 迎送刷馬價 383, 384 62 여대방 呂大防 영위 領位 62 531 여성제 呂聖齊 160 영작궁둔 永作宮屯 461, 462 여수전 旅需錢 249 영장가속 營將假屬 253 「영장사목」「營將事目」 여점 旅店 488 298 영장제도 營將制度 여제 厲祭 508 294, 299 여첩퇴비처 女堞頹圮處 영접도감 경비 迎接都監 京婢 258 505 역가 役價 382, 573 영접도감 방자 迎接都監 房子 505 역가미 役價米 392 영접도감 악공봉족 迎接都監 樂工奉足 역관 譯官 507 161, 544 역군가 役軍價 영정법 永定法 382 326 역리 驛吏 492 영조 英祖 173, 175, 179 역민 役民 영종진 永宗鎭 386 251 역병 疫病 영주인 營主人 327 529 《역사의 연구》《歷史의 硏究》 306 영창대군 永昌大君 71 역사지리학 歷史地理學 307 《예기》《禮記》 105 역자 驛子 《예기유편》《禮記類編》 492 149, 165, 178 역졸 驛卒 492 예론 禮論 108, 155, 179

예문관 자천제 藝文館 自薦制 212 외방농민 外方農民 387 예송 禮訟 99~102, 108, 147, 284 외방전결지군 外方田結之軍 387 예장조묘군 禮葬造墓軍 외보론 外補論 383 52 예장조묘군역 禮葬造墓軍役 505 외어물전 外魚物廛 521 예전 禮錢 요금문 曜金門 531 256 예조 禮曹 504, 505 요동도사 遼東都司 595 오간수문 五間水門 277 요동상인 遼東商人 598 오겸 吳謙 43 요역 徭役 7, 379~381, 386, 507 오단 吳端 97 요역제 徭役制 379 오레의 五禮儀 요포 料布 590 44 오복제 五服制 109 용동궁 龍洞宮 460, 461 오삼계 吳三桂 용미차 龍尾車 284 439 5승포 五升布 581 용산염전 龍山鹽廛 521 오시복 吳始復 157, 162 용암서원 龍巖書院 141 570 오시수 吳始壽 97 용진진군 龍津鎭軍 오여은 吳汝穩 70 용호영 龍虎營 256, 274, 277, 287 오위 五衛 254, 278 용호청 龍虎廳 270 오윤겸 吳允謙 우림위 羽林衛 270, 274 74 오정원 吳挺垣 97, 98 우성전 禹性傳 46 오정위 吳挺緯 97, 98, 113, 157, 592 우승유 牛僧孺 60 오정일 吳挺一 97, 98 우영장 右營將 300 오정창 吳挺昌 97, 113, 115, 157 우포 牛脯 507 오희문 吳希文 349, 409, 432 우황 牛黃 504 옥산서원 玉山書院 운종가 雲從街 144 520 옥형 玉衡 439 응담 熊膽 504 온역 瘟疫 328 원공 元貢 496, 504, 532 완론 緩論 171 원당 原黨 95 완론 탕평론 緩論 蕩平論 원두표 元斗杓 90, 95, 106, 109, 486 175, 176 완소 緩少 원묘제 原廟制 149, 171, 173, 174 39 왕 Wang, S. 309 원산장 元山場 539 왕세제 王世弟 170, 173 원위전 園位田 492 왕실 종통문제 王室 宗統問題 107 원의제 圓議制 208 왕위 계승문제 王位 繼承問題 원자 元子 174 159, 160, 163 왕자과전법 王子科田法 452 원장 院長 144, 145 왕조례 王朝禮 112 원장부 元帳付 원종공신 原從功臣 왜관 倭館 592, 601 왜구 倭寇 330, 332 원종 추숭 元宗 追崇 왜물고 倭物庫 602 원주진 原州鎭 267 왜수차 倭水車 원혼 元混 439 43 외도고공계 外都庫貢契 월과군기 月課軍器 530, 531 507

월과군기역 月課軍器役 551 유치미 留置米 500, 501, 506, 507, 월과군량 月課軍粮 507 511, 514 월과법 月課法 548 유태기 兪泰基 162 월과총약환수 月課銃藥丸數 553 유토둔전 有土屯田 467 위미 位米 유토면세 有土免稅 501, 505 460 위붕 偽朋 3, 121 유팽로 柳彭老 440 위사공신 衛社功臣 16 유향소 留鄕所 2, 211, 223, 237 위소제도 衛所制度 333 유향품관 留鄕品官 348 위징 魏徵 유혁연 柳赫然 98, 101, 112, 156, 283 116 유형원 柳馨遠 위태 位太 384, 401 501, 505 유계 兪棨 166, 178 유황 硫黃 544 유관 柳灌 유황감관 硫黃監官 15, 43 유기금단사목 鍮器禁斷事目 592 유황광 硫黃鑛 564 유도영 留都營 255 유황군 硫黃軍 572, 578 유득일 兪得一 158 유황점 硫黃店 569, 577 유명견 柳命堅 158 유회 柳灰 544 유명일 兪命一 유희분 柳希奮 162 70, 71 유명현 柳命賢 유희춘 柳希春 163 29 유백증 兪伯曾 82, 84 육군습조 陸軍習操 507 유벽리 有鐴犁 437 6등전품 六等田品 423 유복기 兪復基 육십령 六十嶺 162 301 유봉휘 柳鳳輝 170, 174, 175 육의전 六矣廛 520, 521, 523, 530 유사당상 有司堂上 127, 190, 195 육조낭관계 六曹郎官啓 유사체제 有司體制 144, 145 육조낭관작회 六曹郎官作會 236 유상기 兪相基 166 육조직계제 六曹直啓制 208 유성룡 柳成龍 36, 44, 45, 54, 80, 123, 윤개 尹漑 13, 18 482, 483, 542, 545, 546, 595 윤경교 尹敬敎 357 윤근수 尹根壽 유세철 柳世哲 111, 143 45, 48, 51 유소 儒疏 윤대 輪對 235 140 유숙 柳潚 70 윤덕준 尹德駿 272 유영경 柳永慶 46, 56, 59, 69, 584 윤돈인 尹敦仁 18 유의 糯衣 504 윤두수 尹斗壽 24, 41, 45, 48, 51 유인숙 柳仁淑 13, 15, 43 윤방 尹昉 74,84,95 유일 遺逸 226 윤백원 尹百源 유일지사 遺逸之士 226 윤서 尹西 95 유일천거 遺逸薦擧 223 윤선거 尹宣擧 110, 149, 159, 166~ 유재 遺在 533 168, 172 유주진전 有主陳田 413, 414 윤선도 尹善道 98, 100, 109, 110~113, 유지 劉摯 62 115 유진동 柳振仝 윤성시 尹聖時 56 171

유승훈 尹承勳 46, 584 의리 義理 172 윤원로 尹元老 14, 18 의망 擬望 4 윤원형 尹元衡 14, 18, 24 의무노역제 義務勞役制 326 윤유중 尹惟中 157 의생 醫生 492 윤인 尹訒 의용대 義勇隊 244 윤인경 尹仁鏡 의정부 서사제 議政府 署事制 208 18 윤인서 尹仁恕 37 의주 義州 537 윤임 尹任 14 의천 議薦 129, 131 윤조 輪操 269 의천권 議薦權 4, 129 윤증 尹拯 이건명 李健命 149, 158, 166, 168, 172, 178  $170 \sim 174, 176$ 윤지완 尹趾完 이경석 李景奭 90, 106, 114, 486 169, 172 윤춘년 尹春年 18, 20 이경엄 李景嚴 486 윤현 尹睍 46, 49, 51 이경여 李敬輿 125 윤황 尹煌 83, 84 이경전 李慶全 70 윤효선 尹孝先 70 이경중 李敬中 48 유휴 尹鏞 101~103, 105, 110, 113~ 이경직 李景稷 82 이관명 李觀命 115, 154~157, 167, 284 174, 175 이괄의 난 李适의 亂 581, 583, 585, 588, 590, 592 243, 247, 261, 271 은경제권 銀經濟圈 이광좌 李光佐 599  $173 \sim 175$ 은둔지사 隱遁之士 이귀 李貴 72, 78, 81, 82, 135, 271, 281, 226 은루자 隱漏者 282 359 은장 銀匠 572 이극경 李克敬 565, 573 은점군 銀店軍 이기 季芑 575 14. 18 은파장 銀波場 이기 李堅 539 56 을미왜변 乙未倭變 331 이기론 理氣論 179 을병대기근 乙丙大饑饉 371, 372 이기지 李器之 171 을사복관인 乙巳復官人 36 이노대 吏奴隊 295 을사사화 乙巳士禍 이단하 李端夏 42, 215 154 을사삭훈 乙巳削勳 47 이덕주 李德周 158 을사신원 乙巳伸寃 이덕형 李德馨 123, 542, 602 43 을사환국 乙巳換局 149, 173, 174, 177, 이량 李樑 21, 22, 24, 28 179 이명 李溟 135 을해당론 乙亥黨論 48, 59, 65 이명 李銘 21 을해정식 乙亥定式 457, 469 이명의 李明誼 171 이명한 李明漢 음서 蔭敍 224 86, 125 이모작 二毛作 읍내장 邑內場 539 432, 433 《의례》《儀禮》 99, 100, 102, 104, 106, 이목 李楘 84 108, 117 이무강 李無彊 18 《의례주소》《儀禮注疏》 103 이문형 李文馨 50 의례회감 依例會減 501, 507, 508 이민구 李敏求 85

이민적 李敏迪 455	이응상 李應祥 562
이발 李潑 46, 52, 54	이의립 李義立 565, 571
이방원 李芳遠 208	이의징 李義徵 161, 163
이사명 李師命 160, 275	이의현 李宜顯 175
이산보 李山甫 46, 49, 217	이이 李珥 36, 43, 45, 51, 60, 80, 122,
이산해 李山海 36, 45	143, 160, 163, 481
이상진 李尚眞 158	이이명 李頤命 166, 169, 171~174, 176
이서 李曙 72, 81, 266, 267, 271, 281,	이이점 李爾瞻 70, 280
282, 584	이익 李瀷 105, 401
이성 李惺 70	이인좌 李麟佐 176, 255, 276, 287
이성구 李聖求 84, 85	이정구 李廷龜 70,74
이성중 李誠中 46	이정소 李廷熽 170
이수광 李晬光 74	이정원 李挺元 70
이수의 옥 李銖의 獄 51	이정정액 釐整定額 576, 577
이수일 李守一 267	이정청 釐整廳 575, 576
이순신 李舜臣 242, 279, 327, 333	이조낭관 吏曹郎官 86, 233
이승포 二升布 581	이조전랑 청선권 吏曹銓郎 淸選權 54
이시발 李時發 291	이조정랑 吏曹正郞 38
이시방 李時時 266, 283	이준경 李浚慶 34, 40, 43, 64, 121
이시백 李時白 85, 90, 102, 271, 283,	이지완 李趾完 601
487, 588	이지함 李之菡 228
이식 李植 486	이지효 李止孝 548
이심원 李深源 223	이진유 李眞儒 171
이앙법 移秧法 363, 398	이천기 李天紀 175
이언적 李彦迪 13, 16	이충백 李忠伯 563
이여 李畬 165	이탁 李鐸 34, 38, 41, 43, 44
이역 李繹 25	이하진 李夏鎭 98
이영 李瀛 571	이항 李恒 29
이완 李浣 98, 283	이항복 李恒福 70
이우 李堣 439	이해 李瀣 13
이욱 李旭 563	이해수 李海壽 80
이원우 李元祐 37	이헌국 李憲國 545
이원익 李元翼 46, 70, 74, 75, 483, 484,	이현 梨峴 521
486, 600	이현일 李玄逸 230
이원정 李元禎 98, 157, 490, 492	이홍윤 李洪胤 37
이위경 李偉卿 70	이홍주 李弘胄 84
이유 李濡 164, 169	이화령 伊火嶺 301
이유태 李惟泰 95, 110, 443	이황 李滉 29, 35, 39, 140, 144, 216
이윤우 李潤雨 83	이후백 李後白 41, 49
이응 李膺 60	이희 李羲 570

이희조 李喜朝 174 이희지 李喜之 171 익선 翊善 229 인구상승설 人口上昇說 365 인구성장 둔화설 人口成長 鈍化說 인군위당설 引君爲黨說 121, 124 인납 引納 527 인리 人吏 492 인매선 人買船 335 인목대비 仁穆大妃 72 인분 人糞 435 인삼 人蔘 602 인선왕후 仁宣王后 113, 115, 153 인성군 공 仁城君 珙 79 인성왕후 仁聖王后 43 인수궁 仁壽宮 504 인순왕후 仁順王后 27 인정 人情 486 인정전 仁政殿 277 인조 仁祖 81, 99, 106 인조반정 仁祖反正 72, 110, 113 인정 隣徵 480 인평대군 麟平大君 97,98 인현왕후 仁顯王后 148, 159, 161, 162, 163 일본은 日本銀 604 일조편법 一條便法 94 임곤 任袞 70 임꺽정 林巨正 25 임무성 林茂盛 562 임백령 林百齡 15 임사홍 任士洪 63 임석 任席 531 임신약조 壬申約條 601 임용위업지류 賃傭爲業之類 400, 402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436 임인옥사 壬寅獄事 172, 173, 175 임인옥안 壬寅獄案 174 임지죽 任之竹 562

임진왜란 壬辰倭亂 328, 398, 582, 594 임토작공 任土作貢 526, 528 임한백 任翰伯 136 임훈 林薰 32 입안 立案 410~412, 453, 466 입역노비 立役奴婢 346 입전 立廛 524, 530 입직 入直 277

#### [ㅈ]

자문감 紫門監 258 자보 資保 249, 252 자산서원 紫山書院 141 자연재해 自然災害 324 자영농 自營農 442 자의 諮議 229 자의대비 慈懿大妃 99, 102 자작제 自作制 442 자천제 自薦制 211, 217, 221 자황법 煮黃法 573, 580 《자휼전칙》《字恤典則》 358 작개 作介 442 작개제 作介制 442, 450 작목환가 作木換價 488, 495 작미 作米 346 작지가 作紙價 486 작포환가 作布換價 495 작회 作會 236 잠상 潛商 596, 602 잡세 雜稅 507 잡역세 雜役稅 393, 394 잡용 雜用 527 장경왕후 章敬王后 14 장기(나가사키) 長崎 장녕전 長寧殿 506 장막군 帳幕軍 273 장빙가 藏氷價 382 장빙역 藏氷役 382 장선충 張善沖 102

장성 長城 전세 田稅 29 586 장수산성 長壽山城 568, 574 「전수기의」「戰守機宜」 290 장시 場市 443, 535, 536, 539, 582 전시 錢市 587 전익대 全翊戴 장신 張紳 85 158 장악서 掌樂署 전조낭관 銓曹郎官 72 220 장열왕후 莊烈王后 전조낭관권 銓曹郎官權 153 211 장용영 壯勇營 270, 288 전좌배립 殿座排立 255 장원서 과원 掌園署 果園 504 전좌환위 殿坐環衛 246 장유 張維 81, 84, 85 전주서씨 세보 全州徐氏 世譜 372 장의 掌議 전칠 全漆 504 145 장인 匠人 525, 529, 533, 585, 594 전호 佃戶 442 장자부복 長子婦服 117 절강병법 浙江兵法 290 장초군 壯抄軍 262 절수 折受 411, 412 장포 匠布 577 절수제 折受制 453 장현광 張顯光 74, 78 절수지 折受地 461 장흥고 長興庫 505 점소 店所 571, 579 장희재 張希載 점역 店役 161, 162 571, 575 재가군관 在家軍官 263, 271 점퇴 點退 485, 527 재경군관 在京軍官 250 접대도감 接待都監 351 재상경차관 災傷敬差官 417 접주인 接主人 594 재상권 宰相權 접혈 蹀血 211 173 재야사림 在野士林 222 정강의 변 靖康의 變 61 재이관 災異觀 311 정개청 鄭介淸 141 재최 삼년복 齋衰 三年服 정경세 鄭經世 100, 104 74 쟁고 錚鼓 504 정계 停啓 133 쟁기 437 정구 鄭逑 80 저치곡 儲置穀 334, 338 정근 正筋 504 정대년 鄭大年 저화 楮貨 582 43 적간 摘奸 정도전 鄭道傳 76 261, 277 적상산사고 赤裳山史庫 108 정명수 鄭命壽 89 적통 嫡統 99 정묘호란 丁卯胡亂 282, 336, 337, 469, 적통종통설 嫡統宗統說 109 585, 603 전가사변율 全家徙邊律 369 정미처분 丁未處分 175 전공 田貢 504 정미환국 丁未換局  $149.175 \sim 177$ 정백창 鄭百昌 135 전관수세권 專管收稅權 578 《전라도대동사목》《全羅道大同事目》 507 정사 正邪 169, 172 전랑권 銓郞權 211 정사공신 靖社功臣 72 전마강 개삭 戰亇舡 改槊 507 정사약조 丁巳約條 601 전마강 신조 戰亇紅 新造 정사영 鄭士榮 507 543 전무제도 田畝制度 정상 鄭詳 433 46

제용감 濟用監 504,505 정순붕 鄭順朋 14 정액지대 定額地代 451 제1차 예송 第一次 禮訟 96, 98, 99, 정약용 丁若鏞 105, 393, 408, 431 108, 109, 111~113, 115 108, 109, 111 110, 112 제2차 예송 第二次 禮訟 99, 100, 108, 정언각 鄭彦慤 16 정여립 옥사 鄭汝立 獄事 59,80,122 113~115, 118, 119 74, 75 정엽 鄭曄 제조 提調 190, 512 정온 鄭蘊 72, 79, 84 제주도 濟州島 489, 537, 590 정원군 定遠君 78 조경 趙絅 96, 98, 101, 111, 115 정원로 鄭元老 157 조공무역 朝貢貿易 332 정유독대 丁酉獨對 169 조광조 趙光祖 13, 28, 121, 479 정유악 鄭維岳 163 조대비 趙大妃 102, 107, 113, 116 정유재란 丁酉再亂 333 조명무역 朝明貿易 594 조목 趙穆 228 정율지대 定率地代 451 정이 程頤 62 조묘군 造墓軍 383 조문명 趙文命 170, 175 정인중 鄭麟重 171, 176 정인홍 鄭仁弘 44. 54. 70. 140. 280 조박 趙璞 17 조보 朝報 5,239 정전 正田 406, 407, 417, 489, 496 정조 鄭造 70 조복양 趙復陽 355 정주 定州 537 조사지역 詔使之役 385, 388 정지화 鄭知和 158 조선통보 朝鮮通寶 586 정창연 鄭昌衍 57, 70, 92 조성복 趙聖復 170 정척 鄭惕 37 조속 趙涑 81 정철 鄭澈 조수기 趙壽基 36, 38, 41, 45, 48, 52, 80 111 정철 正鐵 조수익 趙壽益 580 111 정청 政廳 207 조식 曺植 28, 29, 71 정초군 精抄軍 252, 275 조애차지 助哀次知 531 정초청 精抄廳 157, 285 조역군 助役軍 388 정축맹약 丁丑盟約 94 조원 趙瑗 46, 49 정태화 鄭太和 102, 106, 107, 109, 272, 조익 趙翼 77, 125, 485, 486, 488 486 조인득 趙仁得 290 정포 正布 504, 581 조일무역 朝日貿易 594 정해 鄭楷 171 조정 趙挺 70 정현 鄭鑦 조정론 調停論 37 62 조제론 調劑論 정호 鄭澔 166, 174, 175 정희량 鄭希亮 176 조제보합 調劑保合 176, 179, 287 조제보합론 調劑保合論 제번미 除番米 263 53, 122, 164 제승방략 制勝方略 278 조존성 趙存誠 424 제악기제조도감 祭樂器製造都監 602 제언사 堤堰司 438 조지겸 趙持謙 158 제왕가례 帝王家禮 99, 107 조지서 趙之瑞 224

조지서 造紙署 504, 525 주좌 籌座 184, 195 조창 漕倉 497 주지 注紙 510 조총 鳥銃 540 주포 紬布 603 주화론 主和論 83,93 조태구 趙泰耉 171, 174 조태억 趙泰億 173~175 주희 朱熹 61.76 죽산진 竹山鎭 267 조태채 趙泰采 170~174, 176 조헌 趙憲 46 준론 峻論 171 조형 趙珩 116, 154 준소 峻少 149, 171, 173, 174, 179 족징 族徵 480 준수척 遵守尺 427 존 에디 John Addy 준천 濬川 246, 260 308, 309 종루 鍾樓 520 중강개시 中江開市 519,595 종묘궁궐영조도감 宗廟宮闕營造都監 556 중개무역 仲介貿易 519,594 종묘천신물선 宗廟薦新物膳 507 중답주 中畓主 462 종무 鍾巫 173 중도아 中都兒 521 종사관 從事官 245, 344 중상령 重賞令 572 종의지 宗義智 540.601 중세의 온난화 中世의 溫暖化 309. 종통 宗統 100, 102, 112 310 주교사 구관당상 舟橋司 句管堂上 198 중자설 衆子說 114 중종반정 中宗反正 211 주단 紬緞 605 《주례》《周禮》 103, 223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502 . , 근 시대版目 245 지리산 유황점 智異山 硫黃店 572 《지리와 인간의 발전》 《地理와 人間의 發展》 306 주사 籌司 185 주사구관 舟師句管 195 주세붕 周世鵬 29.140 주약신강설 主弱臣强說 114 주인선 朱印船 604 지변사재상 知邊事宰相 183 주인장 朱印狀 604 지세 地稅 491 주자 朱子 61 지의 紙衣 504 지주전호제 地主佃戶制 179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168 주자붕당관 朱子朋黨觀 216 직산 稷山 539 주자붕당론 朱子朋黨論 4 직전 職田 452, 456 주자성리학 朱子性理學 36 직전신장 織田信長 332 주전 鑄錢 590, 591 직전제 職田制 409, 452, 456 주전로 鑄錢爐 진고 陳告 411 591 주전론 鑄錢論 445, 591 《진관관병편오책잔권》《鎭管官兵編伍册 주전사업 鑄錢事業 585, 589, 590, 593, 殘卷》 291, 292 594 진관속오지법 鎭管束伍之法 291 주전소 鑄錢所 586 진관절제사 鎭管節制使 294 주전원료 鑄錢原料 583, 585, 586, 591 진관체제 鎮管體制 278, 289 ~593 진군 鎭軍 568, 574 주전청 鑄錢廳 585, 592 진두장 津頭場 539

진릉군 태경 晋陵君 泰景 71 진번 陳蕃 60 진복창 陳復昌 18 진부 津夫 492 진붕 眞朋 3, 121 진사 眞絲 504 진상 표피 進上 豹皮 507 진상 호피 進上 虎皮 507 진전 陳田 403~405, 407, 414, 417 진제장 賑濟場 334, 339, 348, 349 진휼 賑恤 324 진휼곡 賑恤穀 334 진휼기구 賑恤機構 329 진휼사 賑恤使 344, 345 「진휼사목」「賑恤事目」 347 진휼사업 賑恤事業 371 진휼장 賑恤場 351 진휼청 賑恤廳 7, 338, 340, 342, 344, 351~353, 356, 357, 468, 506, 512 진휼청당상 賑恤廳堂上 195 「진휼청제언사목」「賑恤廳堤堰事目」 356, 철현둔철점 鐵峴屯鐵店 439 집춘영 集春營 251 징속 徵贖 585

#### [ㅊ]

차륜 車輪 488 차목 次木 504 차비군 差備軍 388 차역불균 差役不均 380, 397 찬선 贊善 229 참상관 參上官 236 참최 斬衰 102, 104 참하관 參下官 209, 236 창원 유황점 昌原 硫黃店 569 채경 蔡京 61 채연군 採鉛軍 570,574 채은관제 採銀官制 571 채제공 蔡濟恭 144

채철모군 採鐵募軍 574 책문후시 柵門後市 519 처료 妻料 245 처치 處置 134 척계광 戚繼光 262, 290, 541 척불문제 斥佛問題 척신정치 戚臣政治 척화론 斥和論 78,83,93 천거별시 薦擧別試 225 천거제 薦擧制 4, 222, 223 천도관 天道觀 311 천망 薦望 129 천망법 薦望法 57 천방 川防 439, 518 천아 天鵝 504, 507 천총 千摠 245, 254 천하동례 天下同禮 153 철물점 鐵物店 571 철점 鐵店 571, 576 철현둔 鐵峴屯 544, 568, 571 철현진 鐵峴鎭 568, 574 철현진철점 鐵峴鎭鐵店 574 첩선 貼扇 510 첩자설 妾子說 108 청남 淸南 138, 148, 155 청람포 靑藍布 598 청론 淸論 88 청류 淸流 164 청요직 淸要職 225 청의 淸議 209, 234 청전 淸錢 587, 588 청직 淸職 219 「청참보우소」「請斬普雨疏」 30,31 청풍김씨 淸風金氏 95, 96, 99, 113~115, 118, 119 청풍은점 淸風銀店 571 체이부정 體而不正 103, 104, 106, 108, 117, 154

체찰부 體察府

283

초가 草價 492 초관 哨官 245, 269 초군 哨軍 291 초마강 개삭 哨亇舡 改槊 507 초마강 신조 哨亇舡 新造 507 촉당 蜀黨 62 총융사 摠戎使 248, 266, 276 총융청 摠戎廳 156, 243, 268, 271, 273, 282, 283, 285, 468, 557 총통 銃筒 602 최규서 崔奎瑞 171 최덕순 崔德峋 542 최명길 崔鳴吉 72, 78, 81, 87, 486 최상중 崔相重 466 최석정 崔錫鼎 149, 164, 172, 178 최석항 崔錫恒 171 최영경 崔永慶 228 추맥 秋麥 435 추비 追肥 436 추자도 왜변 楸子島 倭變 188 추포 麤布 444, 581 축공상 逐供上 506 축성사 築城司 186 춘부미 春賦米 353 출신 出身 571 출신군관 出身軍官 250 출신한산과 出身閑散窠 276 충역 忠逆 172, 174 충주진 忠州鎭 267 「충청도대동사목」「忠淸道大同事目」 497 취련군 吹鍊軍 574 취철군 吹鐵軍 574, 577 취철둔군 吹鐵屯軍 574 취철모군 吹鐵募軍 574 취철아병 吹鐵牙兵 266, 566 취철역 吹鐵役 570 치우 雉羽 501 치중복마병 輜重卜馬兵 251 칠패 七牌 521

침의 鍼醫 245

#### [≡]

타작제 打作制 461 탁남 濁南 138, 148, 155, 178 《탁지지》《度支志》 460 탕평 蕩平 5, 164 탕평론 蕩平論 164, 175, 286 탕평정치 蕩平政治 2, 179 탕평책 蕩平策 126, 150, 287 태양흑점쇠퇴설 太陽黑點衰退說 308 《택리지》《擇里志》 37 토인비 Arnold Toynbee 토지의 상품화 土地의 商品化 448 통문 通文 5.239.241 퇴계학파 退溪學派 특송선 特送船 602

#### [亚]

파루 罷漏 259 파붕당 破朋黨 175 파총 把摠 245, 254, 269 파커 Geoffrey Parker 팔결작부제 八結作夫制 384 팔도구관당상 八道句管堂上 195, 198 팔분체 八分體 586 팔포제 八包制 605 페르난드 브로델 Fernand Braudel 307 편심호구법 編審戶口法 편오군 編伍軍 291 「편오사목」「編伍事目」 편죽 片竹 510 평시서 平市署 587 《평안도진관관병편오책》《平安道鎭管官 兵編伍冊》 542 평양전투 平壤戰鬪 599 폐모론 廢母論 71

폐모살제 廢母殺弟 72 폐모정청 廢母廷請 72 포납화 布納化 366 포보 砲保 246 포수 砲手 290 포화 布貨 581, 584 표연말 表沿沫 63 표하군 標下軍 245, 251, 254, 263, 269, 273 표헌 表憲 544 품관 品官 571 품종 品種 436 풍상 風箱 579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豊信秀吉 332, 595, 599 풍저창 豊儲倉 342, 356 피기문 皮起門 562 피물가 皮物價 501 피역 避役 383 피혐 避嫌 134 피혐제 避嫌制 87, 218 [ㅎ]

하도감 下都監 247 하미전 下米廛 520 하위지 河緯地 학생공천 學生公薦 227 학생천거 學生薦擧 223, 224 학전 學田 492 한경록 韓景祿 18 한교 韓喬 542 한구 韓構 162 한년면세 限年免稅 407 한당 漢黨 95, 99, 101 한량군관 閑良軍官 263, 269, 271 한려 漢旅 245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 449 한백겸 韓百謙 483 한수 韓脩 32

한유양인 閒遊良人 348 《한정록》《閑情錄》 434 한준겸 韓浚謙 247, 271 한중혁 韓重爀 162 한지원 韓智源 18, 21 한찬남 韓纘男 70 한효순 韓孝純 72 한흥일 韓興一 588 함이완 咸以完 162 항승 恒升 439 항조투쟁 抗租鬪爭 해서청 海西廳 506 해운판관 海運判官 507 행순 行巡 259 행전별장 行錢別將 589 행행수가 行幸隨駕 향군 鄕軍 243, 249, 250 향군 하번군 鄕軍 下番軍 250 향기사 鄕騎士 251 향도 香徒 443 향론 鄕論 226, 237 향모군 鄕募軍 401 향보 餉保 246 향사례 鄕射禮 237 향약보급운동 鄉約普及運動 향음례 鄕飮禮 237 향전 鄕戰 179 향촌사회 鄕村社會 179 허견 許堅 157 허균 許筠 70 허목 許穆 96~98, 101, 103~108, 110, 111, 113~115, 117, 118, 153, 155, 156 허봉 許篈 46, 56 허새 許璽 157 허엽 許瞱 29, 35, 43, 45, 48 허자 許磁 허적 許積 96, 98, 99, 112~115, 137, 154~156, 283, 284, 355, 486, 590 허적 許適 78 허준 許浚 329

허진 許晉 53	홍치상 洪致祥 160
허후 許厚 110	홍혼 洪渾 53
헌팅톤 Ellsworth Huntington 306	
현량과 賢良科 225	화권재상 貨權在上 591
현록아병 懸錄牙兵 251	화기도감 火器都監 556
전 1 6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화승총 火繩銃 540
현물화폐 現物貨幣 584, 586 현석규 玄錫圭 63	화양서원 華陽書院 168
현종 顯宗 94, 99, 113~115, 118, 124,	
153	화폐 貨幣 488 최제거제 45數////////////////////////////////////
호구정책	화폐경제 貨幣經濟 582, 583, 587
호료병포 戶料兵布 259	환경론 環境論 306
호미 437	환곡 還穀 324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487	환국 換局 5, 126, 147, 150, 172, 176
호서산림 湖西山林 95	환국시대 換局時代 4
호서아병 湖西牙兵 268	환국정치 換局政治 142
호역 戶役 394	환봉 換捧 499, 516
호위군관 扈衛軍官 271, 281	
호위대장 扈衛大將 272, 273 호위신지 扈衛信地 255	환자미 還子米 360
- 17 - 17 - 17 - 17 - 17 - 17 - 17 - 17	환종앙법 還種秧法 433
호위청 扈衛廳 256, 270, 272, 281	환집인 還集人 334
호조 戸曹 468, 505	활인서 活人署 349
호조 공주인 戶曹 貢主人 505	
호조 기인작지 戶曹 其人作紙  505	
호조차지 戶曹次知 531	황대임 黃大任 26
호초 胡椒 601	황신 黃愼 70
호패법 號牌法 70, 484, 486	황신 黄愼 70 황장 黃匠 572, 579 황주 黃州 539
호패제도 號牌制度 362	황주 黃州 539
홍담 洪曇 39, 40	황혁 黃赫 71
홍문관 弘文館 4, 134, 209, 210	회니시비 懷尼是非 159, 167, 168
홍문록 弘文錄 209 홍서봉 洪瑞鳳 84, 88 홍석보 洪錫輔 427	회답겸쇄환사 回答兼刷還使 600
홍서봉 洪瑞鳳 84, 88	회령 會寧 519
홍석보 洪錫輔 427	회맹록 會盟錄 174
홍섬 洪暹 34, 39	회사 回賜 601
홍성민 洪聖民 45	회양진 淮陽鎭 267
홍여순 洪汝諄 56	회퇴변척 晦退辨斥 70
홍우원 洪宇遠 111, 115	횡간 橫看 342, 516, 527
홍의인 洪義人 171	효렴과 孝廉科 225
홍적 洪迪 56	효명옹주 孝明翁主 89
홍주국 洪柱國 116	효종 孝宗 94, 99~105, 109, 112, 124,
홍석보 洪錫輔 427 홍섬 洪暹 34,39 홍성민 洪聖民 45 홍여순 洪汝諄 56 홍우원 洪宇遠 111,115 홍의인 洪義人 171 홍적 洪迪 56 홍주국 洪柱國 116 홍진 洪進 56,57	153, 166

#### 636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효종적장자설 孝宗嫡長子說 114 훈련별대 訓鍊別隊 98, 157, 252, 285, 효종중서자설 孝宗衆庶子說 119 후금 後金 603 후배사류 後輩士類 46 후빙기 後氷期 309 후시 後市 519 훈구세력 勳舊勢力 2 훈련도감 訓鍊都監 156, 279, 243, 288, 흠경각건설도감 欽敬閣建設都監 351, 380, 465, 466, 468, 471, 504, 541, 547, 흥선대원군 興宣大院君 288 588 훈련도감군 訓鍊都監軍 250

368, 557 훈련부서 訓鍊部署 541 「훈련사목」「訓鍊事目」 546 훈련원 訓鍊院 247 훈척 勳戚 156 휴한농업 休閑農業 518 557 흥암서원 興巖書院 168 흥화문 興化門 247

# 집 필 자

개 요이태전
I.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1. 사림의 득세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1. 붕당정치의 성립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1. 비변사의 강화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차문섭
6.	지방 군제의 개편 이겸주
	IV.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1.	장기적인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이태진
2.	상평창·진휼청의 설치 운영과 구휼문제이태진
3.	인구의 감소이태진
4.	요역제의 붕괴와 모립제의 대두 운용출
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송찬섭
6.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경제의 변화 염정섭
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 송찬섭
	V.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1.	대동법의 시행 한영국
2.	상업ㆍ수공업ㆍ광업의 변모오 성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유승주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권인혁
5.	중개무역의 성행 한명기

## 한 국 사

30

###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1998년 12월 1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8년 12월 22일 발행 (No. 98-112-6-2)
발행 국사편 찬위원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쇄 탐구당문화사
서울용산구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값 9,000원